

(- -) -

2026. 7. 1



가
Korea Law Service Center

-

- 1.
- 2.
- 3.
- 4.

- 1.
- 2.
- 3.

- 1.
- 2.
- 3.

-

- 1.
- 2.
- 3.
- 4.



[2026. 7. 1.] [36430 , 2026. 6. 23.,]

() 044 - 205 - 3353

1

1 () 「 」 (“ ”
) . < 2005. 1. 7.>

2 () .
3 () . < 1999. 1. 21.>

1. “ ” . ,
2. “ ” .
(.) .

3. “ ” 가 .
4. <1990. 1. 15.>
5. <1990. 1. 15.>
6. “ ”

7. “ ” .
8. “ ” 1 1 12 31 1 . ,

가.

가 .
9. “ ” 12

10. “ ” .

2

4 () <1999. 1. 21.>
<1999. 1. 21.>

「

」 [3] .< 2005. 1. 7.>

「

」

3 2

.<

2013. 12.

11.>

<2026. 1. 2.>

「

」

[5]

.<

2005. 1. 7.,

2013. 12. 11.>

「

」

[6]

.<

2005. 1. 7.,

2013. 12. 11.>

<2011. 8. 29.>

<2020. 3. 10.>

(「

」

2

2

.

“

”

)

「

」

11

.< 2013. 6. 11.>

「

」

12

.

,

,

.

< 1997. 1. 24., 2005. 1. 7., 2013. 6. 11., 2023. 1. 6., 2024. 1. 5., 2025. 1. 3., 2026. 1. 2., 2026. 6. 23.>

1. : 「

」

12

1

2. : 「

」

12

1 가

144 8 9

5 ()

.

「

」

28

1

2

.< 1990. 1. 15., 2005. 1. 7.>

11

.< 1994. 12. 31.>

3

6 () (

)가 .

7 <1990. 1. 15.>

8 () .

1 .

가 가 , 「 25 3 「 가

」 26 2

, 1 (「 」

3 2 2 • 3 「 」 3 2 3 • 4 「 3 5 「 」

3 3) .<

<2020. 1. 7., 2024. 1. 5., 2025. 1. 3.>

2 「 」 63 2 4 「 가 」 71

2 4 9 12 3

6 「 」 38 15 「

」 57 3

.< 2025. 1. 3.>

1. 「 」 11 2 7 「

」 11 3 7

: 1 6

2. : 3

30

가

.< 2025. 1. 3.>

.< 1990. 1. 15., 2025. 1. 3.>

1990 1 1 「 」 3, 3 2, 8 10

1989 12 31 1989 12 31 가

10 . < 1991. 1. 28., 1992. 1. 24., 2005. 1. 7., 2013. 12. 11., 2025. 1. 3.>

9 () 1
 . < 1990. 1. 15., 1994. 12. 31., 1997. 1. 24., 2011. 1. 10.>

1. 가

1 2.

2. 14 2 2 2

3.

1 1 1 2 1 ,
 1 2 14 2 2 2
 1
) • . (

< 1990. 1. 15., 1997. 1. 24., 2011. 1. 10., 2026. 1. 2.>

2 3

가 가 .

. < 1990. 1. 15.>

9 2() 6 8 2 • 3
 9 1 1 • 1 2 • 3

(前歷)

. < 2025. 1. 3.>

1 , •

. <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2. 1. 6.]

10 () • • ((()) . <

1990. 1. 15., 2013. 12. 11., 2014. 7. 16., 2020. 3. 10.>

1 9가 .

< 1990. 1. 15.>

1 2

()

1

2

.< 1990. 1. 15., 1991. 1. 28., 1999. 1. 2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990. 1. 15.>

2

3

12

12

<1990. 1. 15.>

(5

)

12

12

1

.<

1990. 1. 15., 1994. 12. 31.>

[2014. 7. 16.]

11 (•) • •

. < 1990. 1. 15., 2013. 12. 11., 2020. 3. 10.>

9가

2

가

.<

1990. 1. 15.>

2

12

12

(3

)

1

1

4

.< 2009. 3. 31.>

[2009. 3. 31.]

12 () (“ ”)

1 .
[<2014. 1. 8.>](#)

1 .< [2008. 1. 11.>](#)
 3 13
 . 13
 .< [2008. 1. 11.>](#)

13 ()
 . < [1988. 12. 31., 2003. 1. 20., 2008. 9. 10., 2009. 3. 31., 2014. 1. 8., 2015. 11. 18., 2017. 1. 6., 2018. 1. 18., 2019. 11. 5.>](#)

1. . ()
 2. (3
 .) [「 」 69 2 1
 , (6 가
), ,
]
 가. , : 18
 . : 12
 . : 6
 3. (가)
 : 6
 4. <[2017. 1. 6.](#)>
 1

.< [2020. 1. 7.](#)>

. . .
 가
 1 2 2 1 .< [2011. 8. 29.](#)>

14 () 13 12 1
 , . , 「
 」 38 17 1 (가)
 . < [1990. 1. 15., 1991. 1. 28., 1996. 1. 19., 1997. 1. 24., 1999. 1. 21., 2000. 1.](#)

28., 2001. 1. 29., 2003. 1. 20., 2005. 1. 7., 2006. 1. 13., 2008. 1. 11., 2008. 2. 29., 2009. 3. 31., 2011. 1. 10., 2011. 8. 29.,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18., 2016. 6. 28., 2017. 1. 6., 2017. 7. 26., 2025. 1. 3., 2026. 1. 2.>

1. 「 」

2.

13 1 2 . ,

.

가. : 9

. : 7

. : 5

. : 3

2 2. 13 1 3

가

2

3.

,

,

,

(

50

)

3 2. 「 」 63 2 4

1

1

1 (「

」 11 2 7

1 6)

,

.

3 3. 「

」 7 2

3 4. 「 」 63 2 5

「

」

44

1

9

90

4. 「 」 65 3 1

「

」

31 6 2 2

5.

가

(

)

6.

.

.

7.

가

15 () 12

1 . < 2017. 1. 6.>

1.

2. 가 가

1 1

「

」 7

(“ ”) .<

2024. 1. 5.>

<2024. 1. 5.>

1

,

2

.

,

,

1

.

「

」

20

1

1

3

2

4

.<

2024. 1. 5.>

4

5

1

.

1

,

2

4

6

.<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1. 5.>

[2005. 1. 7.]

16 <2017. 1. 6.>

17 ()

.

1

가

,

.

4

18 ()

.

,

.

.

21 ()

・ ・ ・ ・ ・

・

(2)

・

22 () 1 3

・

・

・

(「 」) 가

「

」

4

「

」

23

2

3

. < 1995. 4. 20., 2005. 1. 7., 2008. 12. 31., 2021. 11. 30. >

23 (5)

21 1

. < 2014. 1. 8., 2024. 1. 5. >

1. 5 15 ,

・

2. 2 「 」
(1)

3. (

1)

1 (

)

・

1 2

,

・

[2011. 8. 29.]

[2014. 1. 8.]

24 ()

. <

2011. 8. 29. >

・

23 1

가

15

25 () 「 」 71

. < 2009. 3. 31., 2016. 6. 28.>

가

26 () 가 가

(「 」 7 10 • 가)

가

. <

2020. 1. 7.>

가

.< 2006. 1.

13.>

[2006. 1. 13.]

27 () 「 」 63 1 1 「

」 44 1 1 • 7 3

. < 2014. 1. 8., 2017. 1. 6., 2018. 1. 18., 2025. 1. 3.>

1. 1 : 70

2. 1 2 : 50

1

50

2

.< 1990. 7. 11., 2000. 1. 28., 2014. 1. 8., 2016. 6. 28.>

45 3

1 2

< 2014. 1. 8.>

1 2

.< 1990.

7. 11., 2014. 1. 8.>

28 ()

. < 2015. 11. 18., 2016. 1. 12., 2019. 1. 8., 2022. 1. 4.>

1. 「 」 65 3 1 1 「 」 44 2 1 1

: 80

2. 「 2 1 2 3 4 65 3 1 2 4 「 2 1 2 3 4 50 . , 30 . [2015. 1. 6.]

29 () . () .

. < 2017. 1. 6.>

14 4

.< 2016. 6. 28.>

1 2

「

」 19 7

.< 2016. 6. 28.>

29 2(가)

가 가 . < 2003. 1. 20., 2013. 6. 11.>

1 가 8 2 8 , 8 1 , 가 가 10

.< 2000. 1. 28., 2001. 1. 29., 2002. 1. 19., 2003. 1. 20., 2004. 1. 20., 2005. 1. 7., 2006. 1. 13., 2007. 1. 12., 2008. 1. 11., 2011. 1. 10., 2012. 1. 6., 2013. 1. 9., 2013. 6. 11., 2014. 1. 8., 2015. 1. 6., 2016. 1. 12., 2017. 1. 6., 2018. 1. 18., 2019. 1. 8., 2020. 1. 7., 2021. 1. 5., 2022. 1. 4., 2023. 1. 6., 2024. 1. 5., 2025. 1. 3., 2026. 1. 2.>

[1997. 1. 24.]

29 3()

(

)

. < 2018. 3. 20., 2020. 1. 7., 2020. 6. 23.>

1. 「 3 5
2. 「 38 15 2
3. 「 11 1

[2014. 1. 8.]

29 4() 「 3 2 3
「 」 30

2

[2013. 12. 11.]

5

30 ()

.

1

•

•

.

31 ()

「

」 4

, 「

」

,

,

,

. < 1991. 1. 28., 1991. 6. 27., 1992. 1. 24., 1999. 1. 21., 2001. 1. 29., 2008. 2. 29.,
2008. 12. 31., 2021. 1. 5.>

, (

)

(

•

)가

.

,

.< 1991. 1. 28., 1991. 6. 27., 1992.
1. 24., 2012. 2. 29., 2021. 1. 5.>

31 2()

.

10 2 1

.

1 1

10 2 2

.

[2000. 8. 17.]

6

<

1999. 1. 21.>

32 ()

11

.

,

11

가

11

(1 1

)

. <

2016. 1. 12., 2017. 1. 6.>

[1999. 1. 21.]

33 ()

1 • 4

5

[1999. 1. 21.]

34 ()

12

13

[1999. 1. 21.]

35 ()

12

(11 3

13

()

13

가

.< 2001.

1. 29., 2003. 1. 20., 2008. 1. 11., 2008. 2. 29., 2008. 12. 31.,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2016. 1. 12., 2017. 1. 6., 2017. 7. 26.>

1. (1 12 11, 2

12 10, 3

12 9, 4

12 8, 5

12 7, 6

12 6, 7

12 5, 8

12 4, 9

12 3, 10

12 2, 11

12 1

가)

2. <2006. 1. 13.>

3. (2 가 ,

가 5

)

4. (「 」 12

)

5. 「 」 3 2 1 11 3

13

120 (, 11 3
「 」 3 2 1 2 130)

가 가

.< 2008. 9. 10., 2013. 12. 11.,
2017. 1. 6., 2021. 11. 30.>

가

3 120 (, 11 3
「 」 3 2 1 2 130)

.< 2008. 9. 10., 2013. 12. 11., 2017. 1. 6., 2021. 11. 30.>

2 () 4

.< 2008. 9. 10., 2008. 12. 31.,

2021. 11. 30.>

「 」 3 2 2
3 5

.< 2008. 9. 10., 2013. 3. 23., 2013. 12. 11., 2013. 12. 30., 2014. 11. 19., 2017. 7.
26., 2025. 1. 3.>

[1999. 1. 21.]

36 () 11 가 11
()

12 31

1 1 12 31

12 31 . < 2001. 1. 29., 2008. 1. 1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12., 2017. 1. 6., 2017. 7. 26., 2026. 1. 2.>

1. (1 1 1 , 2 1

1 12 11, 3 1 1 12 10, 4 1

1 12 9, 5 1 1 12 8, 6 1 1

12 7, 7 1 1 12 6, 8 1 1

12 5, 9 1 1 12 4, 10 1 1

12 3, 11 1 1 12 2, 12 1 1

12 1 가)

2. <2006. 1. 13.>

3. (12 31 2 가
 , 12 31 가 5
)

4. <2001. 1. 29.>

5. (「 」 12
)

6.

가 . 3 5

.< 2016. 1. 12., 2017. 1. 6., 2017. 7. 26., 2018. 1. 18., 2019. 1. 8., 2020.
 1. 7., 2020. 3. 10., 2021. 1. 5., 2022. 1. 4., 2023. 1. 6., 2024. 1. 5., 2025. 1. 3., 2026. 1. 2.>

1. 5 () 4 () : 890 9

2. 4 () 3 () : 977 2

3. 3 () 2 () : 868

4. 2 () 1 () : 1011 9

[1999. 1. 21.]

36 2()

34 36 2

가 (36 2 1)

.

. < 2017. 1. 6., 2017. 7. 26.>

「

」 1 ,

8 .< 2016. 1. 12., 2017. 1. 6.>

1. 5 6

2.

3.

4.

5. <2020. 3. 10.>

[2009. 3. 31.]

37 () [5 ()

.] [4 () 5

() 「 」 12

]

. < 2016. 1. 12., 2017. 1. 6.>

[1999. 1. 21.]

38 ()

(가 .

14

. < 2021. 1. 5.>

1 2

. < 2018. 1. 18., 2026. 1. 2.>

1. 「 」

2. 「 」 7 2 「

」 5 2

」 24 2

1 2

가 「 」 70

가

< 2021. 1. 5.>

. <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 18., 2021. 1.

5.>

[1999. 1. 21.]

39 () 1 1

, ,

가

. < 2000. 8. 17., 2001. 11. 14.,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999. 1. 21.]

40 ()

. ,

가

. <

2021. 1. 5.>

[1999. 1. 21.]

41 ()

· · · ·
·

(2가)

[1999. 1. 21.]

42 () 1

2

[1999. 1. 21.]

43 (5)

41 1

· < 2014. 1. 8., 2024. 1. 5.>

1. 5

15

· ,

2. 2

「 」

(1)

3.

(

1)

1

(

)

· < 2012. 1. 6.>

1

2

,

· < 2012. 1. 6.>

[1999. 1. 21.]

[2014. 1. 8.]

44 <2023. 1. 6.>

45 ()

가

가

(「 」 7 10 · 가)

가

()

· < 2020. 1. 7.>

가

()

· < 2007. 1. 12., 2016. 6. 28.>

[1999. 1. 21.]
[2007. 1. 12.]

46 () 「 」 63 1 1
() . ,
. <

[2014. 1. 8., 2016. 6. 28., 2017. 1. 6., 2018. 1. 18.>](#)

1. 1 : 60

2. 1 2 : 40

1

() 40 . 2

.< [2000. 1. 28., 2014. 1. 8., 2016. 6. 28.>](#)

45 3

1 2 .

< [2014. 1. 8.>](#)

1 2 ()

.< [2014. 1. 8., 2016. 6. 28.>](#)

[1999. 1. 21.]

47 ()

. < [2015. 11. 18., 2016. 1. 12., 2019. 1. 8., 2022. 1. 4.>](#)

1. 「 」 65 3 1 1 「 」 44 2 1 1

: 70

2. 「 」 65 3 1 2 4 「 」 44

2 1 2 4 : 40 . ,

3

3

20 .

[2015. 1. 6.]

47 2() 4 「

」 7 1

()

. ,

.

25 , 46 47 1

.

[2024. 1. 5.]

48 () .
() .

. < 2017. 1. 6., 2020. 1. 7.>

「 」 31 6 2 2

.< 2016. 6. 28.,

2020. 1. 7.>

[1999. 1. 21.]

48 2() 「 」 124 1 2
. . (“ ”)

40

. , 3 3
20 . < 2005. 1. 7., 2008. 12. 31., 2012. 1. 6., 2016. 6. 28., 2019. 1.

8., 2021. 11. 30.>

1

「 」 124 1 3

60

.<
2005. 1. 7., 2008. 12. 31., 2012. 1. 6., 2016. 6. 28., 2017. 1. 6., 2019. 1. 8., 2021. 11. 30.>

[2002. 12. 18.]

[2019. 1. 8.]

49 ()
. <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999. 1. 21.]

7 < 2006. 3. 23.>

50 () 「
「 」

2

4 . < 2007. 12. 13., 2008. 2. 29.,
2012.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1

38

.<

2007. 12. 13., 2008. 2. 29., 2012.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7

.< 2007. 12.

13., 2012. 2. 29.>

1

3

1

.<

2007. 12. 13., 2008. 2. 29., 2012.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06. 3. 23.]

< 12057 ,1986. 12. 31.>

() 1987 1 1 .

() . . .

1986 1 1 [9] 10

.

< 12373 ,1987. 12. 31.>

() 1988 1 1 . , 9 2 1987 8

1

() 1987 12 31

.

< 12584 ,1988. 12. 31.>

() 1989 1 1 .

()

1989 1 1 .

1.									
		1	5	6		6			
		6	7			7			
	7		8			8			
2.									
		1	5			6			
	6								
	6		7			7			
	7		8			8			
	8		9			9			
	9		10			9			
3.									
		(		)					
		(							
		)							
		(							
		)							
		(							
		)							

1

1985 12 31 (1981 12 1)

30 30 . , 1985 12 31

7

7

.

1

.

1

3 () 14 2 3

4 (3) 1

(14 , 2 4) 1990

12 31 . ,

1. • 1 3

2. ()

3.

< 13050 ,1990. 7. 11.>

, 1990 7 1 .

< 13255 ,1991. 1. 28.>

, 1991 1 1 .

< 13282 ,1991. 2. 1.>()

1 () .

2 4

5 () <101>

<102> .

4 9 , 10 3 , 14 , 16 2 , 19 1 , 20 3 31

“ ” “ ” , 19 1 “ ” “

” .

<103> <148>

< 13402 ,1991. 6. 27.>()

1 () . < >

2 8

9 ()

4 2 “ • ” “ • ” , 9

“ () ” “ ” “ ” , “

” “ () ” .

16 2 “ () ” “ ”

, 4 “ () ” “

” .

19 1 “ ” “ 가
 ” , “ () ” “
) () ” “
 ” .

20 3 • 31 1 2 “ () ” “ ” .

< 13573 ,1992. 1. 24.>

() , 1992 1 1 .
 (1) [3] 1
 ([3] 21
 1) 1992 12 31
 . ,
 .

< 13632 ,1992. 4. 25.>

1 () , 4 1 1992 1 1
 , [2] 3 1992 4 1 .
 2 ()
 1992 12 31 . ,
 .
 3 () .
 [9] 2 가 “ () ” “ () ” .

< 14073 ,1993. 12. 31.>

() 1994 1 1 .
 () 5
 가 1993 12 31 “ ” , “
 ” 가 4 가
 .

< 14436 ,1994. 12. 23.>

, 1994 12 5 .

< 14483 ,1994. 12. 31.>

1995 1 1 .

< 14630 ,1995. 4. 20.> ()

1 () .

2

3 ()

.

22 “ ” “ ” .

< 14705 ,1995. 7. 1.>

() 1995 7 1 .

() .

2 , “ ” “ , ”

.

12 2 “ • ” “ ” .

< 14900 ,1996. 1. 19.>

, 1996 1 1 .

< 15260 ,1997. 1. 24.>

() , 1997 1 1 .

(2) 1

6 1997 12 31

. ,

1. 6

2. 2

3. 2 2

4. 2 2

5.

6. 1 4

< 16083 ,1999. 1. 21.>

1 () , 1999 1 1 , 38
2000 1 1

2 ()
1999 1998 12 31

1. (1999 1 1 1 , 7 1 1
2 1 가)

2. (15806)

3. (1998 12 31 2 가)

4. (1998 12 31 2 가)

5.

6.

1 13

3 () 34 36 2
1999 12 31

94.5 , ()
98.7

4 () 1999 12 31

15806
70 , 1 3 1 3

92.5

1 1999 1 1
 1 3 1 3
 55 , 60 .

1 2

5 ()
 5

< 16697 ,2000. 1. 28.>

1 () , 2000 1 1 .

2 () 1985
 12 31 . ,

3 () 2000 12 31

,

1.

2.

■

< 17112 ,2001. 1. 29.>

1 () .

「-----」-----「-----」

1. 4

52,589,000 가

57,185,000 .

2.

,
.

3

< 17410 ,2001. 11. 14.>

() . , 10 2 2

2001 11 1 .

(. .) .

. ,

10 2 1 2001 12 31

. , 10 2 2

.

< 17489 ,2002. 1. 19.>

1 () , 2002 1 1 .

2 () 2002 12 31

.

1. 55

2. () 55

(

60)

3. 3,757,000 3,302,800

4. 3,439,000 3,024,000

1

.

3 () 2

3 , . . .

2 , 3

.

< 17777 ,2002. 11. 14.>

, 2002 11 1 .

< 17804 ,2002. 12. 18.>

() 2003 1 1 .

() 101 2 1 2

4

2003 1 1 .

< 17893 ,2003. 1. 20.>

1 () , 2003 1 1 .

2 () 2003 12 31

.

1. 53

2. () 53

(

58)

3. 3,950,000 3,484,500

4. 3,617,000 3,190,300

1

.

< 18123 ,2003. 11. 10.>

, 2003 11 1 .

< 18234 ,2004. 1. 20.>

1 () , 2004 1 1 .

2 () 2004 12 31

1. 53

2. () 53

(

58)

3. 4,168,000 3,676,100

4. 3,942,000 3,365,800

1

3 (.

)

1981 12 18

.

1986 1

1 .

3 4

.

< 18674 ,2005. 1. 7.>

1 () , 2005 1 1 .

2 () 2005

12 31

「

」

「

」

.

1. 53

2. (

) 53

(

58)

. ,

(

1

3

13

1

1

3

)

.

3. 4,265,000 3,764,300

4. 4,034,000 3,446,600

1

3 () 13 2

2004 12 31

(

가

) 4
(

)
4 ()
2005 2004 12 31

1. (2005 1 1 1 , 4 1
1 4 3 , 7 1 1
2 1 , 10 1 1 4 1
가)

2.
3. (2004 12 31 2 가)

4.
5.
1
1 50 가
.
13 3 4 4 ()
2005 12 31 13
90 .

< 18838 ,2005. 5. 26.>

< 19140 ,2005. 11. 25.>

, 2005 11 1 .

< 19275 ,2006. 1. 13.>

1 () , 2006 1 1 . , 14
3 3 2006 1 28 .
2 () 2006 12 31

「

」

. < 2006. 3. 23.>

1. 66

2. (

) 66 (70) . ,

(1 3 13 1 1 3)

.

3. 5,427,000 4,790,100

4. 5,133,000 4,385,500

1

「

」

(1 2) 81 . < 2006. 3. 23.>

3 () 3

4

4 ()

2006

13

2006 1 1

2006

50

가

13

3

4

4 (

)

2006 12 31

13

95

.

4 () 4 10 「

」 12

2006

. , 「

」 2 2 11 3

.

.

-----+-----+-----+-----+-----+-----+-----		
1~16	「	」 12
-----+-----+-----+-----+-----+-----+-----		
17~33	「	」 12
	98.5	
-----+-----+-----+-----+-----+-----+-----		
1~33	「	」 12

| | 97

|

< 「

」 12

2006

>

1 5

「

」

12 1

118,200

.

< 19401 ,2006. 3. 23.>

. , 19275

2 1

3

2006 1 1

.

< 19449 ,2006. 4. 20.> (

)

()

2006 7 1

. <

>

()

.

12

“

•

,

•

”

“

•

•

,

•

•

”

,

.

:

72,903

.

< 19833 ,2007. 1. 12.>

1 ()

, 2007 1 1

.

2 (

) 2007 12 31

「

」

.

1.

66

2.

(

) 66

(

70

)

.

,

(

1

3

13

1

1

3

)

.

3. 5,509,800 4,863,100
4. 5,435,900 4,452,400

1

ㄱ

ㄴ

(

1

2

) 81

.

3 ()

3

4

4

2007

13

.

4 ()

1 5

2007

ㄱ

ㄴ

12

1

120,100

.

< 20445 ,2007. 12. 13.> (

)

1 ()

.

2 3

4 ()

.

50 1 “ ㄱ

ㄴ 21 4

(“

”) ”

“ ㄱ

ㄴ

”

2

4

“

”

“

”

.

< 20545 ,2008. 1. 11.>

1 ()

, 2008 1 1 .

2 () 2008 12 31

ㄱ

ㄴ

.

1. 66

2. (

) 66 (

70) . ,

(

1 3 13 1 1 3
)

.

3. 5,946,800 5,248,800

4. 5,840,800 4,784,000

1

.

「

」

(1 2
) 81

3 () 2007 1 2 2008 1 1
(4)

9 36 1

.

< 20741 ,2008. 2. 29.> ()

1 () . < >

2 5

6 6 () <83>

<84>

10 , 14 7 , 16 2 , 20 3 , 31 1 , 35 2
3 “ ” “

”

.

15 7 , 35 2 5 , 36 1 6 , 38 3 , 39 , 49

50 1 • 2 • 4 “ ” “ ”

19 “ ” “ ” .

1 1 “ ” “ ” .

2 2 가 (4), (1 2) • (1 3), (2) “ ” “ ”

3 1 (2) • (3 2) • (3 3) • (4) • (5), 2 (2) •
(2 3) • (3) • (4) “ ” “ ”

”

.

4 1 (1) • (3) • (4 2) • (4 3) • (5), 2 (2) •
(2 3) • (3) • (4) “ ” “ ”

”

.

13 2 1 “ ” “ ” .
 <85> <105>

< 20995 ,2008. 9. 10.>

1 () .
 2 (가) 13 1 2
 , .

< 21244 ,2008. 12. 31.>

2009 1 1 .

< 21390 ,2009. 3. 31.>

1 () 2009 4 1 .
 2 () 2009 1 1 2009 12 31
 「 」
 .

1. 66
 2. ()
 .) 66 . ,

가. : 70

. 2009 1 1
 (1 3 13 1 1
 3)
 :

3. 5,946,800 5,248,800
 4. 5,840,800 4,784,000

< 21871 ,2009. 12. 7.>

1 () 2010 1 1 .

2 () 「 」 58

18 2 .

< 22108 ,2010. 4. 7.>

.

< 22619 ,2011. 1. 10.>

1 () , 2011 1 1 .

2 () 9 2

,

.

3 () 12 2

「 」 25 3

. ,

4 () 14 3 2

.

5 (.) 「

」

「

」

68

.

1

「

」

「

」

「

」

(

17 3) [() 78

[「 」 12

5 () 84] 68.54 [「

」 12 5 ()

67.5] . < 2012. 1. 6., 2016. 1. 12.>

6 () 「 」 38

17 1 14

.

14

.

7 ()
 25 1 “ ” “ 80
 ”
 1 3
 3. 22619 5
 , 4 가
 10
 가. 5 1 68
 . 5 2 ()
) 66 81

< 23098 ,2011. 8. 29.>

1 ()
 2 () 24

< 23498 ,2012. 1. 6.>

1 () , 2012 1 1 (43
 2011 8 29) , 9 2 2 4
 2012 7 1
 2 () 43 2011 8 29

3 ()
 1 3 “ 22619
 ” “ 22619 (23498
) ” ,
 “ 66 81 ” “ 78 68.54 ”

< 23644 ,2012. 2. 29.>()

1 () . , . . . < > . . . 2

3 2012 7 22 .

2

3 3 () <56>

<57> .

31 2 “ . ” “ ” .

<58> <69>

4

< 23645 ,2012. 2. 29.>()

1 () 2013 1 1 . < >

2 ()

.

50 1 “ 「 」

” “ 「

」 「 」

” , “ ” “

” , “ ” “

” .

50 2 “ ” “ ” “ , “

” “ ” .

50 3 “ ” “ ” “ ,

4 “ ” “ ” “ , “

” “ ” .

3

< 24301 ,2013. 1. 9.>

1 () .

2 () 2013 1 1 .

3 () 14

「 」 63

.

< 24425 ,2013. 3. 23.>()

1 () . , 6

2 5

6 6 () <96>

<97>

9 2 2 , 10 3 , 14 7 , 15 7 , 16 2 , 18 2 2 ,
35 2 5 , 6 , 36 1 6 , 38 3 , 39 , 49
50 1 • 2 • 4 “ ” “ ”

10 3 , 14 7 , 16 2 50 1 • 2 • 4 “
” “ ”

19 1 “ ” “ ”

1 1 “ ” “

”

2 2 가 4), 1 2) • 1 3) 2) “

” “ ”

3 1 2) • 3 2) • 3 3) • 5) 2 2) • 2

3) • 4) “ ” “

”

4 1 3) • 4 2) • 4 3) • 5) 2 2) • 2

3) • 4) “ ” “

”

<98> <129>

< 24581 ,2013. 6. 11.>

1 () 2013 6 12

2 () 4 11 2013 1 1

12 13 2013 1 1

< 24917 ,2013. 12. 11.>

1 () 2013 12 12 .

2 () 11531

4

법 시행 전의 직종	법 시행 후의 직종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
별정직공무원(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만 해당한다)	지방전문경력관 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해당 직무군의 호봉 중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군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기능5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6급 공무원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기능6급 이하의 기능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봉급[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84퍼센트)를 말한다]의 상당금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 또는 직무군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3 () 8 2

2 1 가

< 25040 ,2013. 12. 30.> ()

1 () 2014 1 1 .

2 7

8 ()

8 2

“

”

“

”

35 6 “ ” “ ” .
 2 1 가 “ ” “ ” .
 10 2 1 “ ” “ ” .

< 25071 ,2014. 1. 8.>

- 1 () . , 27 1 • 2 46 1 •
 2 2014 2 7 .
- 2 () 2014 1 1 . ,
 27 1 • 2 46 1 • 2 2014 2 7 .
- 3 () 12 「 」
 25 3 . ,
- 4 (가) 13 1 2
 ,
- 5 () 27 3 46 3
 .
- 6 () 「 」
 (25040)
 38 15 1 29 3
- 7 () 2 2 3) 「 」 2
 .
- 8 (3)
 4 3 7 , 9 11 , 12
 13 2014 12 31
 ,
1. 4 3 3 3
 2. 4 6 7 3 3
 3. 4 9

4. 4 10

3 3

5. 4 11

・ ・

6. 12

7. 13 1

3 3

2

3

9 ()

23 1 43 1

.

10 () 2014 2 7

27 1 ・ 2 46 1 ・ 2

.

< 25226 ,2014. 3. 5.> (

)

1 ()

.

2

3 ()

.

50 1 “ ” “ ”

< 25468 ,2014. 7. 16.>

1 ()

.

2 () 2014 7 1

.

3 ()

2013 12 12

1 1

2

.

4 () 10 1 9

.

5 (

) 11531

4 2 「

」 8 3 2013 12 12

(“ ”

)

24917

2013 12 12 2013
 12 12 (24301
 4 3 24299
 3) 가
 (“ ”)

(월지급액, 단위 : 원) 직위군

직위군	가군	나군	다군
1	2,050,300	1,517,700	1,203,500
2	2,147,500	1,600,100	1,270,200
3	2,245,000	1,683,500	1,337,600
4	2,342,300	1,767,800	1,405,900
5	2,440,100	1,850,400	1,474,800
6	2,537,700	1,933,800	1,543,400
7	2,634,900	2,018,300	1,610,800
8	2,732,100	2,100,100	1,678,900
9	2,827,600	2,177,600	1,740,700
10	2,926,000	2,252,000	1,803,200
11	3,007,900	2,324,300	1,864,600
12	3,090,000	2,384,400	1,918,500
13	3,172,000	2,443,700	1,972,000
14	3,253,300	2,502,000	2,025,200
15	3,335,300	2,560,100	2,078,100
16	3,394,300	2,617,900	2,126,700
17	3,452,600	2,673,500	2,175,400
18	3,510,900	2,726,800	2,223,300
19	3,568,500	2,777,900	2,270,000
20	3,626,200	2,828,300	2,315,400
21	3,683,900	2,878,000	2,360,100
22	3,741,100	2,926,900	2,403,600
23	3,799,000	2,974,800	2,445,800
24	3,857,000	3,025,200	2,490,700
25	3,915,100	3,071,300	2,531,600
26	3,973,900	3,120,700	2,575,800
27	4,034,400	3,169,100	2,619,400
28	4,093,400	3,214,800	2,658,500
29	4,155,200	3,260,200	2,695,700
30	4,217,200	3,305,300	2,730,800
31	4,278,800	3,350,200	2,763,200
32	4,340,200	3,398,000	2,794,300
33	4,401,100	3,440,300	2,824,900
34	4,461,600	3,487,400	2,855,400
35	4,521,800	3,533,900	2,887,400
36	4,582,000	3,575,700	2,917,500
37	4,642,800	3,617,200	2,947,500
38	4,703,600	3,658,700	2,977,500
39	4,763,400		
40	4,802,000		

1 (24301
 4 3 24299
 3) 1
 2013 12 12

2 1 6 가 2013 12

12 .

2013 12 12

24917 2 1

2013 12 12 78

가 ,

· ,

,

,

,

6 () 4 4

25467 3 2 (3 , 4

5 1 · 2) 4 4

25070 3 2 (“

”) 2014 12 31

.

< 25751 ,2014. 11. 19.> ()

1 () . , 5

.

2 4

5 () <208>

<209>

9 2 2 , 15 7 , 18 2 2 , 35 2 5 , 6 , 36

1 6 , 38 3 , 39 49 “ ” “

”

10 3 , 14 7 , 16 2 50 1 · 2 · 4 “

” “ ”

1 1 “ ” “ ”

.

2 2 가 4), 1 2) · 1 3) 2) “

” “ ” “

” “ ”

3 1 2) · 3 2) · 3 3) · 5) 2 2) · 2

3) · 4) “ ” “

” “ ” “ ” .
 ,
 4 1 3) · 4 2) · 4 3) · 5) 2 2) · 2
 3) · 4) “ ” “
 ” “ ” “ ” .
 ,
 <210> <418>

< 25868 ,2014. 12. 23.>(
)
 1 () .
 2 () .
 12 .
 :
 87,686 , 81,320 .

< 25965 ,2015. 1. 6.>
 1 () .
 2 () 2015 1 1 .
 3 ()
 28 47 .
 4 () 25468
 6 2014 12 31 25071
 4 4 25070
 3 2 (“ ”)
 4 4 26041
 3 2
 .

< 26658 ,2015. 11. 18.>
 1 () 2015 11 19 .
 2 () 13 1 2
 가 .

< 26887 ,2016. 1. 12.>

1 ()

2 () 2016 1 1

3 (가) 28 2

47 2 「 」 65 3 1 4

4 () 11

[4 5

4 () 5 () ,

] 2016 2015 12 31

1.

가. 2016 1 1 : 1

. 2016 2 1 : 1 12 11

. 2016 3 1 : 1 12 10

. 2016 4 1 : 1 12 9

. 2016 5 1 : 1 12 8

. 2016 6 1 : 1 12 7

. 2016 7 1 : 1 12 6

. 2016 8 1 : 1 12 5

. 2016 9 1 : 1 12 4

. 2016 10 1 : 1 12 3

. 2016 11 1 : 1 12 2

. 2016 12 1 : 1 12 1

2. (2 가)

3. (「 」 12

)

4.

38 1 11

2017 , 2016 「

」 6 2

5 ()

1 3 “ 23498

” “ 23498

26887 ” , “ 78 ”

“ 78 [「 12
5 () 84] ” , 68.54 “ ” 68.54 [「
12 5 () 67.5
]” .

< 27266 ,2016. 6. 28.>

1 () 2016 6 30 .
2 () 45 , 46 , 12 13
2016 1 1 .
3 ()
14 4 , 29 2 48 2
.

< 27765 ,2017. 1. 6.>

1 () .
2 () 2017 1 1 .
3 ()
13 1
4 1
.

14 2 2
2 .

4 () 11
[5 () ,
가 ,
] 2017 2016 12 31
.

1.

가. 2017 1 1	: 1		
. 2017 2 1	: 1	12	11
. 2017 3 1	: 1	12	10
. 2017 4 1	: 1	12	9
. 2017 5 1	: 1	12	8

. 2017 6 1 : 1 12 7
 . 2017 7 1 : 1 12 6
 . 2017 8 1 : 1 12 5
 . 2017 9 1 : 1 12 4
 . 2017 10 1 : 1 12 3
 . 2017 11 1 : 1 12 2
 . 2017 12 1 : 1 12 1

2. (2016 12 31 2 가 ,
 2016 12 31 5

)

3. (「 」 12
)

4.

5 ()
 12 2017 12 31

.

< 28211 ,2017. 7. 26.>()

1 () . , 8

.

2 7

8 () <164>

<165>

.

9 2 2 , 10 3 , 14 7 , 15 7 , 18 2 2 , 35 2
 3 • 5 , 6 , 36 1 3 • 6 , 2 1 , 36
 2 1 , 38 2 , 3 , 39 , 49 50 1 •
 2 • 4 “ ” “ ” .

1 1 , 2 2 가 4), 1 2) • 1
 3), 2), , 3 1 2) • 3 2) • 3 3) • 5),
 2 2) • 2 3) • 4), , 4 1 3) • 4 2) •
 4 3) • 5), 2 2) • 2 3) • 4) “
 ” “ ” .

<166> <388>

< 28592 ,2018. 1. 18.>

1 ()

2 () 2018 1 1

3 () 8 2

」 63 2 4

38 15

4 (가) 13 1 2

가

5 [2 ()] 29 2 2

2018 12 31

가

가 가 10

1. , 2 () : 6

8700

2. 2 () : 6 7000

36 2 3 4

2018 12 31

가

1. 3 () 2 () : 718 1

2. 2 () 1 () : 837

12

2018 12 31

(단위: 천원)

구분		연봉
서울특별시		128,154
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124,459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08,855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00,364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93,699

비고: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24,459천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100,364천원,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93,699천원으로 한다.

13 1 , 4

5 .

2018 12 31

1. 1 () 2 ()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1급(상당) 공무원	110,428	73,609
2급(상당) 공무원	102,058	68,003

2.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지방소방정감 공무원	110,428	73,609
지방소방감 공무원	102,058	68,003

3.

2

(

)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 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2,137
2호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4,671

4. 가 (2)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가급(1급 상당)		82,137
가급(2급 상당)		74,671

4 3

2018 12 31

「

」

3

2 ()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 계급·직무등급	1급	2급
1	3,851,300	3,467,200
2	3,986,300	3,595,900
3	4,124,800	3,726,100
4	4,266,400	3,857,800
5	4,411,300	3,991,000
6	4,558,000	4,124,700
7	4,707,000	4,260,000
8	4,857,200	4,395,200
9	5,009,400	4,531,200
10	5,162,600	4,667,400
11	5,315,500	4,804,000
12	5,473,400	4,945,300
13	5,632,300	5,087,500
14	5,791,700	5,216,100
15	5,930,900	5,334,800
16	6,054,400	5,443,600
17	6,164,100	5,543,900
18	6,261,700	5,635,200
19	6,349,200	5,719,800
20	6,427,500	5,797,000
21	6,499,700	5,867,400
22	6,564,000	5,932,100
23	6,618,400	5,991,300
24		6,039,700
25		6,085,900

4 6 2018 12 31 「 」 5
2 ()

(월지금액, 단위: 원)

호봉	계급	연구관
1		2,395,900
2		2,513,300
3		2,630,600
4		2,747,900
5		2,864,900
6		3,034,300
7		3,202,900
8		3,371,500
9		3,539,300
10		3,707,100
11		3,856,300
12		4,005,600
13		4,152,800
14		4,301,400
15		4,448,300
16		4,591,600
17		4,734,100
18		4,876,900
19		5,018,500
20		5,160,100
21		5,278,200
22		5,395,500
23		5,513,100
24		5,630,200
25		5,747,500
26		5,845,600
27		5,944,900
28		6,043,200
29		6,141,100
30		6,239,500
31		6,315,500
32		6,391,800

4 7 2018 12 31 「 」 6
2 ()

(월지금액, 단위: 원)

호봉	계급	지도관
1		2,395,900
2		2,511,700
3		2,627,200
4		2,743,500
5		2,857,500
6		3,009,700
7		3,161,700
8		3,314,300
9		3,465,900
10		3,616,700
11		3,753,100
12		3,888,600
13		4,024,400
14		4,159,300
15		4,293,200
16		4,411,400
17		4,531,400
18		4,650,400
19		4,768,200
20		4,885,800
21		4,990,600
22		5,095,800
23		5,200,400
24		5,305,100
25		5,409,800
26		5,501,200
27		5,592,200
28		5,683,700
29		5,774,300
30		5,866,200
31		5,928,000
32		5,990,200

4 9

2018 12 31

「

」

10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 계급	지방소방정감	지방소방감
1	3,851,300	3,467,200
2	3,986,300	3,595,900
3	4,124,800	3,726,100
4	4,266,400	3,857,800
5	4,411,300	3,991,000
6	4,558,000	4,124,700
7	4,707,000	4,260,000
8	4,857,200	4,395,200
9	5,009,400	4,531,200
10	5,162,600	4,667,400
11	5,315,500	4,804,000
12	5,473,400	4,945,300
13	5,632,300	5,087,500
14	5,791,700	5,216,100
15	5,930,900	5,334,800
16	6,054,400	5,443,600
17	6,164,100	5,543,900
18	6,261,700	5,635,200
19	6,349,200	5,719,800
20	6,427,500	5,797,000
21	6,499,700	5,867,400
22	6,564,000	5,932,100
23	6,618,400	5,991,300
24		6,039,700
25		6,085,900

4 10 2018 12 31 「 」 11
2 ()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562,600	21	2,978,200
2	1,610,000	22	3,088,200
3	1,658,100	23	3,197,300
4	1,705,800	24	3,306,400
5	1,754,100	25	3,415,700
6	1,802,300	26	3,525,300
7	1,849,700	27	3,639,600
8	1,897,300	28	3,753,700
9	1,945,500	29	3,873,000
10	1,998,100	30	3,992,700
11	2,049,700	31	4,112,000
12	2,102,300	32	4,231,100
13	2,198,200	33	4,352,100
14	2,294,300	34	4,472,700
15	2,390,200	35	4,593,600
16	2,486,500	36	4,714,000
17	2,581,700	37	4,818,700
18	2,681,200	38	4,923,700
19	2,780,300	39	5,028,800
20	2,879,300	40	5,133,100

4 11

2018 12 31

「

」

12

, 2 ()

.

1. : 7,956,300

2. : 6,616,000

3. 2 ()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976,300	21	3,888,500
2	2,038,500	22	4,008,000
3	2,101,100	23	4,163,900
4	2,163,300	24	4,319,400
5	2,226,000	25	4,474,700
6	2,294,600	26	4,630,000
7	2,363,000	27	4,785,300
8	2,431,800	28	4,940,400
9	2,534,800	29	5,058,500
10	2,638,000	30	5,176,900
11	2,741,400	31	5,294,800
12	2,844,100	32	5,412,900
13	2,946,600	33	5,531,200
14	3,049,400		
15	3,169,800		
16	3,290,000		
17	3,409,600		
18	3,529,400		
19	3,649,800		
20	3,769,000		

6 () 38 3
2017 1 1 가 .

< 28705 ,2018. 3. 20.> ()
1 () . < >
2 13
14 ()
29 3 1 “ 「 」 3 3 ” “ 「 」 3
4 ” .

< 29480 ,2019. 1. 8.>
1 () .
2 () 2019 1 1 .
3 () 28 2 47 2
「 」 65 3 1 2 4

4 () 48 2 1 3
「 」 111 1 2 3

5 [2 ()] 4 3
2019 12 31 「 」 3 2 ()
28594 3

4 6 2019 12 31 「 」 5
2 () 28594

5
4 7 2019 12 31 「 」 6
2 () 28594

6
4 9 2019 12 31 「 」 10
28594

10
4 10 2019 12 31 「 」 11
2 () 28594

11
4 11 2019 12 31 「 」 12
2 ()

1. : 8,009,400

2. : 6,660,100

3. 2 () : 28594

12
29 2 2 2019 12 31
, , 2 () 2

() 가

, 가 가 10

1. , , 2 () :

6 9200

2. 2 () : 6 7400

36 2 3 4 2019 12 31

가 .

1. 3 ()	2 ()	: 722 8
2. 2 ()	1 ()	: 842 6
12	2019 12 31	

(단위: 천원)

구분		연봉
서울특별시		129,008
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125,289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09,581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01,033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93,699

비고: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억2528만9천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1억103만3천원,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9369만9천원으로 한다.

13 1 , 3 , 4 5 가
2019 12 31

1. 1 () 2 ()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1급(상당) 공무원	111,164	74,100
2급(상당) 공무원	102,738	68,457

2. 2 () 2 ()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연구관 공무원	103,262	34,385
지도관 공무원	95,473	34,385

3.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지방소방정감 공무원	111,164	74,100
지방소방감 공무원	102,738	68,457

4. () 2 ()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2급(상당)		58,004

5. 2 ()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2,684
2호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5,169

6. 가 (2)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가급(1급 상당)		82,684
가급(2급 상당)		75,169

< 30195 ,2019. 11. 5.>

1 ()

2 (가) 13 1 2

< 30349 ,2020. 1. 7.>

1 ()

2 () 2020 1 1

3 [2 ()] 4 3
2020 12 31 「 」 3 2 ()
29478 3

4 6 2020 12 31 「 」 5
2 () 29478

5

4 7 2020 12 31 「 」 6
2 () 29478

6 .

<2020. 3. 10.>

4 10 2020 12 31 「 」 11
2 () 29478

11 .

4 11 2020 12 31 「 」 12
, 2 ()

.

1. : 29478 12

1

2. : 29478

12 1 가

3. 2 () : 29478
12

29 2 2 2020 12 31

, , 2 () 2

() 가

. , 가 가 10 .

1. , , 2 () :

7 600

2. 2 () : 6 8800

36 2 3 4 2020 12 31

가 .

1. 3 () 2 () : 737 5

2. 2 () 1 () : 859 8

12 2020 12 31

.

(단위: 천원)

구분		연봉
서울특별시		131,640
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127,845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11,817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03,094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95,611

비고: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억2784만5천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1억309만4천원,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966만1천원으로 한다.

13 1 , 3 , 4 5 가
2020 12 31

1. 1 () 2 ()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1급(상당) 공무원	113,432	75,612
2급(상당) 공무원	104,834	69,854

2. 2 ()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연구관 공무원	105,369	35,087
지도관 공무원	97,421	35,087

3. <2020. 3. 10.>

4. () 2 ()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2급(상당) 이상		59,188

5. 2 ()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4,371
2호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6,703

6. 가 (2)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가급(1급 상당)		84,371
가급(2급 상당)		76,703

< 30515 ,2020. 3. 10.> (가
28)
2020 4 1 . < >

< 30804 ,2020. 6. 23.> ()
1 () 2020 7 30 . < >
2 ()
29 3 3 “ ” “ ” .

< 31375 ,2021. 1. 5.>
1 () .
2 () 2021 1 1 .
3 [2 ()] 4 3
2021 12 31 「 」 3 2 ()
30347 3
4 6 2021 12 31 「 」 5
2 () 30347

5

4 7

2021 12 31

「

」

6

2 ()

30347

6

4 10

2021 12 31

「

」

11

2 ()

30347

11

4 11

2021 12 31

「

」

12

, 2 ()

1. :

30347

12

1

2. :

30347

12 1 가

3. 2 ()

:

30347

12

29 2 2

2021 12 31

29 2 2

가

1. , , 2 ()

2. 2 ()

36 2 3 4

2021 12 31

3 4

36 2 3 4

가 .

12

2021 12 31

.

(단위: 천원)

구분		연봉
서울특별시		135,809
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131,894
시·군·구 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15,359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06,359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98,639

비고

1.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억3189만4천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1억635만9천원,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9863만9천원으로 한다.
2.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연봉은 1억635만9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9863만9천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1억1536만9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억635만9천원으로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9863만9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9198만원으로 한다.

13

2021 12 31

13

.

1. 1 () 2 ()

2. 2 ()

3. (

) 2 ()

4. 2 (

)

5. 가 (2)

4 ()

14 1 3 “ 「 」 38 2 ” “ 「

」 38 2 14 ” .

< 31380 ,2021. 1. 5.> (

)

. < >

473

< 31732 ,2021. 6. 8.>

1 () 2021 7 1 .

2 ()

12 2

2021 12 31

.

1. : 1 1535 9 , 1
635 9

2. : 1 635 9 ,
9863 9

< 32173 ,2021. 11. 30.>

2022 1 13 .

< 32320 ,2022. 1. 4.>

1 () .

2 () 2022 1 1 .

3 [2 ()] 4 3
2022 12 31 「 」 3 2 ()
31374 3

.

4 6 2022 12 31 「 」 5
2 () 31374

5

.

4 7 2022 12 31 「 」 6
2 () 31374

6

.

4 10 2022 12 31 「 」 11
2 () 31374

11

.

4 11 2022 12 31 「 」 12
2 ()

.

1. : 31374 12

1

2. : 31374

12 1 가

3. 2 () : 31374

12

29 2 2 2022 12 31

29 2 2 가 .

1. , , 2 ()

2. 2 ()

36 2 3 4 2022 12 31

3 4 36 2 3 4

가 .

12 2022 12 31

(단위: 천원)

구분		연봉
서울특별시		137,189
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133,234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 청장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16,531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07,440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99,642

비고

-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억3323만4천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1억744만원,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9964만2천원으로 한다.
-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연봉은 1억744만원, 상임위원 연봉은 9964만2천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와 경기도남부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1억1653만1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억744만원으로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9964만2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9291만5천원으로 한다.

13 2022 12 31

13 .

1. 1 () 2 ()

2. 2 ()

3. 11 3 ()
() 2 ()

4. 2 (

5. 가 (2)

< 32447 ,2022. 2. 17.>()

1 () 2022 2 18 .

2 2 () <59>

<60>

2 2 8) “ 「 」 ” “ 「 」 ” .

<61> <72>

3

< 33214 ,2023. 1. 6.>

1 () . , 4 11 2

2023 3 1 , 12

2023 2 16 .

2 () 2023 1 1 .

3 [4 ()] 4 3

2023 12 31 「 」 3 4 ()

32319 3

4 4 2023 12 31 「 」 3 2
4 () 32319

3 2
4 6 2023 12 31 「 」 5
4 () 32319

5
4 7 2023 12 31 「 」 6
4 () 32319

6
4 10 2023 12 31 「 」 11
4 () 32319

11 .

4 11

2023 12 31

「

」

12

4 ()

.

1. : 32319

12

1

2. : 32319

12 1 가

3. 4 () : 32319

12

29 2 2

2023 12 31

29 2 2

가

.

1. 4 ()

2. 4 ()

36 2

2023 12 31

36 2

1 4

가 .

12

2023 12 31

12

.

13

2023 12 31

13

.

1. 1 () 4 ()

2. 4 ()

3. 4 ()

4.

5. (

) 4 ()

6. 1 4

()

7. 가

4 () 「 」

70

44

. ,

「

」

71

4

3

1

3 1

.

< 33507 ,2023. 6. 7.>

1 () 2023 6 11 .

2 () 12 1

2023 12 31

1 918 5 .

< 34100 ,2024. 1. 5.>

1 () . , 1 4

2024 1 12 .

2 () 2024 1 1 .

3 (.) 1

4 1

, 9 1 3 . 21

1 1

.

1 1 4

4 () 15 2

15 2

.

15 2

가

15 2

.

< 35183 ,2025. 1. 3.>

1 () .

2 () 2025 1 1 .

3 () 「 」 11 2 7

2025 1 1 「 」 63

2 4 「 가 」 71 2 4

2025 1 1 8 2

3

4 () 「 」 11 2 7

2025 1 1 「 」 63

2 4 2025 1 1 14 3

2

.

< 36014 ,2026. 1. 2.>

1 ()

2 () 2026 1 1

3 () 14 3 4 2026 1 1

「 」 63 2 5 「 」 44 1 9

1 14 3 4

2026 1 1 90 가

1. 2026 1 1 「 」 63 2 5 「 」

44 1 9 90

2. 2026 1 1 「 」 63 2 5 「 」

44 1 9 90

< 36430 ,2026. 6. 23.>

1 () 2026 7 1

2 () 21446

8

12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와 관련)

공무원별	초 임 호 봉	비 고
1. 일반직(지방 전문경력관 제 외) 및 별정직 공무원	[별표 2]에 의하여 경력을 계급(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호봉확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 에 따라 초임호봉을 확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 다. 가. [별표 2]의 경력이 없는 경우 당해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나. [별표 2]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 하여 호봉을 확정할 후 당해 계급에서 임용 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확정할 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2)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복무기간(이하 이 표에서 "의무복무기간"이 라 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기간 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 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호봉 확정에 있어서 (1)의 방법에 의 하여 확정한 호봉보다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 으로 보아 (2)의 방법에 의하여 확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의 한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다만, 의무복 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 간을 3년으로 산정한다.
1의2. 지방전문 경력관	[별표 2]에 따라 경력을 일반직공무원 계급별로 산 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확정하되, 임용되는 직위군의 가장 낮은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임용되는 직위군의 가장 낮은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직위군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2]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직위군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나. [별표 2]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 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확정할 후, 가장 낮은 계급에 서 임용된 직위군의 가장 낮은 계급까지 순 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0조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가)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확정 할 때 (1)의 방법으로 확정한 호봉보다 의무복 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방법으로 확 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 에는 (2)에 따른 호봉으 로 초임호봉을 확정한 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 년으로 산정한다.

	갑한다. 나)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4호봉을 갑한다. 다)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갑한다. 라)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3호봉을 갑한다. 마)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갑한다. 바)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갑한다. (2)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2. 연구직공무원	[별표 3]에 의하여 경력을 연구관·연구사의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확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3]의 경력이 없는 경우 당해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나. [별표 3]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2)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확정하고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확정 후 연구관 경력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하며, 연구관 경력만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3)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	나목의 (2)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호봉 확정에 있어서 (2)의 방법에 의하여 확정한 호봉보다 의무복무기간 또는 학위 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것으로 보아 (3)의 방법에 의하여 확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3)에 의한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한다.

	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지도직공무원	[별표 4]에 의하여 경력을 지도관·지도사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확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4]의 경력이 없는 경우 당해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나. [별표 4]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지도사로 임용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2)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도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호봉을 확정하고 지도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도관호봉을 확정하되, 지도관 경력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하며, 지도관 경력만이 있는 경우에는 지도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3)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목의 (2)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호봉 확정에 있어서 (2)의 방법에 의하여 확정된 호봉보다 의무복무기간 또는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것으로 보아 (3)의 방법에 의하여 확정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3)에 의한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한다.
4. 교육전문직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5. 전문대학·대학교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4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6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별표 1 관련)

[illegible]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7)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인정한다.
--	--	---

비고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위 표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같은 호 가목2)에 따른 경력 중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1. 1981년 12월 30일 이전 경력

구분	경 력	환산율
가. 공무원 경력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비상근으로 보지 아니한다)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2) 경노무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나. 유사 경력	1)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시간강사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2)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3)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전의 임시직·촉탁·잡급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이내
	3의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3)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3의3)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4)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50퍼센트 이내(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 한한다)
	6) 사립학교에서 교·직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50퍼센트 이내
	7) 국·공립학교에서 임시코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100퍼센트 이내

2. 1981년 12월 31일 이후 경력

구분	경 력	환산율
가.	1)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분야에서 연구직·지도직(1986년 이후 경력에 한한다)	100퍼센트

공무원경력	다) · 특정직 ·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3년 이내의 의무복무경력. 다만,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및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3) 당해 업무와 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4) 위 경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경력. 다만,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 및 경노무고용직공무원경력을 제외한다.	60퍼센트
나. 유사경력	1)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한다.	100퍼센트
	1의2)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100퍼센트
	2)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분야(1986년 이후 지도분야를 포함한다)에서 근무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시간강사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2의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2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3)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50퍼센트 이내(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 한한다)
	5)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한다.	50퍼센트
	6)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100퍼센트 이내
	7)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100퍼센트 이내
	8)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100퍼센트 이내

비고

1. 연구직공무원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유사경력(제1호나목1) 및 제2호나목2)에 따른 경력 중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과 제2호나목1) 및 5)에 따른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1.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무원 경력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비상근으로 보지 아니한다)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2) 경노무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나. 유사경력	1)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2)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시간강사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3)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4)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에 의한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전의 임시직·촉탁·잡급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이내
	4의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4)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4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50퍼센트 이내(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 한한다)
	6)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 그 밖의 정부간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70퍼센트 이내
	7) 사립학교에서 교·직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50퍼센트 이내
	8)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100퍼센트 이내

2.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무원 경력	1)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분야에서 연구직·지도직·특정직·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2)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3년 이내의 의무복무경력, 다만,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및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3) 당해 업무와 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4) 위 경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경력, 다만,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 및 경노무고용직공무원경력을 제외한다.	60퍼센트
나. 유사 경력	1)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지도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한다.	100퍼센트
	1의2)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100퍼센트
	2)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및 지도분야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시간강사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2의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2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3)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50퍼센트 이내(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 한한다)
	5) 대학원에서 유사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지도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한다.	50퍼센트
	6)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100퍼센트 이내
	7)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100퍼센트 이내

8)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100퍼센트이내
---	----------

비고

1.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유사경력(제1호나목2) 및 제2호나목2)에 따른 경력 중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과 제2호나목1) 및 5)에 따른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5] 삭제 <2000.1.28>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6] 삭제 <1999.1.21>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7] 삭제 <1990.1.15>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8] 삭제 <2017. 1. 6.>

승진·전보 시 호봉 확정표(제10조제2항 관련)

가.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

승진전 호 봉	승진후 호 봉	승진전 호 봉	승진후 호 봉	승진전 호 봉	승진후 호 봉
1	1	12	11	23	22
2	1	13	12	24	23
3	2	14	13	25	24
4	3	15	14	26	25
5	4	16	15	27	26
6	5	17	16	28	27
7	6	18	17	29	28
8	7	19	18	30	29
9	8	20	19	31	30
10	9	21	20	32	31
11	10	22	21		

나.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호봉	나군 호봉	나군 호봉	가군 호봉	다군 호봉	나군 호봉	나군 호봉	가군 호봉	다군 호봉	나군 호봉	나군 호봉	가군 호봉
1	1	1	1	14	9	14	9	27	19	27	19
2	1	2	1	15	10	15	10	28	20	28	20
3	1	3	1	16	10	16	10	29	21	29	21
4	1	4	1	17	11	17	11	30	22	30	22
5	2	5	2	18	12	18	12	31	23	31	23
6	3	6	3	19	12	19	13	32	24	32	24
7	4	7	4	20	13	20	14	33	25	33	25
8	5	8	5	21	14	21	15	34	25	34	25
9	5	9	6	22	15	22	16	35	26	35	26
10	6	10	7	23	16	23	16	36	27	36	27
11	7	11	7	24	17	24	17	37	28	37	28
12	8	12	8	25	17	25	18	38	29	38	29
13	8	13	8	26	18	26	19				

다. 연구직공무원

연구사 호 봉	연구관 호 봉	연구사 호 봉	연구관 호 봉	연구사 호 봉	연구관 호 봉
1	1	13	9	25	15
2	1	14	9	26	15
3	2	15	10	27	16
4	3	16	10	28	16
5	4	17	11	29	17
6	5	18	11	30	17
7	6	19	12	31	18

8	6	20	12	32	18
9	7	21	13	33	19
10	7	22	13	34	19
11	8	23	14	35	20
12	8	24	14	36	20

라. 지도직공무원

지도사 호 봉	지도관 호 봉	지도사 호 봉	지도관 호 봉	지도사 호 봉	지도관 호 봉
1	1	13	7	25	14
2	1	14	8	26	14
3	1	15	9	27	15
4	2	16	9	28	15
5	3	17	10	29	16
6	3	18	10	30	16
7	4	19	11	31	17
8	5	20	11	32	17
9	5	21	12	33	18
10	6	22	12	34	18
11	6	23	13	35	19
12	7	24	13	36	19

비고

1.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호봉획정된 공무원이 승진전 계급으로 강임 또는 강등되는 경우에는 강임 또는 강등되는 계급의 호봉에 1호봉을 가산하여 획정한다.
3. 지방전문경력관이 전보된 직위군에서 동일호봉으로 획정되는 경우에는 전보 후 직위군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다음과 같이 잔여기간을 적용한다.

가. 다군 1호봉부터 4호봉까지 및 나군 1호봉부터 4호봉까지

- 1) 1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
- 2) 2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3개월 가산
- 3) 3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6개월 가산
- 4) 4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9개월 가산

나. 다군 8호봉·12호봉·15호봉·18호봉·24호봉·33호봉 또는 나군 10호봉·12호봉·15호봉·22호봉·26호봉·33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2분의 1

다. 다군 9호봉·13호봉·16호봉·19호봉·25호봉·34호봉 또는 나군 11호봉·13호봉·16호봉·23호봉·27호봉·34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2분의 1에 6개월 가산

4.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여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다. 다만, 강임 또는 강등 시에 획정된 해당

호봉에서 강임 또는 강등되기 전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의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연구직공무원

8호봉, 10호봉, 12호봉, 14호봉, 16호봉, 18호봉, 20호봉, 22호봉, 24호봉,
26호봉, 28호봉, 30호봉, 32호봉, 34호봉 및 36호봉

나. 지도직공무원

3호봉, 6호봉, 9호봉, 11호봉, 13호봉, 16호봉, 18호봉, 20호봉, 22 호봉,
24호봉, 26호봉, 28호봉, 30호봉, 32호봉, 34호봉 및 36호봉

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

실 제 경 력		간주경력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일반직 등), 별표 3의2(전문경력관)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의 6급 이하 경력 6급공무원의 7급 이하 경력 7급공무원의 8급 이하 경력	6급 경력 7급 경력 8급 경력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의 소방경 이하 경력 소방경의 소방위 이하 경력 소방위의 소방장 이하 경력 소방장의 소방교 이하 경력	소방경 경력 소방위 경력 소방장 경력 소방교 경력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1조의2관련)

1. 봉급조정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액
11월	· 호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봉급월액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기본연봉액(고정급적연봉제 적용 대상공무원은 연봉액)의 53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58퍼센트)의 12분의 1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비 고 : 봉급조정수당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6조 내지 제28조, 제41조, 제43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봉급조정수당의 봉급 및 연봉 산입방식

구분		산입방식
호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전년도 봉급액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월간 평균지급률 ÷ (1+9.32/12)}
연 봉 제 적용대상 공 무 원	· 별표 12, 별표 13 제1호 및 제2호 나목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전년도 기본연봉액(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액) × 0.53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월간 평균지급률
	· 별표 13 제2호가목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전년도 기본연봉액 × 0.58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월간 평균지급률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2조 관련)

적용대상공무원	구분
1. 정무직공무원	고정급적 연봉제
2.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의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3.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정책적으로 직접 보좌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보좌하는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4. 제4조제4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가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5.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연구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도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6.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의 봉급표가 준용되는 공무원 중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까지에 해당하는 자치경찰공무원	
7.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연봉
서울특별시·통합특별시장		154,932
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150,467
시장·군수 및 자치구 의 구청장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31,604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21,337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12,531

비고

1.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통합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50,467천원, 통합특별시·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연봉은 121,337천원,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연봉은 112,531천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의 연봉은 121,337천원으로 한다.
2.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연봉은 121,337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12,531천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와 경기도남부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131,604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21,337천원으로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112,531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04,933천원으로 한다.
3.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같은 법 제205조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봉은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개정 2026. 1. 2.>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4조 관련)

1.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의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1급(상당) 공무원	133,504	88,993
2급(상당) 공무원	123,385	82,217
3급(상당) 공무원	114,705	77,054
4급(상당) 공무원	104,933	60,991
5급(상당) 공무원	92,940	42,099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68,426천원으로 한다.
3. 4급(상당)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7,125천원으로 한다.
4. 5급(상당) 공무원 중 과장급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은 86,520천원으로 한다.

2.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101,104	42,099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	-----	-----

연구관 공무원	124,015	42,099
지도관 공무원	114,661	42,099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4. 자치경찰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자치경무관 공무원	114,705	77,054
자치총경 공무원	104,933	63,274
자치경정 공무원	86,520	43,492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5.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가.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5급(상당)		69,663
6급(상당)	86,606	57,708
7급(상당)	70,782	50,272
8급(상당)	62,096	44,296
9급(상당)	54,678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4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상당)의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99,300
2호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90,277
3호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2,072
4호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0,490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93,801	53,316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1,945	41,288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급의 상한액을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가급(1급 상당)		99,300
가급(2급 상당)		90,277

가급(3급 상당)		82,072
가급(4급 상당)		70,490
나급(5급 상당)	93,801	53,316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급의 상한액을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4) <신설 2021. 1. 5.>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38조제2항 관련)

지급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S등급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성과연봉 기준액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A등급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성과연봉 기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등급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성과연봉 기준액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C등급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성과연봉 기준액의 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1. 성과연봉 기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특정직공무원 및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아니한 4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성과연봉 등급·대상인원 및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3. 제38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사유로 위 성과연봉 등급별 지급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6. 6. 24.] [369 , 2026. 6. 24.,]

()044 - 205 - 3353



[2026. 7. 1.] [36431 , 2026. 6. 23.,]

() 044 - 205 - 3353

1

1 () 「 」 45 • 46 「 」 30

. < 1986. 12. 31., 2001. 1. 29., 2005. 1. 7., 2015. 9. 25.>

2 () (“ ”) (“ ”) • •

. < 2001. 1. 29.>

3 ()

, (「 」) 가 「 」
「 4 「 10 , 11 , 11 2, 12 14

. < 1995. 4. 20., 2001. 1. 29., 2005. 1. 7., 2006. 1. 13., 2008. 12. 31., 2021. 1. 5., 2021. 11. 30.>

1 「 」 17 1

4 .< 2001. 1. 29., 2005. 1. 7.,

2020. 1. 7.>

[2001. 1. 29.]

2

4 <1993. 12. 31.>

4 2 <1992. 1. 24.>

5 <2006. 1. 13.>

5 2() 「 」 31

4.1

. < 1992. 1. 24., 1995. 1. 28., 2005. 1. 7., 2006. 1. 13., 2008. 1. 11., 2008. 12. 31., 2011. 1. 10., 2012. 1. 6., 2020. 3. 10.>

1 10
가 .< 1993. 1. 15.>

• •

4

[1990. 7. 11.]

5 3 <1993. 1. 15.>

6 () 1 7
2 . < 1986. 1. 25.,
1999. 1. 21., 2003. 1. 20., 2008. 9. 10.>

1. 1 1 1
7 1 12 31 1 ()
가) .

2. 7 7 1
1 1 6 30 1 ()
가) .

1 1 ()

,

(
, 「 14 1 • 3 • 3 2 3 3
「 12 1
5)

, 15 1
15 .< 2012. 1. 6., 2017. 1. 6., 2024. 1. 5.>

$$\text{지급금액} = \text{제1항의 정근수당액} \times \frac{\text{실제 근무한 기간(월)}}{6(\text{월})}$$

1 2
가 . , (3

. 18 5 2) • • .

4

가

< 2001. 1. 29., 2009. 3. 31.>

1 3 1 「 」
 22 , 「 」
 2 「 가 」 2 (.
 .)
 . , 「 」 13 1 1 . 2 「
 」 14 1 1 . 2 (「
 」 14 「 」 15
) .< 1986. 1. 25., 1988. 12. 31., 1999. 1.

21., 2001. 1. 29., 2004. 1. 20., 2005. 1. 7., 2008. 1. 11., 2013. 12. 11., 2013. 12. 30.>

6 2() [. . . .
 (“ . ”) .]
 2 2 .
 . < 2021. 11. 30., 2026. 6. 23.>

1 5
 2 3
 . ,
 . . (“
 ”) ,

2 3
 .< 2002. 1. 19., 2007. 1. 1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 2021. 11. 30.>

- 1.
- 2.
- 3.

4.

5.

2 1
 3 . ,
 .< 2002. 1. 19.,
 2006. 1. 13., 2007. 1. 12., 2021. 11. 30.>

2 2 5

3 .< 2002. 1. 19., 2021. 11. 30.>

’

(

.

)

7

.

,

가

.< 2021. 11. 30.>

5

「

」 3 8

(

“

”

)

50

가

.< 2024. 1. 5., 2026. 1. 2.>

3

「

」

14

3

50

.< 2024. 1. 5.>

6

가

7

3 2

.< 2024. 1. 5.>

.

.<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2024. 1. 5.>

「

」

45

3

1

(

.

)

, 1

.<

2015. 9. 25., 2021. 11. 30., 2024. 1. 5.>

10

.< 2015. 9. 25., 2017. 7. 26.,

2023. 1. 6., 2024. 1. 5.>

1

2

가

가

.

.< 2021. 1. 5., 2024. 1. 5.>

[1999. 1. 21.]

[2024. 1. 5.]

7 <2001. 1. 29.>

7 2 <1987. 12. 31.>

8 [<2001. 1. 29.>](#)

9 () 「 」 78 가
가

1

. [< 2005. 1. 7.>](#)

1

5

.

1

2

가

.

가

,

가

.

3 가

10 (가) 가

가

,

가

4

.

,

가

가 4

가

.

<

[2017. 1. 6.,](#)

[2023. 1. 6., 2025. 1. 3.>](#)

1. : 4

2.

가.

: 5

.

: 8

.

: 1

12

3.

가 : 1

2

1

“

가

”

가

.

,

.

가 (1

, 2

, 3

)

가

.

<

[1988. 12. 31., 1993. 12. 31., 1999. 1. 21., 2000.](#)

[1. 28., 2003. 1. 20., 2006. 1. 13., 2013. 1. 9., 2017. 1. 6., 2022. 1. 4.>](#)

1.

2.

60 (

55)

(

.

)

60

가

3.

19

19

가

4.

가

가

가

19

2 2 4 “ 가 ”

.< 2007. 1. 12., 2008. 2. 29., 2008. 6. 25.,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9. 18., 2018. 12. 31., 2020. 6. 9., 2022. 1. 4.>

1. 「 」 2
2. 「 가 」 14 1
7
3. 「 」 53 1 6
4. 「 」 40 「 」 41
5 6 1 6
5. 「 」 31 3 1 6
6. 1 5

1 가 (「 가 」
) 2 가
1 .< 2017. 1. 6.>
가 「 가 」, 「 가
「 」 가
가

가 .< 2010. 1. 7., 2016. 1. 12., 2020. 1. 7.>

1. 가
2. 「 」 2
3. 「 」 2
4. 「 」 4
5. 「 」 49 76
6. 「 」 2 가가
가 (가) 가 . 가

.< 2010. 1. 7.>

가 가

.< 1988. 12. 31., 2010. 1. 7.>

가 .< 2008. 12. 31., 2009. 3. 31., 2010. 1. 7., 2019. 1. 8.>

가 가
「 」 29
, . 30

.< 2010. 1. 7.,

2013. 1. 9., 2021. 11. 30.>

1

1 가 .< 2010. 1. 7., 2013. 1. 9., 2021. 11. 30.>
가 .<

1998. 6. 1., 2008. 2. 29., 2010. 1. 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1 <2021. 1. 5.>

11 2() 「 」 63 2 4 30
6

, 7

80

, 70 70

. < 2025. 1. 3.>

1. 3 : 250
2. 4 6 : 200
3. 7 : 160

1

.< 2020. 8. 25., 2022. 1. 4., 2024.

1. 5., 2025. 1. 3.>

1. 가

:

가. 6 :

. 2 250 , 3 300 , 4

350 , 5 400 , 6 450 .

. 7 12 (7 18

) : 1

2. 「 가 」 :

가. 3 :

. 300 .

. 4 12 (7 18

) : 1

. <2022. 1. 4.>

<2025. 1. 3.>

<2025. 1. 3.>

가 9 12 3
6 「 」 38 15 2
(
“ ”) . ,

.< 2017. 1. 6., 2018. 1. 18., 2020. 1. 7., 2024. 6. 28., 2025. 1. 3., 2026. 1.

2.>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10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 $\frac{\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머지 근무시간 단 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60만원을 상한 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 으로 한다)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10(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 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 $\frac{\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1 . , 1 .<

2015. 1. 12., 2025. 1. 3.>

6

18

18

.< 2025. 1. 3.>

1. 가 3

2. 「 가 」

3. 가

「 」 45 3

1

2

5

.< 2013. 1. 9., 2015. 1. 12., 2017. 9. 5., 2021. 11. 30., 2025. 1. 3.>

1

8

.< 2020. 1. 7., 2025. 1. 3.>

[2011. 1. 10.]

4

12 () .

6 , 5 , 4 , 3 , 「
5 」 2 1 5 20

. < 1985. 9. 9.,
1993. 1. 15., 1995. 1. 28., 2000. 1. 28., 2001. 1. 29., 2004. 5. 4., 2005. 1. 7., 2012. 1.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 8.>

1

10

,

.

10

(“

. ”)가 .< 1985. 9. 9., 1998. 6. 1., 2000. 1. 28., 2008. 2. 29., 2008.
9. 10., 2021. 11. 30., 2026. 6. 23.>

가

「

」 7 2

.

.< 1985. 9. 9., 1991. 1. 28., 1991. 6. 27., 2001. 1. 29.,
2005. 1. 7., 2008. 2. 29., 2008. 9. 10.>

.

.< 1999. 1. 21., 2001. 1. 29., 2008. 2. 29., 2008. 9. 10.>

5

13 ()

7

8

. < 2016.

1. 12.>

14 ()

,

가

.

가

9

.

[2020. 1. 7.]

14 2() 「 」 38 16 3 「
 」 58 3 가, 가, 가, 가,
 (가, 가, 가
 30 가· 가
 6
) 20

. < 2016. 6. 28., 2017. 1. 6., 2020. 8. 25., 2025. 1. 3., 2026. 1. 2.>

$$\text{월 지급금액} = 20\text{만원} \times \frac{1}{\text{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 」 38 15 「
 」 11

. < 2019. 1. 8., 2020. 6. 23.>

$$\text{월 지급금액} = 20\text{만원} \times \frac{\text{업무대행자의 실제 주당 근무시간}}{40\text{시간}} \times \frac{1}{\text{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2016. 1. 12.]

6

15 ()

. < 1990. 1. 15., 1999. 1. 21., 2008. 9. 10.>

55

(「 」 13 5 [가 8 () · 9 ()]

55 , 4 3 「 」
 3 8 8 , 4 「

13

」 3 2
 5 가 8 () · 9 ()

60 , “ ”) 209 1 150

. < 2017. 9. 5., 2025. 1. 3., 2026. 1. 2.>

2 11 . < 1986. 1. 25., 1993. 12. 31.>

1

1 4 , 1 57

. <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2024. 1. 5.>

1. 「 5

가

가

(“

”)

(“ ”)

2. 「 3 1 (“ ”) 「
」 2 1

3. 가

(“ ”) (月)

. 1 (分)

1 .< 2012. 9. 28., 2021. 11.

30.>

1. : 「 2 1

. .
, . .
.

2. 1 :
, (日) 1

가. :

. 가 : 1

5 2 1

가 .<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2008. 1. 11., 2012. 9. 28., 2021. 11. 30.>

「 45 3

5

가 , 1 1

2 .< 2008. 12.

31., 2012. 1. 6., 2012. 9. 28., 2017. 1. 6., 2021. 11. 30., 2023. 1. 6.>

1 8

.< 2001. 1. 29., 2008. 1. 11., 2008. 2. 29., 2008. 12. 31.,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2023. 1. 6.>

16 ()

. < 2013. 1. 9.>

1.

2. •

1 8
209 1 50

, 15 2
.< 1993. 12. 31., 2005. 1. 7., 2006. 1. 13., 2012. 1.

6.>

.<

2026. 1. 2.>

15 8

.< 2008. 12. 31.,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2023. 1. 6., 2026. 1. 2.>

[2013. 1. 9.]

17 ()

9 18

. < 2012. 9. 28.>

1 15 2

26 1 150

.< 1993. 12. 31., 2005. 1. 7., 2006. 1. 13., 2012. 1. 6.>

.<

2005. 1. 7.,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5 8

.< 2008. 12. 31.,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2023. 1. 6.>

[2012. 9. 28.]

17 2() 12

9

(

「

」

4

11

1

7.8

)

. , • •

(

)

,

•

가

(

)

. < 1993. 1. 15., 1999. 1. 21., 2005.

1. 7., 2006. 1. 13., 2009. 3. 31., 2011. 1. 10., 2011. 8. 29., 2013. 6. 11., 2017. 1. 6., 2021. 1. 5.>

1

.

[1992. 1. 24.]

17 3() 「 」 46 2 (“
”) (•)

1

. < 2005. 1. 7., 2011. 8. 29.>

1

.< 2021. 11. 30.>

6

. ,

6

< 2002. 12. 31.>

가

.< 2021. 1. 5., 2021. 11. 30.>

4

30

, 10

.< 2021. 11.

30.>

「

」 3 3

.< 2002. 12. 31., 2005. 1. 7.>

,

,

,

(

)

.< 2021. 11. 30.>

[2000. 12. 29.]

6 2

18 ()

16

. ,

3

17 2 1

. < 2001. 11. 14., 2003. 1. 20., 2004. 1. 20., 2005. 1. 7., 2008.

9. 10., 2020. 1. 7., 2026. 1. 2.>

[2001. 1. 29.]

18 2 <2011. 1. 10.>

18 3(가) (“ ”)
가 . < 2008. 9. 10.>

가 60

15 . ,

.< 2003. 1. 20., 2006. 1. 13.>

[2001. 1. 29.]

18 4 <2011. 1. 10.>

18 5(가) 1
가 가 . ,
. < 2001. 11. 14., 2003. 1.

20., 2015. 1. 12., 2016. 1. 12.>

1. ()

2.

3. 「 」 28 3 62 1 3 5

4. <2020. 3. 10.>

5. 「 」 61 1

6. 「 」 12

7. 18

가 6 30 12 31 (

,

) , . ,

.< 2012. 1. 6., 2016. 1. 12.>

1 2 가 , 6 30

가 6 30 가 가 10 .<

2012. 1. 6., 2013. 1. 9.>

1. 6 30 가 : 6 30 86 × 1/30 × 5

2. 12 31 가 : [12 31 86 × 1/30 × 가

] - 1 가

3 1 2 가

.< 2012. 1. 6., 2013. 1. 9.>

1. 6 30 : 86 × 1/30 ×

가 (10)

2. 7 1 12 31

가. 6 30 가 : 3 1

. 7 1 가 : [86 ×

1/30 × 가] - 2 가 가

1 4 가 가

가

. < 2012. 1.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01. 1. 29.]

18 6() 14

. < 2008. 9. 10.>

[2001. 1. 29.]

18 7() 「 18 , 20 1 • 2 ,

21 24 • 가 •

가 . “ ” “

• 가 • 가 ” . < 2005. 1. 7., 2011. 1. 10.>

[2003. 1. 20.]

18 8(가) 「 46

3

5 가 . < 2021. 11. 30.>

1

.

[2013. 6. 11.]

7

19 ()

.

. < 2001. 1. 29.>

<1988. 12. 31.>

9 ()

.

< 1985. 9. 9., 1988. 12. 31., 1989. 9. 1., 1990. 1. 15., 1991. 1. 28., 1992. 1. 24., 1993. 12. 31., 1995. 1. 28., 1997. 1. 24., 1999. 1. 21., 2000. 1. 28., 2001. 1. 29., 2001. 6. 18., 2002. 1. 19., 2002. 12. 18., 2004. 1. 20., 2004. 11. 3., 2005. 1. 7., 2010. 1. 7., 2013. 12. 11., 2014. 7. 16., 2017. 1. 6., 2020. 1. 7., 2021. 1. 5., 2021. 3. 30., 2024. 1. 5., 2025. 1. 3.>

1. 9 1 () 11
2. 9 2 11
3. 9 3 .
4. 9 8 1 () ,
5. 9 (1 가 , 8) 11 가
6. 9 1 11 (「 」 1)
7. 9 9 . , 9 9 11 .
8. 9 11
9. 9 11 (「 」 25 3)
10. 9 12
11. 9 13
12. 9 2
13. 9 11
- 가. 9 1 . 9 11
- 1 . 1 . .
- ()
- .< [2001. 1. 29., 2011. 1. 10.](#)>
- . . ()
- . . 18 18
- 6 ,
- 4 , .
- 3 1 , (
- 30) . . (
- 9 1 3) . 가 . ,
- . .
- 9 4
- .< [1985. 9. 9., 1997. 1. 24., 2001. 1. 29., 2003. 1. 20., 2009. 3. 31., 2010. 1. 7., 2017. 1. 6.](#)>

가· 가· 가· 가

가 , 6 2 9 ,
() .< 2001. 1. 29., 2006. 1. 13., 2011. 1. 10., 2017. 1. 6., 2020. 1. 7., 2024. 1. 5.>

2 9 12 , , 6
(), 가
, , , , , ,
< 2016. 1. 12., 2016. 6. 28., 2017. 1. 6., 2020. 1. 7., 2024. 1. 5.>

1. 「 」 62 69
()
.
2. 「 」 65 3 「 」 31
6 2 2
[9 2
, 11 (「 」 3 2 2
, 12 13] .< 1987. 12. 31., 1999. 1. 21., 2013. 12. 11., 2020. 1. 7., 2020. 8. 25., 2026. 1. 2.>

8
< 2007. 1. 12., 2013. 12. 11.>

「 」 32 가 , 가
, 가 .< 1999. 1. 21., 2001. 1. 29., 2005. 1. 7., 2007. 1. 12., 2011. 1. 10., 2022. 1. 4.>

「 」 124 1 2 3 ((“ ”)
가
4 , ()
< 2002. 12. 18., 2005. 1. 7., 2007. 1. 12., 2008. 12. 31., 2012. 1. 6., 2017. 1. 6., 2019. 1. 8., 2021. 1. 5., 2021. 11. 30.>

「 」 124 2
(

) .< 2002. 12. 18., 2005. 1. 7., 2007. 1. 12., 2008. 12. 31., 2021. 11. 30.>

「 」 7 2 「
」 5 2 「
」 24 2

.< 2024. 1. 5.>

[2001. 1. 29.]

20 () 「 」 6
1

가

. < 2001. 1. 29., 2005. 1. 7., 2008. 1. 11.>

[1986. 12. 31.]

21 () 「 」 46 2 •
66 2 66 2 • •
(1) 「 」 21
1 ()
) .< 2001. 1. 29., 2011. 8. 29., 2012. 1. 6.>

(
1) 「 」
21 1 ()
) .< 2011. 8. 29.>

[1999. 1. 21.]

[2001. 1. 29.]

21 2() 「
」 3 2 2
3 5 • 38 15 1 「 」 11 1

. , 가

, .< 2008. 9. 10., 2011. 1. 10., 2013. 12. 11., 2013. 12. 30., 2014. 1. 8., 2018. 3. 20., 2020. 1. 7., 2020. 6. 23., 2021. 1. 5.>

1

.< 2008. 2. 29.,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2017. 7. 26.>

[2008. 1. 11.]
[2013. 12. 11., 2013. 12. 30.]

21 3() 「 」 3 2 3
2 6 6 2
10 가 , 11 2 , 12
, 13 , 14 (9 11
, 15 , 16 , 17
, 18 , 18 5 가 18 6
.
가 ,

. < 2021. 1. 5., 2022. 1. 4., 2024. 1. 5.>

<2022. 1. 4.>

1

.< 2014. 11. 19., 2017. 7. 26., 2022. 1. 4.>

[2013. 12. 11.]

22 () 「 」
「 」
6 2,
12 14 , 15 17 17 2, 18 18 5
,

. < 2007. 1. 12., 2007. 12. 13., 2008. 2. 29., 2011. 1.

10., 2012.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2006. 3. 23.]

23 () 3 1
「 」 10 , 11 10
가 가 「
」 19 1 4 가

. < 2021. 1. 5., 2021. 11. 30.>

[2016. 6. 28.]

< 11034 ,1983. 2. 1.>

1 () , 1983 1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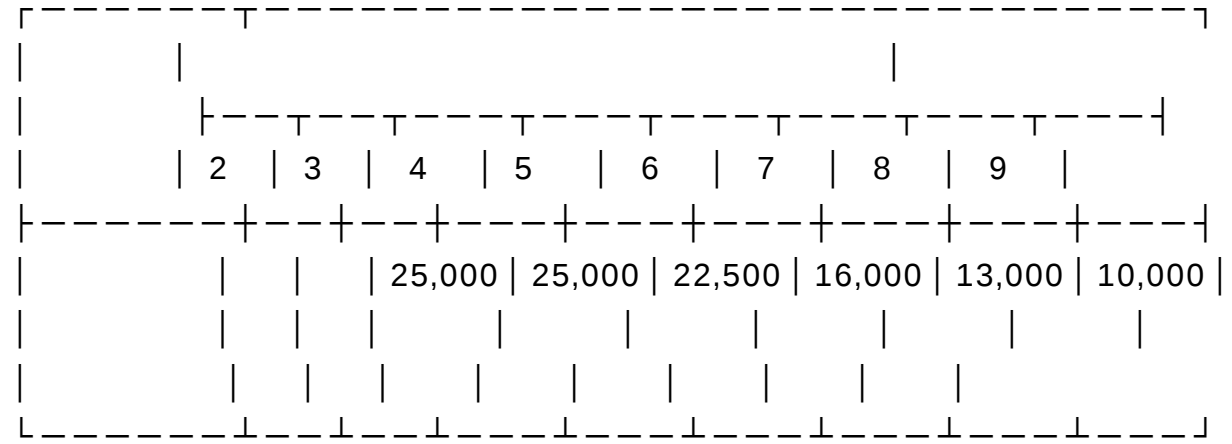
2 (가) 가 10 1
1984 8 31 5 .

[1983. 10. 19.]

3 () 1979

1 18 9281 2

9



4 () 1981 12 31

10695 5

2 8 9 8
8 2 , 9 9
3 6 9 3 2

5 <1983. 7. 12.>

< 11172 ,1983. 7. 12.>

11034

5

1983 6 1

1984 10 1 . < 1983. 10. 19., 1984. 10. 4.>

< 11250 ,1983. 10. 19.>

, 1983 10 1 .

< 11517 ,1984. 10. 4.>

, 1984 10 1 .

< 11611 ,1984. 12. 31.>

1985 1 1 .

< 11760 ,1985. 9. 9.>

() , 1985 7 1 . , 12

1986 1 1 .

() 3

3

.

< 11850 ,1986. 1. 25.>

() , 1986 1 1 .

() .

1986 1 1 1985 12 31

6 2 () .

,
() 10 . , 6 2

. < 1986. 12. 31.>

() 2

(11848) 2

30 1985 12 31

2 (11848) 2

.

< 12058 ,1986. 12. 31.>

, 1987 1 1 . , 가

10 1 1987 7 1 .

< 12374 ,1987. 12. 31.>
 () 1988 1 1 . , 10 1 1988
 7 1 .
 ()
 1 .

< 12500 ,1988. 8. 1.>
 , 1988 3 1 .

< 12586 ,1988. 12. 31.>
 1989 1 1 . , 9 7 1989 7 1 ,
 4 1989 10 1 .

< 12731 ,1989. 6. 17.>()
 1 () .
 2 4
 5 () .
 [9] 1 가 “ . ” “ . . ” ,
 “ . ” “
 ” , 2 가 “ ()
). .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6

< 12795 ,1989. 9. 1.>

.

< 12905 ,1990. 1. 15.>

1 () , 1990 1 1 .
 1 4 1 , 15 17 11
 1990 10 1 , 9 15 1990 4 1 .
 2 (3) .
 4 1 (19 9 15) 1990 12 31 .

.

< 12933 ,1990. 2. 24.> ()

() .
 () .
 5 2 1 “ ” “ ” .

< 13051 ,1990. 7. 11.>

() , 1990 7 1 .
 (3) 12904
 4 2
 5 2 1990 12 31 12583
 3 .

< 13256 ,1991. 1. 28.>

() , 1991 1 1 . , 4 2
 1991 9 1 , 4 1 1991 10 1
 .
 () 12 1
 가 9 18
 12 1 .

< 13282 ,1991. 2. 1.>()

1 () .

2 4

5 5 () <98>

<99> .

12 3 “ ” “ ” .

<100> <148>

< 13402 ,1991. 6. 27.>()

1 () . < >

2 8

9 ()

.

4 2 3 “ . ” “ . ” .

12 3 “ . . ” “

가 ” .

< 13574 ,1992. 1. 24.>

, 1992 1 1 . , 4 1

1992 11 1 , 5 3 1992 12 1 , [9] 12

1992 7 1 . 1992 12

12 .

< 13632 ,1992. 4. 25.>()

1 () , . . . < > . . . 3

1992 4 1 .

2

3 () .

[9] 2 가 “ (

) ” “ (

) ” .

< 13734 ,1992. 10. 1.>

()

() 9

가

< 13825 ,1993. 1. 15.>

, 1993 1 1 .

< 14074 ,1993. 12. 31.>

1994 1 1 .

< 14514 ,1995. 1. 28.>

() , 1995 1 1 .

() . .

[9] 22

.

가

1

,

1

1

.

< 14630 ,1995. 4. 20.> ()

1 () .

2

3 ()

.

3

“

”

“

”

.

< 14901 ,1996. 1. 19.>

4 14 , 1996 1 1 . , 8 1 , 9
1996 7 1 , 11 2 1997 1 1
.

< 15261 ,1997. 1. 24.>

, 1997 1 1 .

< 15806 ,1998. 6. 1.>

() .

() 5 3 1998 12 31
. , 1

1.

2. (.)

(. .)

가

\					
\	20	40	60		
\					
-----	-----	-----	-----	-----	-----
6					
-----	-----	-----	-----	-----	-----
4 2		. .	.		
4		. 1	3		
		1			
		3			

< 16084 ,1999. 1. 21.>

() , 17 2 1

1999 1 1 .

() 12

12

17 2 1

.

() 5 3

1999 12 31

.

┌-----┐									
└-----┘									
	•			4	10				
	1	•	2					70	
└-----┘									
	•			4	5		3		
	3							92.5	
	•		6			3			
	3								
	•		9						
	•		10			3	•		
	4				1	3			
	1		3			•			
└-----┘									

< 16698 ,2000. 1. 28.>

, 2000 1 1 . , 12 1

10 2001 1 1 .

< 17051 ,2000. 12. 29.>

.

< 17113 ,2001. 1. 29.>

() , 2001 1 1 .
() 6 2 • 2 2 2 3 2000

.

< 17115 ,2001. 1. 29.> ()

1 () .

2 4

5 5 () <99>

<100>

6 2 5 12 4 “ ” “ ”

.

12 3 “ ” “ ”

.

<101> <152>

< 17239 ,2001. 6. 18.> ()

() .

() .

19 3 5 “ ” “

”

.

9 22 “ ”

“

”

,

“

”

“

”

,

() 1) 2)

.

1) , 1

.

2)

.

< 17411 ,2001. 11. 14.>

. , 11 2 2001 11 1

< 17490 ,2002. 1. 19.>

() , 2002 1 1 .

() 6 2 • 2 3 3 2001

< 17805 ,2002. 12. 18.>

2003 1 1 . , 9 23

, 2002 12 1 .

< 17864 ,2002. 12. 31.> ()

() 2003 1 1 .

() .

17 3 3 .

, 6

17 3 6 .

3 3 .

< 17894 ,2003. 1. 20.>

8 2 2 “ 가 71 1 1 ” “ 가 71 1 1 ,

63 1 1 ” , “ 가 71 1 3 5

2 ” “ 가 71 1 3 5 2 ,

63 1 3 5 2 ” , “ 7

” “ 7

” .

< 18235 ,2004. 1. 20.>

, 2004 1 1 .

< 18312 ,2004. 3. 17.>(가

)

.

< 18384 ,2004. 5. 4.>

, 2004 4 1 . , 11 2 1

2004 2 25 , 12 1 2004 1 1 .

< 18580 ,2004. 11. 3.>()

1 () 2005 1 1 .

2

3 () 2#

2\$

.

19 3 2 “ 7 , 8 , 10

” “ 10 ” .

9 7 8 .

2% 2*

< 18675 ,2005. 1. 7.>

, 2005 1 1 .

< 18839 ,2005. 5. 26.>

. , 2 2, 2 3, 13 14

2005 3 31 .

< 18966 ,2005. 7. 27.> ()

1 () .

2 ()

.
“ ” “ ” .

19 7 “ ” “ ” .

3

< 19276 ,2006. 1. 13.>
, 2006 1 1 .

< 19402 ,2006. 3. 23.>

.

< 19507 ,2006. 6. 12.> (가
)

.

< 19586 ,2006. 6. 30.> ()

1 () .

2

3 ()

.
“ ” “ 119

9 19 “ , ” “ 119
, 119 ” .

4

< 19834 ,2007. 1. 12.>
, 2007 1 1 .

< 20445 ,2007. 12. 13.> ()
 1 () .
 2 3
 4 ()
 .
 22 “ 「 」 21 4
 ” “ 「
 」 ” .

< 20546 ,2008. 1. 11.>
 , 2008 1 1 .

< 20741 ,2008. 2. 29.> ()
 1 () . < >
 2 5
 6 6 () <84>
 <85>
 6 2 2 5 • 6 , 12 4 18 5 2 “ ”
 ” “ ”
 10 3 6 • 9 , 12 2 , 15 5 , 17 3 , 21 2
 2 22 “ ” “ ”
 12 2 “ ” “ ” , 3
 “ ” “ ”
 3 1 “ ” “
 ”
 9 2 “ ”
 “ ” , 15
 “ ” “
 ” , 18 “ ” “
 ” , 20 “ ”
 “ ” , 22 가 (3) “ ”
 ” “ ”
 (가) “ ” “ ” .

10 3 1 “ ” “ ” .
 14 3 “ ” “ ” .
 <86> <105>

< 20875 ,2008. 6. 25.> ()
 1 () 2008 7 1 .
 2 13
 14 ()

10 3 3 .
 3. 「 」 53 1 6
 15

< 20996 ,2008. 9. 10.>
 1 () .
 2 ()
 12 2 • 3 • 가
 .

< 21245 ,2008. 12. 31.>
 2009 1 1 . , 15 17 2009
 3 1 .

< 21387 ,2009. 3. 31.>
 1 () 2009 4 1 .
 2 () 10 3
 10 3 2009 6 30
 .

< 21981 ,2010. 1. 7.>
 , 2010 1 1 .

< 22620 ,2011. 1. 10.>

1 () , 2011 1 1 .

2 () 11 2

· ,

.

< 23100 ,2011. 8. 29.>

1 () . ,

10 2012 5 24 .

1. 2 3

2. 9 7 가

3. 14

2 () 21 2

.

< 23500 ,2012. 1. 6.>

, 2012 1 1 .

< 23644 ,2012. 2. 29.> ()

1 () . , . . . < > . . . 2

3 2012 7 22 .

2

3 3 () <58>

<59> .

9 3. .

3. 연구 업무 수당	가. 연구직공무원	월 80,000원 (가산금)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 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 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 를 담당하는 공무원(교 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제외한다)	·5급·지방소방령 이상: 월 60,000 원 ·6급·지방소방경 이하: 월 40,000 원 (비 고) 지급대상란의 나목의 해당자가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금액을 각각 병급할 수 있다.
	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 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원장: 월 110,000원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월 110,000원 이하 ·부장: 월 100,000원 (비 고)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장 인 경우에는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60> <69>

4

< 23645 ,2012. 2. 29.>()

1 () 2013 1 1 . < >

2 ()

22 “ 「 」

” “ 「

」 「 」

” , “ ”

“ ” .

3

< 24126 ,2012. 9. 28.>

.

< 24302 ,2013. 1. 9.>

1 () . , 14 2013 7 1

.

2 () 2013 1 1 .

3 () 11 2 6 11

2 1

.

< 24425 ,2013. 3. 23.> ()

1 () . , 6

.

2 5

6 6 () <98>

<99>

.

6 2 2 5 , 6 , 10 3 6 , 11 , 12 1 ,

15 4 3 , 6 • 9 , 16 3 , 17 3 , 4

, 18 5 5 , 21 2 2 22 “ ” “

”

.

6 2 2 5 , 6 , 18 5 5 22 “

”

“

”

.

3 1 “ ” “

”

.

6 “ ” “ ” .

9 1 2) “

”

“

”

,

2

“

”

“

”

,

7

“ ” “ ” ,
 8 가 3) “ • ” “
 • ” , 8
 “ ” “ ” “ ”
 10 3 1 “ ” “ ”
 14 4 “ ” “ ”
 <100> <129>

< 24582 ,2013. 6. 11.>
 1 () 2013 6 12 .
 2 () 17 2 1 , 9, 12 14
 () 2013 1 1

< 24919 ,2013. 12. 11.>
 1 () 2013 12 12 .
 2 ()
 24917 2
 3 ()
 14 18 6
 11531 24855
 9 14

9 14 .
 4 ()
 2013 가
 2 2, 2 3 3

< 25040 ,2013. 12. 30.> ()
 1 () 2014 1 1 .
 2 7

8 ()

6 4 “ ” “ ” .
21 2 1 “ ” “ ” .

< 25073 ,2014. 1. 8.>

1 () .
2 () 2014 1 1 .
3 ()
「 」 (25040
) 38 15 1 (“ ”)
14 2 . 21 2 1
 , 가
 , .

< 25226 ,2014. 3. 5.> (

)
1 () .
2
3 ()
22 “ ” “ ” .

< 25470 ,2014. 7. 16.>

1 () .
2 () 2014 7 1 .

< 25751 ,2014. 11. 19.>()

1 () . , 5

2 4

5 () <210>

<211>

6 2 2 5 , 6 , 18 5 5 22 “

10 3 6 , 11 , 12 1 , 15 4 3 , 6 •
9 , 16 3 , 17 3 , 4 , 21 2 2 21 3
3 “ ” “ ”

3 1 “ ” “

6 “ ” “ ”

8 “ ” “ ”

9 1 2) “ ” “

” “ ” , 2 가 1) “ 8

9 가 3) “ • ”

“ • ” , 9 2) “

” “ ” , 11 “

10 3 1 “ ” “ ” •
14 5 “ ” “ ”

<212> <418>

< 26045 ,2015. 1. 12.>

1 () .

2 () 2015 1 1 .

3 () 2015 12 31

2 3 2

25468

4 4

25467

3 2

.

< 26555 ,2015. 9. 25.>

.

< 26888 ,2016. 1. 12.>

1 ()

.

2 () 2016 1 1

.

< 27267 ,2016. 6. 28.>

1 () 2016 6 30

.

2 ()

.

)

,

19 7

.

< 27766 ,2017. 1. 6.>

1 ()

.

, 10 2 3 4

2018 1 1

.

2 () (10 2 3 4) 2017

1 1

.

3 () 15 8

.

.

4 () 27765

11

2

2 2017

.

< 28211 ,2017. 7. 26.>()

1 ()

.

, 8

2 7

8 () <166>

<167>

6 2 2 5 , 6 , 10 3 6 , 11 , 12 1 ,
15 4 3 , 6 • 9 , 16 3 , 17 3 , 4
, 18 5 5 , 21 2 2 , 21 3 3 22 “
” “ ” .

6 2 8 “ ” “
” .

3 1 , 6 , 8 , 9 1 2),
2 가 1), 8 ,
9 가 3) , 11

, 12 3), ,
10 3 1 14 5 “ ” “
” .

<168> <388>

< 28268 ,2017. 9. 5.>

1 () .

2 () 2017 9 1 .

3 () 11 2 2 2
2017 7 1 .

4 () 2017 9 1 .

11 2 .

2017 9 1

15 2 .

< 28593 ,2018. 1. 18.>

1 () .

2 () 2018 1 1 .

< 28705 ,2018. 3. 20.>()

1 () . < >

2 13

14 ()

21 2 1 “ 「 」 3 3 ” “ 「 」
3 4 ” .

< 29021 ,2018. 7. 3.>

1 () .

2 () 11 2 2 2018 7 1

3 () 2018 6 30
11 2 2 .

< 29180 ,2018. 9. 18.>()

1 () 2018 9 21 .

2 17

18 () 3*

3(.
10 3 4 “ 「 」 45 ” “ 「

」 40 ” .

4) 4#

19

< 29182 ,2018. 9. 18.>()

1 () 2018 9 21 .

2 15

16 ()

10 3 4 “ 「 」 55 ” “ 「
」 41 5 6 ” .

< 29450 ,2018. 12. 31.>()

1 () 2019 7 1 .

2 ()

10 3 1 “ 1 6 ” “ ” .

3

< 29481 ,2019. 1. 8.>

1 () .

2 () 2019 1 1 .

3 () 2018 12 31

11 2 .

< 30350 ,2020. 1. 7.>

1 () .

2 () 2020 1 1 .

3 () 2019 12 31

11 2 5 .

4 ()

10 2020 6 30

.

< 30515 ,2020. 3. 10.>(가

28)

2020 4 1 . < >

< 30760 ,2020. 6. 9.>()

1 () 2020 6 11 .

2 11

12 () 2(
3)
10 3 5
5. 「 」 31 3 1 6
3! 3^
13

< 30804 ,2020. 6. 23.>(
1 () 2020 7 30 . < >
2 ()

14 2 2 “ ” “ ”
21 2 1 “ ” “ ”
.

< 30972 ,2020. 8. 25.>
1 ()
2 ()
11 2 2 .

< 31377 ,2021. 1. 5.>
1 ()
2 () 2021 1 1 .

< 31380 ,2021. 1. 5.>(
) 473
. < >

< 31576 ,2021. 3. 30.>(
1 () 2021 4 1 . < >

2 ()

9 1 “ 「 」 ” “ 「 」 ” .

2!

3

< 31590 ,2021. 3. 30.>

4 1 .

< 32174 ,2021. 11. 30.>

2022 1 13 . ,

.

1. 15 8 18 8 1 “ 5 ” : 2021

12 9

2. 3 1 :

< 32322 ,2022. 1. 4.>

1 () .

2 () 2022 1 1 .

3 () 11 2 (3

) 2022 1 1

.

4 () 11 2 3

.

5 ()

「 」 5 2022

15 17 2022 12 31

「 」 5

2022 .

< 33216 ,2023. 1. 6.>

1 ()

2 () 2023 1 1

3 ()

「 」 5 2023
15 17 2023 12 31
「 」 5

2023

4 () 「

」 45 3 ()
() 15 8
3

< 34102 ,2024. 1. 5.>

1 ()

2 () 2024 1 1

3 () 6 2 7 2024

,

4 () 2024 1 1

11 2 2
11 2 2 11 2 2 1
2024 1 1 2024 1 1
3

3

11 2 2 1 2024 1 1
2024 1 1

3 2024 1 1 11 2 2

5 () 11 2 4 2

「 」 62 1 1

6 ()

「 」 5 2024

15 17 2024 12 31

「 」 5

2024

7 () 2024 1 1

11 2 3

< 34284 ,2024. 2. 29.>

1 ()

2 () 9 9 가

2024 2 1

< 34619 ,2024. 6. 28.>

1 () 2024 7 1

2 () 2024 6 30

11 2 5

< 35184 ,2025. 1. 3.>

1 ()

2 () 2025 1 1

3 () 11 2 1 • 2 7 2025

1 1

4 () 11 2 5 7

2025 1 1

5 () 11 2 7

2025 1 1

2025 1 1

11 2 2 1 , 2

7

2025 1 1

18

18

2025 1 1

6 () 2025 1 1

2025 1 1

11

2 3

4

.

< 35564 ,2025. 6. 2.> ()

1 () . < >

2 5

6 ()

.

9 1 가 “ ” “ ”

, 2)) (1) (2) “ ” “ ”

< 36016 ,2026. 1. 2.>

1 () .

2 () 2026 1 1 .

3 ()

9

12 .

< 36431 ,2026. 6. 23.>

1 () 2026 7 1 .

2 ()

21446 8

14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삭제 <1988.12.31>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25. 1. 3.>

정근수당 지급구분표(제6조제1항 관련)

1. 정근수당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2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해당 금액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해당 금액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해당 금액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해당 금액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해당 금액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해당 금액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해당 금액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해당 금액

2.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월지급액	비고
	전 공무원	
20년 이상	100,000원	(추가 가산금)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년 미만	30,000원	

비고

가. 제1호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나.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외2] <개정 2021. 1. 5>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6조의2제1항 관련)

공무원의 종류	적 용 대 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이하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비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과 평가대상기간 중 업무실적이 있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한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 (제6조의2제2항 관련)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3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4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가군		나군		다군		
	26호봉		20호봉		13호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6항·제7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연구관·지도관			연구사·지도사			
	15호봉			16호봉			
4. 삭제 <2020. 3. 10.>							
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0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3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급 과장 상당 또는 4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의 1급 20호봉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의 2급 20호봉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의 3급 20호봉	35호봉	30호봉	26호봉	

비고: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1. 11. 30.>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6조의2제3항 관련)

지급등급		지 급 액
등급	지급인원	
S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 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7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A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내에 해 당되는 사람	지급기준액의 1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등급	평가결과 상위 6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 당되는 사람	지급기준액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C등급	평가결과 상위 9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지급하지 않음

비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
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2] <신설 2024. 1. 5.>

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제6조의2제8항 관련)

1. 별표 2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종류	적용대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6급상당 이하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2.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에 따른 공무원(정무직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개정 2021. 1. 5>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의 감액 지급 구분표
(제5조의2, 제6조, 제10조 및 제19조 관련)

구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감봉기간 중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 (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30퍼센트 (연봉월액의 2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 (연봉월액) 미지급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100퍼센트	수당액의 1/3	수당액의 20퍼센트	수당액의 30퍼센트	수당액의 50퍼센트	수당액의 70퍼센트	수당 전액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개정 2007.1.12>

창안상여금지급기준표(제9조관련)

지급대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조세수입 증대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
행정 개선		·수 :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우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미 : 500만원 미만

비고 : 상여금의 최저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삭제 <2021. 1. 5.>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 <개정 2016.1.12.>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3조 관련)

등급	월 지 급 액
갑 종	60,000원
을 종	50,000원
병 종	40,000원

위험근무수당 동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

동급 부문	갑 종	을 종	병 종
1. 해상 부문		가. 부정어업 단속 및 고기 잡이지도를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나. 행정선·관광여객선·병원선 및 환자후송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 다. 해양계 고등학교에서 학생실습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라. 교육행정기관에서 통학 및 교육지원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가. 항만 내의 부두관리·개항 단속·오물제거 및 항만역무를 위하여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나. 급수선·도선(導船) 및 자연보호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근무하는 사람
2. 방역·보건 및 수의 부문		가. 방역·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치료·촬영·연구·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나. 결핵·한센병·감염병 또는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수술·치료·검사·간호·물리치료·작업치료·이동치료 및 특수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방역연구기관에서 감염병관계 예방약의 생산·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라.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세균 및 병독(病毒)을 취급하는 사람	가. 결핵·한센병·감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나. 감염병 연구·시험기관에서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상시 접촉하여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3. 공업연구 부문		방사선, 촉발성 물질 및 각종 유독성 가스를 이용하여 연구·실험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수산업 연구 부문		가. 방사선, 유독성 농약, 시약, 화학약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가축·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수산생물 공통의 감염병(전염병)·세균·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토양, 식물체 및 수산물의 시료분석 등에 촉발성(觸發性)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나. 종축장(種畜場) 및 축산사업소에서 가축의 품종개량, 종축(씨가축)생산, 질병치료보조 및 축사관리 등 가축의 사양(기르기)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 농촌진흥기관에서 농기계의 조작 또는 운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5. 상·하수도 및 분뇨처리 부문		가.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호흡이 곤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수인성 감염병에 전염될 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상수도 연구 또는 검사기관에서 방사선, 유독물질 등을 이용하여 연구·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가. 수원지에서 정수처리에 사용하는 멸균용 주입 염소(鹽素)에서 발생하는 자극성 가스를 상시 흡입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수원지의 염소실 및 펌프장에서 정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6. 지하철 부문		지하철도의 터널굴착(땅파기) 또는 교량의 건설 등 낙반(落盤: 갱내 천장이나 벽의 암석이 떨어짐)·갱붕괴(坑崩壞)·낙사상(落死傷: 떨어져 죽거나 다침)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항상 시공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7. 삭제 <2020. 3. 10>			
8. 자동차 배		도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가

출가스측정 부문		측정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	
9. 각 부문		가. 폭발물 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 나.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실험 및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 람 다.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 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솔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 람 라.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 ·정비, 작업차량 운전, 교 량·터널 등 시설물의 안 전점검 및 과적차량 단속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 람	가.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 나. 저압동력, 그 밖에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발전사·전 기수리공 다. 구급차의 운전원 라.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 는 사진현상 업무나 마이크 로필름을 이용한 사진촬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측 정을 위하여 굴뚝에 올라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바.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며 산 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산 림보호직공무원 사.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승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 동물원에서 야생동물 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비고: 위험근무수당 동급별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 급 대 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 분야	1. 기술 정보 수 당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과학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제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 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사무운영직렬 중 전산운영직렬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제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술정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다. 삭제 <2020. 3. 10.> 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 공무원 마.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1) 지급액 가) 5급 이상: 월 50,000원 이하 나) 6급·7급: 월 30,000원 이하 다)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라)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마)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과학기술직군 운전직렬 공무원에게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6급·7급: 월 10,000원 이하 (2)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다)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사. 전산업무[구명뿔기(천공)·검공 및 자료의 입력·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가)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나)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다)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비고)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2) 지급방법 수당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 또는 지방전문경력관이 아닌 공무원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의 료 업 무 등 의 수 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 전담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약사법」 제2조제2호 및 「간호법」 제12조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1)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약무직렬 공무원: 월 140,000원 3) 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100,000원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월 100,000원	

	물」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시 해당 감염병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이 있는 공무원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2) 보건연구직렬 공무원	1) 지급상한액: 월 100,000원 2)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월 350,000원 [통합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행정시는 제외한다)·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350,000원 초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업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월 6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마.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	(지급액) 1) 5급 이상: 월 50,000원 2) 6급 및 7급: 월 30,000원 3) 8급 이하: 월 20,000원
		가. 연구직공무원	1) 지급액 월 80,000원 2) 가산금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 계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교육 및 연구 분야	3. 연구 업 무 수당	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제외한다)	(지급액) 1) 5급 이상: 월 60,000원 2) 6급 이하: 월 40,000원 (비고) 지급대상란의 나목 해당자가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지급액) 1) 원장: 월 110,000원 2)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월 110,000원 이하 3) 부장: 월 100,000원 4)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월 80,000원 (비고)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지급액) 1) 장학관·교육연구관: 월 22,000원 2) 장학사·교육연구사: 월 17,000원 (비고) 1.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서 4급 상당 이상의 직(職)에 보직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2. 라목 해당하는 사람이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4. 교원에 대한 보수	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사람.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른 직에 겸직(兼職)된 사람은 제외한다.	(지급액) 월 20,000원 (비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

			표 22에 따라 계산한다.
		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월 60,000원
		다.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교육연구원	1) 1·2·3급 상당 직위: 월 70,000원 2) 4·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
	5. 교직수당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월 250,000원
특수장비취급분야	6. 삭제 <2020. 3. 10.>		
	7. 합정근무수당	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박(병원선은 제외한다)에 월 10일 이상 승선·근무하는 사람	1) 지급액 가) 5급 이상: 월 39,000원 이하 나) 6급: 월 32,000원 다) 7급: 월 25,000원 이하 라)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1개월의 항해일수가 기준 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의 항해일수를 통산하여 1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특수행정분야	8. 장려수당	가. 지하철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검수·구내보선·철도토목·철도건축·전기통신·신호·보안·역무창고 및 열차승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 일반직 6급 이상: 월 40,000원 이하 2) 일반직 7급: 월 38,000원 이하 3) 일반직 8급: 월 36,000원 이하

	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보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교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일반직 9급: 월 34,000원 이하
	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하수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하수도의 시설관리·급수·정수·배수·준설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 지급액 일반직 5급 이하: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관: 월 40,000원 이하 (2) 연구사: 월 30,000원 이하 (3) 그 밖의 일반직 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나) 「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소지자 중 정수장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급: 월 40,000원 이하 (2) 2급: 월 30,000원 이하 (3) 3급: 월 20,000원 이하
	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마.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바.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사.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9.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5에 따라 공모직위(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거나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집행기관과 의회 간 소속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인사교류직위에 교류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가) 지급액												
		<table> <tr> <th>지급대상</th> <th>월지급액</th> </tr> <tr> <td>1급</td> <td>400,000원</td> </tr> <tr> <td>2급</td> <td>300,000원</td> </tr> <tr> <td>3급</td> <td>200,000원</td> </tr> <tr> <td>4급</td> <td>100,000원</td> </tr> <tr> <td>5급 이하</td> <td>50,000원</td> </tr> </table>	지급대상	월지급액	1급	400,000원	2급	300,000원	3급	200,000원	4급	100,000원	5급 이하	50,000원
		지급대상	월지급액											
1급	400,000원													
2급	300,000원													
3급	200,000원													
4급	100,000원													
5급 이하	50,000원													
(나) 가산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을 달리하여 임용(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임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 600,000원을														

92

가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 대상란 가목3)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교류 직위의 중요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월 지급 상한액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계급	월 지급 상한액
1급·2급	600,000원
3급	400,000원
4급	300,000원
5급 이하	150,000원

(비고)

1. 지급대상란 가목의 해당자가 지급대상란 나목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란을 적용한다.
2. 위 계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및 장학관·장학사를 포함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및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상한액

근무기간	월 지급 상한액	
	4급 이상	5급 이하
1년 미만	100,000원	70,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120,000원	90,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180,000원	150,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300,000원	250,000원

		4년 이상	450,000원	400,000원
		2) 지급방법: 해당 직위의 임용여건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은 위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1. 동일 전문직위군의 해당 전문직위 외의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 2.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같은 직급 및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에 한정한다)		
10. 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11. 특수직무수당	가.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1)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2)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가) 지급액 (1) 1)의 해당자: 월 70,000원 이하 (2) 2)의 해당자: 월 30,000원 이하 나) 가산금 1)의 해당자에 대해 소속 지방자		

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1)의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선정한 공무원(정원의 3% 범위 내)	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의 종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 대상 기관 및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나.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5급 이상: 월 40,000원 이하 6급 이하: 월 30,000원 이하
다. 읍·면·동(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상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월 80,000원 이하
라. 삭제 <2020. 3. 10.>	
마. 지방자치단체 의회(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급액) 1) 3급 이상: 월 120,000원 이하 2) 4급: 월 100,000원 이하 3) 5급: 월 80,000원 이하 4) 6급: 월 60,000원 이하 5) 7급 이하: 월 50,000원 이하 (비고) 상당 계급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바.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8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받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사.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지급액)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방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해양수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수산생물 방역 및 검역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월 50,000원 이하		
자.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	월 30,000원 이하		
차.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1급 상당	1) 월 지급 상한액 <table border="1"> <tr> <td>지급대상</td> <td>월 지급 상한액</td> </tr> </table>	지급대상	월 지급 상한액
지급대상	월 지급 상한액		

100
가

이하 공무원(정원의 27퍼센트 범위 내)	<table><tr><td>1급(상당) 또는 2급(상당) 공무원</td><td>300,000원</td></tr><tr><td>3급(상당) 또는 4급(상당) 공무원</td><td>200,000원</td></tr><tr><td>5급(상당) 공무원</td><td>150,000원</td></tr><tr><td>6급(상당) 이하 공무원</td><td>100,000원</td></tr></table>	1급(상당) 또는 2급(상당) 공무원	300,000원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공무원	200,000원	5급(상당) 공무원	150,000원	6급(상당) 이하 공무원	100,000원
	1급(상당) 또는 2급(상당) 공무원	300,000원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공무원	200,000원								
5급(상당) 공무원	150,000원								
6급(상당) 이하 공무원	100,000원								
	2)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기간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카. 재난 전담부서 근무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8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중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담당 직무의 난이도 등이 높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대상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12. 우 수 대 민 공	1) 지급액: 월 100,000원 2) 지급기간: 해당 공무원으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무 원 수당		1년간 지급한다. 3)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13. 비상근무수당	재난의 발생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대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다. 삭제 <2021. 3. 30.>	1) 지급액: 1일 16,000원(월 18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비고: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 (제12조제2항관련)

1. 벽지지역

등 급 구 분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지 역 등 급 별 배 점 기 준
가. 당해 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특지 : 39점 이상 ●갑지 : 31점 이상 38점 이하 ●을지 : 23점 이상 30점 이하 ●병지 : 15점 이상 22점 이하
나. 당해 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역·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다. 당해 기관과 나호의 역 또는 시외버스 정류장 사이의 1일 대중교통운행횟수(시내버스 등의 상·하행 운행횟수의 합)	17회 이상 20회 이하	13회 이상 16회 이하	9회 이상 12회 이하	5회 이상 8회 이하	4회 이하	
라. 당해 동 또는 리의 도로 면적 비율	1.5% 이상 2% 미만	1.0% 이상 1.5% 미만	0.5% 이상 1% 미만	0.5% 미만		
마. 당해 동 또는 리의 산지면적 비율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바.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병·의원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사. 당해 기관으로부터 일용품(접화·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소규모 가게·상점 포함)까지의 거리	1km 이상 2km 미만	2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6km 미만	6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아.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미용시설 또는 대중목욕탕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자.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차. 당해 동 또는 리의 상주 인구수	2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인 이상 20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50인 미만	
카. 당해 동 또는 리의 차량 보급률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타. 당해 기관의 직원수	5인 이상 10인 이하	3인 이상 4인 이하	2인	1인	
파. 당해 기관으로부터 8km 이내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비 고

1. 탄광지역(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을 포함한다)은 최소한 병지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법률의 적용시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소재하는 기관은 동일한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2. 도시지역

등 급 구 분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지역등급별 배 점 기 준
-------------	-----	-----	-----	-----	-----	------------------

가. 당해 도서의 선착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 여객선 운항소요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특지 : 31점 이상 ●갑지 : 23점 이상 30점 이하 ●을지 : 15점 이상 22점 이하 ●병지 : 14점 이하
나. 당해 기관으로부터 선착장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다. 당해 도서의 선착장과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 사이의 1일 정기 여객선 운항횟수(입·출항 횟수의 합)	1일 8회 이상 15회 이하	1일 4회 이상 7회 이하	1일 2회 이상 3회 이하	1일 1회	1일 1회 미만	
라. 당해 도서에 의료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보건소가 있는 경우	의원 또는 보건지소(진료소포함)가 있는 경우	약국만 있는 경우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		
마. 당해 도서에 전기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육지로부터 선로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력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전기시설이 없는 경우		
바. 당해 도서의 주된 식수 확보방법	광역상수도 사용	간이상수도 사용	우물사용	상시급수지원		
사. 당해 도서 내에 슈퍼마켓, 이·미용실, 대중목욕탕, 음식점, 금	5종류 중 4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3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2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1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전부 없는 경우	

용기관이 있는지의 여부	경우		경우	경우	
아. 당해 도서의 상주 인구수	2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인 이상 20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50인 미만	
자. 당해 도서의 차량보급률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차. 당해 기관의 직원수	5인 이상 10인 이하	3인 이상 4인 이하	2인	1인	
카. 당해 도서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는 도서지역은 제외한다), 연륙교(連陸橋: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를 말한다) 및 연도교(連島橋: 섬과 섬 사이를 잇는 다리를 말한다) 등을 통해 육지와 연결된 도서지역은 벽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소재하는 기관은 동일한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적과 접촉하는 지역

특지	비무장지대
갑지	군사분계선에서 8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을지	군사분계선에서 10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병지	군사분계선에서 12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

비고

1. 시청 또는 군청이 있는 지역 내의 기관은 제외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적과 접촉하는 지역이 벽지지역 또는 도서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되,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더라도 적과 접촉하는 지역의 특수사정상 그 지역등급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등급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표(제15조제3항 관련)

지급대상	기준호봉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3항·제9항을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해당 계급 또는 해당 계급 상당 10호봉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4항을 적용받는 지방전문경력관	가. 가군: 10호봉 나. 나군 및 다군: 11호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6항·제7항을 적용받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가. 연구관·지도관: 8호봉 나. 연구사: 10호봉 다. 21호봉 이상 지도사: 12호봉 라. 20호봉 이하 지도사: 10호봉
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0항을 적용받는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가. 장학관·교육연구관: 25호봉 나. 30호봉 이상: 23호봉 다. 20호봉부터 29호봉까지: 21호봉 라. 19호봉 이하: 18호봉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 <개정 2026. 1. 2.>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제17조의2관련)

구 분	지 급 대 상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지방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 ·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 · 과장 · 담당관 · 사업소장 · 출장소장 또는 읍 · 면 · 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지도직공무원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공무원	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 · 처장 · 기획연구실장 · 교양과정부장 나.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 또는 병원의 과장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다. 교육장 및 시 · 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라.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 교육연구관

비고: 교수보직경비가 지급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 삭제 <2011.1.10>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 <개정 2026. 6. 23.>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

구분		월 지급액
모든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교육공무원	
서울특별시·통합특별시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1,240,000원
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통합특별시의 정무부시장		950,000원
	부총장	900,000원
부단체장이 2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1급(상당),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장학관·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750,000원
부단체장이 3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2급(상당), 연구관·지도관(2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2호)	장학관·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650,000원
부단체장이 4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3급(상당),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3호)	단과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500,000원
4급 부단체장		450,000원
4급(부단체장 제외, 상당), 연구관·지도관(4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4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상당)	학과장(학장보), 장학관·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5급 상당 직위),	전문대학 학과장, 장	250,000원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5호),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학관·교육연구관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제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장학사·교육연구사	185,000원
7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8급 상당)		180,000원
8·9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175,000원

비고

-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라 지급한다.
-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거나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 간 또는 집행기관과 집행기관 상호 간 파견된 공무원
 - 4급·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200,000원
 -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100,000원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교류지원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거나 지역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과 제3조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부터 3호까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	200,000원

	장·교양과정부장, 장학관·교육연구관 (1·2·3급 상당 직 위)	
4·5급(상당), 연구관·지도관(4·5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 반임기제공무원(4·5호), 일반임기제공 무원(5급·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위의 대상자를 제외 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장학관·교육 연구관(4·5급 상당 직위)	140,000원
6·7급(상당), 연구사·지도사, 개방형직 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8급 상당), 지방 전문경력관 나군	장학사·교육연구사, 그 밖의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4조제1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봉 급을 받는 총장은 제 외한다)	130,000원

5.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6. 교수보직경비가 지급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2026. 3. 1.] [06474 , 2025. 12. 26.,]

() () 061 - 260 - 0732

1 () 「 」 12 3 「
」 12 3

.< 2017.12.28.>

2 (.) ()
) .<
2017.12.28.>

< 3424 ,2010.12.30> ()

1 () 2011 3 1 .

2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26 ,2011.11.18>()

1 () 2012 3 1 .

2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3619 ,2012.11.13>()

1 () 2013 3 1 .

2 ()

.

() (

) .

() .

() .

< 3767 ,2013.11.7.>()

1 () 2014 3 1 .

2 () 「

」 .

()

“ ” “ ”

’ .

() .

() .
()

() () .

< 3857 ,2014.12.26.>()
1 () 2015 3 1 .
2 () 「

」 .
가 “ ” “ ” “ ”
” , “ ” “ ”
” .
() .

< 3890 ,2015.2.26>
2015 3 1

< 3984 , 2015.12.31.>()
1 () 2016 3 1 .
2 () 「

」 .
() .

< 4140 ,2016.12.22.>()
1 () 2017 3 1 .
2 ()

가 () ,
() , ()
) .

< 4354 ,2017.8.3.>()

1 () 2017 9 1 .

2 () 「
」 .

가 (,)

.

< 452 ,2011.02.22>

2011 3 1 .

< 4568 ,2017.12.28>

.

< 4702 ,2018.8.9>()

1 () 2018 9 1 .

2 () 「
」 .

가 () .

(,) (

) .

(,) (

) .

< 4747 ,2018.12.20>()

1 () 2019 3 1 .

2

3 () 「
」 .

가 (,) (

), ()

.

< 5003 , 2020.2.27.>
2020 3 1 .

< 5189 , 2020.12.10>()
1 () 2021 3 1 .
2
3 () 「
」
가 (),
(), ()
) .

< 5301 ,2021.5.13>
1 () .
2 () 1 가
2021 1 7 .

< 5386 ,2021.7.29>()
1 () 2021 9 1 .
2 () 「
」
82() .

< 5482 ,2021.12.23.>()
1 () 2022 3 1 .
2 () 「
」
가 6 - 7() .
297() “ ”
87() “ ”
.”

54() “ ”

65() .

5() .

5() .

< 5626 ,2022.12.22>()

1 () 2023 3 1 .

2 () ㄱ

」 .

“ 1579 - 74 ” “ 1602 -

1 ” .

< 5883 ,2023.12.21>()

1 () 2024 3 1 .

2 () ㄱ

」 .

54() .

280() .

< 6183 ,2024.12.26>()

1 () 2025 3 1 .

2 () ㄱ

」 .

297() .

21() .

204 - 6() .

1 27() .

37() .

1169() “

” .

377() .

< 6474 , 2025.12.26 > ()

1 () 2026 3 1 .

2 () 「

」 .

“ 4 48() ” “ 3

48() ” .

25 49 - 13() .

[별표]

특수지군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 구분표

1. 도서

가. 가지역

시 군	위 치	기 관 명
여수시	삼산면 녹산등대길 8-17	거문초등학교
	삼산면 덕흥1길 30	거문중학교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길 18-31	가거도초등학교
	흑산면 가거도길 18-31	가거도초등학교신안흑산중학교가거도분교장
	흑산면 김이수길 29-2	흑산초등학교흑산동분교장

나. 나지역

시 군	위 치	기 관 명
여수시	남면 대두길 87	돌산초등학교두라분교장
고흥군	도양읍 시산석금길 30	녹동초등학교시산분교장
영광군	염산면 낙월길 70	염산초등학교낙월분교장
완도군	노화읍 서넙도길 68	넙도초등학교서리분교장
	청산면 대모도12번길 12-23	청산초등학교모도분교장
진도군	의신면 모도길 12-3	의신초등학교모도분교장
	조도면 서거차도1길 116	조도초등학교거차분교장
	조도면 가사도길 88-22	진도서초등학교가사도분교장
신안군	흑산면 진마을길 12-13	흑산초등학교

시 군	위 치	기 관 명
	흑산면 홍도1길 53	흑산초등학교홍도분교장
	흑산면 흑산일주로 124	신안흑산중학교

다. 다지역

시 군	위 치	기 관 명
여수시	남면 금오로 836 남면 우실해안길 5 남면 우실해안길 5 화정면 개도화산3길 8 화정면 개도화산길 50	여남초등학교 여남중학교 여남고등학교 여수개도중학교 화정초등학교
해남군	송지면 어불길 50-7	어란진초등학교어불분교장
완도군	금당면 금당로 220-23 금당면 금당로 230 노화읍 념도길 294-31 노화읍 념도길 294-31 소안면 소안로 213 소안면 비자34번길 17 생일면 생일로579번길 3 생일면 생일로613번길 41	금당초등학교 금당중학교 념도초등학교 념도초등학교노화중학교념도분교장 소안초등학교 소안중학교 생영초등학교 금일중학교생일분교장
진도군	조도면 창유1길 36-14 조도면 명지길 66 조도면 명지길 64	조도초등학교 조도중학교 조도고등학교
신안군	도초면 서남문로 1698 도초면 서남문로 1493 비금면 유옥우길 21-4	도초초등학교 도초고등학교 비금초등학교

시 군	위 치	기 관 명
	비금면 용소길 181-6	비금동초등학교
	비금면 유옥우길 65	비금중학교
	신의면 신의로 710-57	신의초등학교
	신의면 상서길 94	신안신의중학교
	장산면 장산로 277	장산초등학교
	장산면 장산대리길 64	장산중학교
	하의면 안곰실길 33	하의초등학교
	하의면 곰실길 11-8	하의중학교
	하의면 곰실길 11-8	하의고등학교

라. 라지역

시 군	위 치	기 관 명
여수시	대경도3길 48 (경호동)	경호초등학교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457번길 38	금일초등학교
	금일읍 금일로725번길 18-13	금일동초등학교
	금일읍 금일로 445-1	금일중학교
	금일읍 금일로 420	완도금일고등학교
	노화읍 노화서로 149	노화초등학교
	노화읍 노화서로614번길 102	노화북초등학교
	노화읍 노화서로 1-14	노화중학교
	노화읍 노화로 763-36	노화고등학교
	보길면 부항길 67	보길초등학교
	보길면 보길동로392번길 6-18	보길동초등학교
	보길면 보길로1-2	완도보길중학교

시 군	위 치	기 관 명
	청산면 청산로 1602-1	청산초등학교
	청산면 청산로 1602-1	청산중학교

2. 벽지

가. 라지역

시 군	위 치	기 관 명
여수시	묘도1길 77 (묘도동) 화정면 백야3길 8-21	상암초등학교묘도분교장 안일초등학교백야분교장
순천시	송광면 쌍향수길 1169 송광면 이읍원동길 10 외서면 반월로 6	외서초등학교송광분교장 순천승남중학교 외서초등학교
광양시	다압면 향동3길 10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1633-13 옥룡면 신재로 1549-8	다압초등학교 광양다압중학교 전라남도교육청백운학생수련장
고흥군	도양읍 소록선창길 89-66 영남면 팔영로 1075	녹동초등학교소록도분교장 영남초등학교
보성군	노동면 거석길 218	노동초등학교
화순군	동면 충의로 789 동면 천덕길 104 동북면 김삿갓로 764 백아면 학천길 22-2 백아면 백아로 1198 이양면 이양로 42	동면초등학교 화순동면중학교 화순동북중학교 아산초등학교 화순북면중학교 이양초등학교

시 군	위 치	기 관 명
	이서면 규봉로 979 이양면 이양로 100-35 이양면 이양로 100-35 청풍면 평지촌길 54 한천면 청계길 26 화순읍 칠충로 71 화순읍 칠충로 33 화순읍 진각로 31-9	화순초등학교이서분교장 화순이양중학교 화순이양고등학교 청풍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화순중학교 화순제일중학교 화순고등학교
무안군	일로읍 청포로 421	일로초등학교청망분교장
진도군	의신면 황모길 25-1	의신초등학교접도분교장
신안군	안좌면 김환기길 6 안좌면 중부로 743 안좌면 중부로 790-7 암태면 장단고길 56 암태면 장단고길 10 임자면 임자로 216-4 임자면 장동길 86 임자면 임자로 230-9 임자면 임자로 230-9 자은면 구영1길 44-36 자은면 구영2길 82 증도면 문준경길 218 증도면 증동길 53 팔금면 삼층석탑길 173	안좌초등학교 안좌중학교 안좌고등학교 암태초등학교 암태중학교 임자초등학교 임자남초등학교 임자중학교 임자고등학교 자은초등학교 자은중학교 증도초등학교 신안증도중학교 팔금초등학교

- 1.
- 2.
- 3.



[2026. 7. 1.] [36492 , 2026. 6. 30.,]

() 044 - 201 - 8403

1

1 () 가 (公務) 가 .

[2010. 11. 10.]

2 () 가 .

3 () 가 (“ ”) 1 .

[2010. 11. 10.]

4 () . ,

[2010. 11. 10.]

5 () . ,

[2010. 11. 10.]

6 () (滞在)

[2010. 11. 10.]

7 () . 가 가 . , 가 .

[2010. 11. 10.]

8 ()
(赴任) (職)

[2010. 11. 10.]

8 2() 가 ()
() 「 」 24 5
(“ ”) 「 」 2 3
(“ ”)

가 . < 2011. 2. 9.,
2017. 1. 31., 2021. 11. 30.>

(起算) 2

,
.
.< 2011. 2. 9., 2013. 3. 23., 2014. 11. 19.,
2017. 1. 31.>

2

.< 2013. 3. 23.,
2014. 11. 19.>

1

.< 2013. 3. 23., 2014. 11. 19.>

1 3

「 」 13 1

.<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2.>

[2010. 11. 10.]

[2011. 2. 9.]

2

9 () . . .
(水路) ,

1

[2010. 11. 10.]

10 () 2 . ,

， (實費) .

1. 2 :
 2. :
 3. :
- [2010. 11. 10.]

11 () 2 .
[(舢舨) (埠頭)]

.< 2021. 1. 5.>

1. 2 :
 2. :
 3. :
- [2010. 11. 10.]

12 () 2 .
3 .< 2021. 11. 30.>
(가
， “ ”)

，
(
) .<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3 1 2
， 3

.< 2013. 12. 11., 2014. 11. 19.>

.< 2026. 6. 30.>

[2010. 11. 10.]

12 2 <2021. 5. 25.>

13 () 2 .

[2010. 11. 10.]

14 <2007. 11. 13.>

15 () .
 . < 2021. 11. 30.>

[2010. 11. 10.]

3 .

16 (. .) (日費) . 2

, 4 . ,

()

10 3 ,

2 1 가

. < 2011. 2. 9.>

1 가

1 (2)

.< 2011. 2. 9.>

,

2 1 .< 2013. 3. 23., 2014. 11.

19., 2024. 7. 2.>

. ,

가

,

.

. ,

가

.

<2012. 1. 6.>

[2010. 11. 10.]

17 ()

15

10

1 , 30

10 2

, 60

10 3

. ,

. < 2011. 2. 9., 2013. 3. 23., 2014. 11. 19.>

1

[2010. 11. 10.]

[2011. 2. 9.]

18 ()

16

4

2

, 4

1

. , 「

」 4

,

1

. < 2013. 3. 23., 2014. 11.

19., 2021. 11. 30., 2024. 7. 2.>

1

“

”

.< 2026. 6. 30.>

1. (,) • (

.)

.

.

.

2. 가 12

[2010. 11. 10.]

4

• 가

19 ()

(

“

”

)

(前任地)(2

.

)

(新任地)(2

.

)

.

,

.

.

1.

2.

1

.

.< 2026. 6. 30.>

가

가

6

.

1

.< 2026. 6. 30.>

,

.< 2026. 6. 30.>

[2010. 11. 10.]

20 () (移轉費) 5 .
6
(.)
(가 .
)

가
1 1

[2010. 11. 10.]

21 (가) 가 가 (,
.
가 .
가 가
6 가
가 가
가 가 1
1. :
2. : 12 가
3 2, 12 가 3 1
3 가 6

가 가 2 가
가 가 ()
2 가 가
가 가
()
가 20 3 .

[2010. 11. 10.]

22 (가) 가 6 2 . ,
26 가 ,
26

가

29

가

[2010. 11. 10.]

23 ()

. < 2013. 3. 23., 2014. 11. 19.>

1

2

. < 2011. 2. 9.>

[2010. 11. 10.]

5

24 ()

(前職)

(本職)

(가

가

)

1

3

, 가

22

가

1

4

가

」

71

2

[2010. 11. 10.]

25 ()

(殘務)

[2010. 11. 10.]

26 ()

2

,

2 .

(22 가 가)

2 .< 2016.

1. 22.>

2 7 1 2 9

16 1 , .<

2021. 5. 25.>

2 가 1 22

가 .

,

가 3 9 16

1 .< 2015. 1. 6.>

[2010. 11. 10.]

27 ()

가 가 가

.<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가 가 1

.< 2015. 11. 20., 2016. 11. 29.>

1 가 가

.< 2014. 11. 19., 2017. 7.

26.>

[2010. 11. 10.]

6

28 ()

가

.

.

2

3 1 () .

.

[2010. 11. 10.]

29 () ,

. <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8 ,

.<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

.<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4 . ,

.<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2010. 11. 10.]

29 2()

.

[2020. 3. 10.]

30 ()

, 9 .

[2010. 11. 10.]

31 (가) 「 가 」 48 3

5

가 . < 2021. 11. 30.>

1

.<

2013. 3. 23., 2014. 11. 19.>

[2013. 1. 9.]

< 15680 ,1998. 2. 24.>

1 () .

2 () .

1.

2.

3 ()

24 “ ” “ ” .

•

13 “ ” “ ” .

•

8 2 11 “ ” “ ” .

•

9 “ ” “ ” .

•

21 “ ” “ ” .

•

6 “ ” “ ” .

•

21 “ ” “ ” .

•

58 1 4 “ ” “ ” .

•

2 1 “ 15 1 2 4

• • ” “ 16 1 2 4

• • ” , 2 “ ” “ ” , “

3 • 4 • 13 • 15 2 3 ” “ 4 • 5

• 14 • 16 2 4 ” .

•

3 “ ” “ ” .

•

26 “ ” “ ” .

< 15715 ,1998. 2. 28.>()

1 () .

2 5

6 ()

•

17 1 “ ” “ ” .
 22 1 8 29 3 “ ” “ ” .
 27 1 , 29 1 3 “ ” “ ”
 27 3 “ ” “ ” .
 1 “ ” “ ” ,
 “ ” “ ”
 “ ” “ ” 3
 “ 가
 가
 3 “ ” “ ” “ ” “ ”
 ” .
 4 7 “ ” “ ” ,
 ” .

< 16326 ,1999. 5. 24.>()
 1 () .
 2 3
 4 ()

27 1 29 1 3 “ ” “ ”
 .
 <109>

< 16691 ,2000. 1. 8.>
 , 2000 1 1 .

< 16785 ,2000. 4. 18.>()
 1 () .
 2 ()

17 1 “ ” “ ” .
 27 1 “ ” “ ” , 3 “ ” “ ” .
 29 1 3 “ ” “ ” .
 1 1 1. “ , 1 ” “ , 1 , 33
 2 가 1 ” . 2 1. “ 2 3
 ” “ 2 3 , 33 2 가 2 3
 ” , 3 1. “ 4 5 ,
 가 ” “ 4 5 , 33
 2 가 4 5 , 가
 3 “ ” “ ”

< 17153 ,2001. 3. 20.>

< 17165 ,2001. 3. 27.>()

1 () 2001 3 29 .
 2 ()
 8 1. “ () ”
 “ () ” .

< 17275 ,2001. 6. 30.>()

1 () 2001 7 1 .
 2 ()
 7 1 “ ” “ . ” .
 24 3 “ ” “ . ” .
 1 “ 1 ” “ 14
 ” , 1 1 “ 2 ” “ 12
 13 ” , 2 1 “ 2 3
 ” “ 2 3 , 9 11 ” , 3
 1 “ 4 5 ” “ 4 5 , 5 8

” .

3

< 17484 ,2002. 1. 4.>
 , 2002 1 1 .

< 17776 ,2002. 11. 14.>
 , 2002 11 1 .

< 17881 ,2003. 1. 7.>
 , 2003 1 1 .

< 17994 ,2003. 6. 13.>
 2003 6 13 .

< 18220 ,2004. 1. 10.>
 .

< 18673 ,2005. 1. 7.>
 , 2005 1 1 .

< 19270 ,2006. 1. 12.>
 , 2006 1 1 .

< 19414 ,2006. 3. 29.>()

1 () .

2 () .

16 2 “ ” “ ” , 18 1 “ ”
 “ ” “ ” “ ” “ ” .

< 19523 ,2006. 6. 12.>
2006 7 1 .

< 20152 ,2007. 7. 2.>()
1 () , 2007 7 1 . < >
2 4
5 () 「 」 .
1 1 “ ” “ () ” ,
2 “ ” “ () ” .

< 20381 ,2007. 11. 13.>
1 () 2008 1 1 . , 19 21
5 .
2 (가) 19 21 5
2007 7 1
가 .
3 ()
가
7 , 8 2, 10 14 , 16 ,
17 , 26 , 1 4 7
.
1
.
1 2 가
.

< 20402 ,2007. 11. 30.>()
1 () .
2
3 ()

8 3 “ ” “ ”

.

4

< 20741 ,2008. 2. 29.>()

1 () . < >

2 5

6 ()

8 2 3 4 “ 가 ” “ ” .

17 1 “ ” “ ” .

27 1 , 29 1 3 “ ”

“ ” .

29 4 “ ” “ ”

” .

1 1 , “ ” “ ”

” .

. , 가 , ,

2 1 “ 가 ” “ ”

” , 2 “ ” “ ”

.

3 “ ” “ ”

” .

8 .

구분	지급대상	지급방법																		
1. 수산관계 공무원여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산제품의 검사 및 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정여비액을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이를 제외한다. 다만, 아래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와 동·식물검역공무원이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군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여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실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업통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2. 산림보호 공무원여비	산림보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table><tr><th>구분</th><th>도서지역</th></tr><tr><td>부산광역시</td><td>강서구 천가동</td></tr><tr><td>인천광역시</td><td>옹진군, 강화군 삼산면·교동면 및 서도면</td></tr><tr><td>경기도</td><td>안산시 대부동</td></tr><tr><td>전라북도</td><td>부안군 위도면</td></tr><tr><td>전라남도</td><td>신안군, 여천군 돌산읍·남면·화정면 및 삼산면, 고흥군 금산면·봉래면 및 통일면, 영광군 낙월면, 진도군 조도면, 완도군 금일읍·노화읍·금당면·생일면·보길면·신지면·고금면·약산면·청산면 및 소안면</td></tr><tr><td>경상북도</td><td>울릉군</td></tr><tr><td>경상남도</td><td>통영시 산양읍·육지면·한산면 및 사량면, 남해군 창선면</td></tr><tr><td>제주도</td><td>북제주군 추자면</td></tr></table>	구분	도서지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삼산면·교동면 및 서도면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전라남도	신안군, 여천군 돌산읍·남면·화정면 및 삼산면, 고흥군 금산면·봉래면 및 통일면, 영광군 낙월면, 진도군 조도면, 완도군 금일읍·노화읍·금당면·생일면·보길면·신지면·고금면·약산면·청산면 및 소안면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육지면·한산면 및 사량면, 남해군 창선면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구분	도서지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삼산면·교동면 및 서도면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전라남도	신안군, 여천군 돌산읍·남면·화정면 및 삼산면, 고흥군 금산면·봉래면 및 통일면, 영광군 낙월면, 진도군 조도면, 완도군 금일읍·노화읍·금당면·생일면·보길면·신지면·고금면·약산면·청산면 및 소안면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육지면·한산면 및 사량면, 남해군 창선면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3. 동·식물검역 공무원여비	국립식물검역원의 지원에서 식물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을 포함한다)에서 동물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4. 축산물검사 공무원여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으로서 축산물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5.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여비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공안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6. 정부구매물자 가격조사요원여비	조달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정부구매물자의 가격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는 공무원																			
7. 징병검사 공무원여비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8. 통계조사 및 통계지도 공무원여비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9. 지식경제부 현업기관 공무원여비	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출장 공무원	출장일수에 따라 일액여비를 지급한다.																		
10. 농산물품질관리 공무원여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105>

< 20916 ,2008. 7. 17.>

.

< 21452 ,2009. 4. 30.>(가)

1 () .

2 ()

.

1 2 가 “ 2 3 ” “ 2
3 , 가 ” .

< 22474 ,2010. 11. 10.>

1 () .

2 () 5 2010 6 1
(,)

.

3 () 23

,

.

< 22661 ,2011. 2. 9.>

1 () 2011 7 1 .

2 ()

8 2, 16 , 17 , 23 4

.

1

.

1 2

.

< 22962 ,2011. 6. 7.>()

1 () 2011 6 15 .

2 ()

.

8 1 “ [(支院)] ” “

() ” , 3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를 포함한다)에서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1(

3

< 23116 ,2011. 9. 6.>(.

)

1 () 2011 12 28 .

2 4

5 ()

.

1 1 “ () ” “

”

< 23501 ,2012. 1. 6.>

1 () .

2 () 5 20

.

3 () 16 , 1 1 ()

2 가 , 2 , 4 9

.

< 23644 ,2012. 2. 29.>()

1 () . , . . . < > . . . 2

3 2012 7 22 .

2

3 ()

1 2 가 “ ” “ ” .
<69>

4

< 23676 ,2012. 3. 26.> ()
1 () .
2 () .
8 1 3 “ () ” “ () ” .

< 24149 ,2012. 10. 29.>

.

< 24298 ,2013. 1. 9.>

1 () . , 31 2013 6 12
2 (가) 31 2013
6 12 .

< 24425 ,2013. 3. 23.> ()

1 () . , 6

.

2 5

6 () 1&

1*

8 2 2 , 3 5 , 12 3 , 16 3 , 17
1 , 18 1 , 23 1 , 27 1 , 29 1 3
4 “ ” “ ” .

29 3 “ ” “ ” .
 24298 31 2 “
 ” “ ” .
 1 1 가 “ ” “ ” , ,
 “ ” “ ” “ ” .
 , 가 , ,
 2 1 2, 2 4 “ ” “
 ” , 3 “ ” “
 ” .
 3 “ ” “ ” .
 4 1 2 4 “ ” “ ”
 .
 6 2 7 8 “ ” “ ”
 .
 8 1 “ () ” “
 () ” , 2 “
 ” “ ” .
 8 1 “ ”
 “ ” , 4 “ ” “ ”
 , 7 “ ” “ ” .
 1(<129>

< 24924 ,2013. 12. 11.>
 1 () 2014 1 1 . , 1 2013
 12 12 .
 2 () 12 3
 2014 1 1
 .
 3 () 12 3 , 4 , 2
 4 2014 1 1 .

< 25375 ,2014. 6. 11.>()
 1 () . < >
 2 4

5 ()

1 1 “ ” “ ” .

< 25751 ,2014. 11. 19.> ()

1 () . , 5

2 4

5 () <117>

<118>

8 2 2 , 3 5 , 12 3 . , 4
 , 5 , 16 3 , 17 1 , 18 1 , 23 1 ,
 27 1 , 29 1 4 31 2 “ ”
 “ ” .

27 3 “ . ” “
 . ” .

1 1 “ ” “ , ” .
 2 1 2, 2 4 “ ” “
 ” .

3 “ ” “ ” .
 4 1 2 4 “ ” “ ” .

<119> <418>

< 26042 ,2015. 1. 6.>

1 () .

2 () 26 5 , 1, 2, 4, 6 2 8
 2015 1 1 .

3 () 5 2015 1 1 20

< 26659 ,2015. 11. 20.>()

1 () 2016 1 25 . < >

2

3 ()

.

27 2 “ ” “ ” .

2*

4

< 26935 ,2016. 1. 22.>

1 () .

2 () 26 2 4 2016 1 1

.

3 () 6 2 2016 1

1

.

< 27617 ,2016. 11. 29.>(

)

1 () 2016 11 30 .

2 4

5 ()

.

27 “ , (警備矯導) ” “ ” .

1&

< 27787 ,2017. 1. 10.>()

1 () 1 .

2

3 ()

.

1 2 가 “ 3 () 5

” “ 3 () 5

(「 」 3 1) ”

.

< 27825 ,2017. 1. 31.>

1 ()

2 () 5 2017 1 1

< 28211 ,2017. 7. 26.> ()

1 () , 8

2 7

8 () <355>

<356>

27 3 “ ” “ •
” .

1 1 “ 가 , ” “ ,

8 7 “ ” “ ” .

<357> <388>

< 30515 ,2020. 3. 10.> (가

28)

2020 4 1 . < >

< 31380 ,2021. 1. 5.> (473

)
. < >

< 31706 ,2021. 5. 25.>

1 ()

2 () 1, 4 9

3 ()
 4 2 “ 「 」 1 2 ” “ 「
 」 1 2 ” .

< 32168 ,2021. 11. 30.>
 . , 31 1 2021 12 9

< 32627 ,2022. 5. 9.>(가)
 1 () 2022 7 21 .

2

3 ()
 .
 1 1 “ ” “ 가 ” .

< 33312 ,2023. 3. 2.>
 1 () .
 2 () 2 .

< 34626 ,2024. 7. 2.>()

1 () .

2

3 ()

16 3 “ ” “ ” .
 18 1 “ 「 」 ” “ 「 」 ” ,
 “ ” “ ” “ ” “ ” “ ” .

< 35811 ,2025. 10. 1.>(306
)

・ ,

・

< 35948 ,2025. 12. 30.>()

1 () 2026 1 2 . , 4

・

2 3

4 () <153>

<154>

・

27 1 , 29 1 3 , 4 , 2 2 ,

4 3 “ ” “ ” .

<155> <176>

< 36013 ,2026. 1. 2.>()

1 () .

2 3

4 () .

1 1 가 “ 「 」 12 1 ” “ 「

」 12 1 ” , “ 「 」 12

1 가 ” “ 「 」 12 1 가 ” .

< 36492 ,2026. 6. 30.>

2026 7 1 .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위 표의 제2호란에 따른 숙박비를 적용할 때 통합특별시는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의 시·군 및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6.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개정 2025. 12. 30.>

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표(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항공운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실비(1등석)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실비(2등석)

비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	60	실비(상한액: 471)	186
	나	60	실비(상한액: 422)	136
	다	60	실비(상한액: 271)	102
	라	60	실비(상한액: 216)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50	실비(상한액: 389)	160
	나	50	실비(상한액: 289)	117
	다	50	실비(상한액: 215)	87
	라	50	실비(상한액: 161)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40	실비(상한액: 282)	133
	나	40	실비(상한액: 207)	99
	다	40	실비(상한액: 162)	72
	라	40	실비(상한액: 108)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35	실비(상한액: 223)	107
	나	35	실비(상한액: 160)	78
	다	35	실비(상한액: 130)	58
	라	35	실비(상한액: 85)	49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30	실비(상한액: 176)	81
	나	30	실비(상한액: 137)	59
	다	30	실비(상한액: 106)	44
	라	30	실비(상한액: 81)	37
6. 삭제 <2021. 5. 25.>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

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경비 총액은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 4) 중동·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 2) 남·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20조 관련)

구분	지급 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 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 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 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 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를 포함한다)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의 50 퍼센트를 더한 금액
국외 이전비	1.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2.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이 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 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15세제곱미터의 이사화물 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 에 15세제곱미터 초과 25 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 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 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20조 관련)

구분	지급 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국외 이전비	1.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2.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실비 15세제곱미터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15세제곱미터 초과 2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국외 가족여비 지급 기준표(제22조 관련)

지 급 사 유	지 급 액
1. 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새로운 근무지까지 동반할 때	가. 12세 이상의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및 준비금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나. 12세 미만의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및 준비금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외국 근무 중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	
3. 외국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이 소속 장관의 명에 따라 본국에서 재교육을 받기 위하여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일시 귀국할 때. 다만, 4년마다 한 차례로 한정한다.	
4.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동반 가족을 철수시킬 때	
5. 외국 근무 중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를 동반한 공무여행을 할 때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을 지급한다.
6. 제26조제5항의 경우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명 또는 본인과 동반하여 배우자가 일시 귀국할 때	
7. 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간 한 차례만 가족 동반으로 다른 지역에서 휴양을 할 때와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간 한 차례만 가족 동반으로 다른 지역에서 의료검진을 받을 때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을 지급한다.
8. 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산지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간 23일 범위에서 분기별로 한 차례 가족동반으로 저지대(低地帶) 요양을 할 때	

비고: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일시 귀국한 경우에는 국내 체류 중 1개월의

범위에서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족여비(운임은 소속 장관이 허가한 여행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지급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7] 삭제 <2010.11.10>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제29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 방법
1. 수산 관계 공무원의 여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산물 검역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 단속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다만, 동물·식물검역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 위치한 시·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여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실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2. 동물·식물 검역 공무원의 여비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서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 축산물검사 공무원의 여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으로서 축산물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4.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여비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경찰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5. 통계조사 및 통계지도 공무원의 여비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에 따라 일액 여비를 지급한다.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업기관 공무원	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 출장 공무원	

원의 여비	
7. 농산물품질 관리 공무원 의 여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 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 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 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제30조 관련)

해 당 자	지 급 기 준
1. 공무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 지급등급
2. 사립학교의 교원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여비 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직원	가. 임원: 별표 1 제1호라목의 여비 지급등급 나. 가목 외의 직원: 별표 1 제2호의 여비 지급등급
4. 민간기업체의 임원·직원	공공기관의 임원·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2020. 7. 2.] [05102 , 2020. 7. 2.,]

() () 061 - 260 - 0776

1 () (“ ”)
.<

2017.3.9.>

2 () , , , , , 가
.

3 () 「 」 1 1 가
.< 2017.3.9.>

1 「 」 1
.< 2017.3.9.>

4 () 「 」
.< 2017.3.9.>

1. 8 2 16 “ ” “ ”
.”

2. 17 • 22 • 26 29 “ ” “ ” .

3. 17 1 “ ” .

4. 18 1 “ 「 」 4 1
” “ ” .< 2020.7.2.>

5. 24 5 “ 「 가 」 71 2 ” “ 「 」 63 2
” .

6. 27 .

7. 29 1 4 “ ”
2 “ ” ,

3 .

8.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

< 2610 ,1998.8.20>
() .
() 2084 .

< 3433 ,2010.12.30>
.

< 4176 ,2017.3.9>
.

< 5102 , 2020.7.2> ()
.



[2024. 5. 28.] [287 , 2024. 5. 28.,]

()044 - 205 - 3351

1.

「 」 74 (), 「 」 (" ")
「 」 (" ")

2.

「 」, 「 」 「 」 「 」

3.

○ (. . .)
- , " "

()
가 「 가 」, 「 」, 「 」

4.

가.

○

○○○시·도(시·군·구)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교육원(인재원)
교육훈련 파견근무를 명함(○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원(인재원)
교육훈련 파견근무를 명함(○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

○ . (「 」 27 2
2 2)

가

가

.
○.
()

1.

「 』 6 6 , 7

2.

가.

○ 5 (7 1)

- 2 1

- . ,

.
○

(7 1 , 1)

- 「 』 (" ") 33 2 1 • 2 (

,)

○ :

× "

*

,

가

○ (7 2)

- ,

,

* 가 가 가

2 .

.

○ (7 3)

- 7 1 1

.

＊

○ (7 1 1)

구분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5급 공무원 중 직위보유자	5급 이하	종전 기능직 공무원	종전 별정직 공무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2011년부터 2013년 12월 11일까지	5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2013년 12월 12일 이후	5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 】

(1) "5 " . . (.) 5

. . , . , . .

(2) . (5) : 50

(3) " " .

가. 11531 「 」 4 1

. 11531 「 」 5

(4) " " .

가. 11531 「 」 4 2

. 11531 「 」 5

(5) , , 가

5 (5

) 60

(6)

30 , . .

.(, .)

○

＊

"

×

"

-

"

÷ 12"

,

(歷)

(月)

15

1

-

＊

＊

2008. 1. 1.

-

○

-

,

○

•

,

-

「

」

63

27

2

1

(4

)

-

, 「

」

63

27

2

1

(4

)

,

,

＊

1

.

-

,

가

,

,

,

＊

,

,

1

•

•

,

가

,

가

- 「」 65 3 , 70

- 「」 65 4 ,
가

○ 가 가
- 가 (60) 가

- , 가
가 ,

○
- 12

-

- * 가

* 「」 25 ,
1 80 .

◆ **적용 사례** (5급 o o o이 다음 조건하에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

- 교육훈련 기준시간 : 지자체 기준시간('08년 50시간, '09년 60시간 '10년 70시간)
교육훈련기관 교육이수 의무비율('08'09 : 20%, '10 : 30%)
- 인사정보 : 육아휴직('08.3.1.~'09.2.13.), 병가('10.2.1.~'10.3.31.)
- 교육훈련 이수시간 : '08년(20시간), '09년(65시간), '10년(31시간), 계(116시간)
* 교육훈련기관 교육이수시간 : '09년(14시간), '10년(10시간), 계(24시간)
- 산출시점 : 2010. 6. 30.

☞ **상시학습 적용 근무연수 산출**

- '08년 : 2월(1.1~2.28.), '09년 : 11월(2.14.~12.31., 15일 이상 1개월 적용)
'10년 : 6월(1.1~6.30.)

☞ **상시학습 충족조건(근무연수× 연간 기준시간)**

- '08년 : 전체(2월÷12월) × 50시간 = 8시간 (소수점 이하는 절사)
- '09년 : 전체(11월÷12월) × 60시간 = 54시간 (소수점 이하는 절사)
- '10년 : 전체(6월÷12월) × 70시간 = 35시간
- 계 : 전체(97시간),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22시간)
* ['08'09 전체시간(62시간) × 20% + '10 전체시간(35시간) × 30%]
합산 후, 소수점 이하 절사

☞ **충족여부**

- 3년간 총 교육이수시간이 116시간으로 충족요건인 97시간 이상이고,
- 교육훈련기관 교육이수시간이 24시간으로 충족요건인 22시간 이상으로 승진 가능

3.

가.

○

*

(4 3)

.

○

- , (1)

.

- • • ()

가 . .

가

- . ,

, , , , ,

○ , 1

○

•

•
() •

- , 가 *

,

* () ,

•

○

•

-

, 가 , ‘

,

•

* : 가 , , , , ,

- 10%

-

○

•

-

‘

,

•

-

10%

-

•

•

*

*

<

>

① 공통 필수역량학습 지정

- 법제, 복지, 통계, 홍보, 기획, 정보화, 기록물 관리 등 공통직무

② 직급별 필수역량학습 지정

- 관리자 : 리더십, 갈등관리, 변화역량 교육 등

- 6급 : 정책기획, 의전, 발표기법, 홍보기법 등

- 7급 : 예산실무, 법제실무, 보고서 작성 등

- 8·9급 : 공직관 함양 교육, 민원실무, 회계실무 등

③ 직렬별 필수역량학습 지정

- 기술직 : 건축행정, 토목행정, 환경행정 등

- 세무직 : 지방세법, 세무행정 등

-

,

•

,

•

-

○ ‘ , ‘ , ’

○ K - MOOC*

* (Massive Open Online Course)

가 ()

.

○

,

○

가 ,

-

가

,

,

•

가

가

-

가

○

•

-

,

(

,

)

가 (

1

)

4.

가.

○

:

(

•

)

-

-

*

*

•

○

-

:

•

-

:

2

(

가)

*

,

•

○

:

()

-

○ : (" ")
 - (T/F)
), ()
 -

○ : 2 ()
 - 4 : 가
 - 5 : 가

○ :
 - ,
 가
 - 가
 ,
 가
 - 1 ,
 * , , , 가
 3
 가 ()

○
 -
 -
 ○
 - () 2
 (가)
 - ,
 ()

부서장(과장급 보조기관)	인사·교육훈련부서(인사과 등)
소속 직원 교육학습실적 종합관리 - 자기개발계획 수립 지원 - 자기개발계획 실적관리 의무화 - 교육훈련실적 분기별 점검 및 독려 부서주관 교육, 개인학습시간 확인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등 반영 - 승진임용 등의 경우 연간 교육훈련 시간 충족 여부 확인 등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실적 입력 - 교육훈련부서에서 주관하여 교육명령(교육파견)을 발하여 실시하는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민간교육훈련기관 교육은 교육훈련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실적입력 - 부서장(과장)이상 공무원 중 상급자가 교육훈련 실적 확인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 주관(총괄)부서에서 실적확인 실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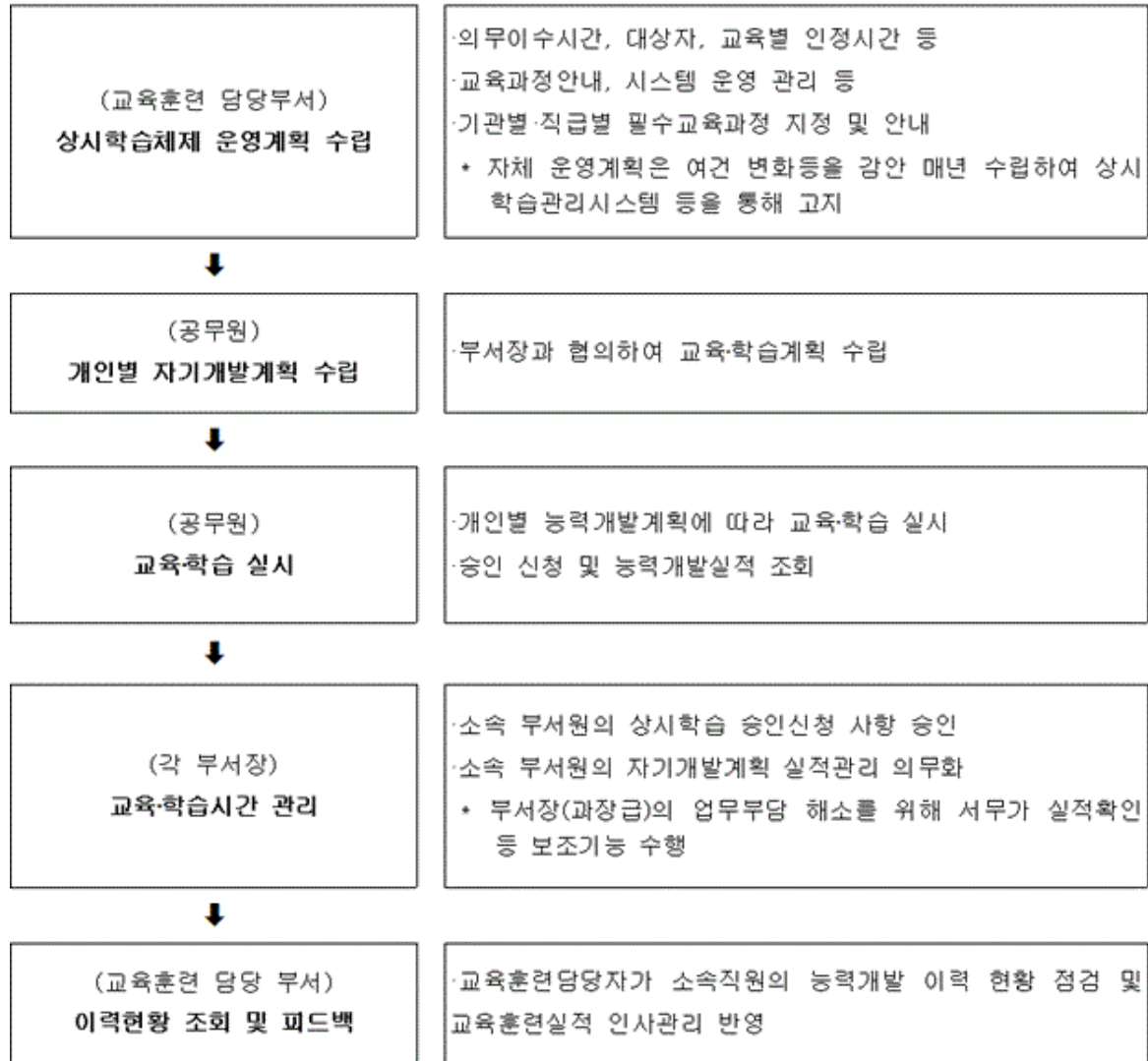
• (•)

• (•)

가

「 』

＜ 참고: 상시학습체제 업무처리절차(예) ＞



○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text{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frac{\text{전일제공무원}}{\text{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20 」

적용 대상	교육훈련(상시학습) 기준시간	
	전일제	시간선택제
일반직 5급 이하 (직종개편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신설직렬 제외)	80시간	40시간

○ ,

○ . ,

-

5. ()

○ 2008 1 1

2009 1 1

○ 5 (4)

2015 1 1

2016 1 1

○ .
가
(" ")
, 1 . ,

1.

○ 「 」 19 30
(‘ ’)

2.
가.

○ : 5

과 정 명	직 위	교육대상	기간	연 령
고위정책과정	시·도(의회) 국장(의회사무처장), 시·군·구 부단체장	지방3·4급	43주	55세 이하
고급리더과정	시·도(의회) 과장, 시·군·구(의회) 국장	지방4급	43주	55세 이하
중견리더과정	시·도(의회) 계장, 시·군·구(의회) 과장	지방5급	43주	55세 이하
여성리더과정	지방6급 공무원	지방6급	43주	53세 이하
글로벌리더과정	지방5급 이하 공무원	지방5급이하	43주	52세 이하

○ : 2

과 정 명	직 위	교육대상	기간	연 령
통일정책 지도자과정	시·도(의회) 국장(의회사무처장) 및 과장, 시·군·구(의회) 국장 및 부단체장	지방3·4급	43주	54세 이하
통일미래 기획과정	시·도(의회) 계장, 시·군·구(의회) 과장	지방5급	6개월 (연2회)	50세 이하

○ 가 : 1

과 정 명	직 위	교육대상	기간	연 령
<u>재난안전 중견리더과정</u>	<u>시·도 계장, 시·군·구 과장</u>	<u>지방5급</u>	<u>6개월 (연2회)</u>	<u>55세 이하</u>

○ : 1

과 정 명	직 위	교육대상	기간	연 령
<u>지방의회 의정지원과정</u>	<u>지방의회 소속 4·5급</u>	<u>지방4·5급</u>	<u>43주</u>	<u>55세 이하</u>

·

○ 50

○ · 가

○ · , ,

○ · ·

· 30% 40%

○ 3

○

· 6 6

○ 「 」

- (, , ,) () ,

· ,

○ 가

- ·

- , 5

-

○ , ·

·

○ 가 가

○ (,) 6 ·

1

6

○

○

2

○

.

○

-

○

-

○

○

○

,

,

○

가

,

가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가

가

,

가

가

,

(e - ticket)

(,)

30

(

6

구분	대상 직급	연령요건	교육기간	비고
시·도 교육원	지방6급 이하	53세 이하	1년 이내	
000민간위탁	지방6급 이하	53세 이하	1년 이내	

6

(30%)

100

100

6

， 6 1%

100 : . .

○
- 2 (. ,)
-

-

4.

가.

○ (6)

.

○

,

○

,

.

○

,

○

, ,

,

,

○ 34 1

-

가

-

. , .

-

,

. ()

1.

○ 「 19 30 36

(‘ ,)

2.

.

가.

○ •

○ () 5

(, • • •) ,

- , 6 ,

, 1

.

○ •

, 가

○ •

○ 6 , , •

가

.

○

○ •

○ ()

○ 가

○ 가

3.

가.

○

- ,

○ ,

○

.

○

가

-

,

- 2 6 , • 1
- 가
- ,
- ,
- 가
- (, , ,)
-
-
-
- ()
- ,
- 32 3 가
- 가
4. •
-
-
- ,
-

○ , ,

○

○ 가 가 , 가

5.

가.

○

가 . .

○

.

○ 가

○ , . 가

20%

-

- .

- *

* 가

6.

가.

○ (6)

2 1

.

○ 6 34

○

,

-

,

.

○ 34 1 "

"

○

，

，

，

，

，

○ 34 1

.

， ，

가

○

，

34

.

○

，

，

-

.

.

-

.

.

가

-

-

.

○

，

(「

」

)

○

，

7.

가.

○

- 「
・
」

○

- 「
・
」

○

- 「
・
」
()
・
」

8.

○ ・ (・ ・) ()
(2)

.

1.

가.

○ 「 (2019. 6. 18.)
가

○

.

○

- 「
・

○

- 「
・
」
(5 (, , ・ ・) , 5
(5 5)

1

○

-

-

・

- . . ()

- 가

- .

- 가

○

- . , 가

- , . 6

가

○

2.

가.

○

30

○

.

.

○

- 31

-

-

-

-

-

-

-

-

-

-

-

-

-

-

-

-

-

-

-

-

-

-

-

3

1

(「

」

63

2

)

3

50

(

50

(

55

(

)

7

훈련종류		어 학 성 적
장기훈련 (6개월 이상)	영어권	TOEFL IBT 75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IELTS 5.5점, G-Telp(Level II) 70점, TOEIC 675점, NEW TEPS 327점 이상
	비영어권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이상, 또는 중국어 신HSK 5급 180점 이상·일본어 JLPT N2 100점 이상
단기훈련 (6개월 미만)	영어권	TOEFL IBT 75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55점, IELTS 5점, G-Telp(Level III) 60점, TOEIC 590점, NEW TEPS 297점 이상
	비영어권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55점 이상

-

,

,

-

2

,

가

1

10

○

「

」

「

」

-

,

.

○ KDI

- KDI

KDI가

○

.

-

.

가

.

50

(

53

)

5

.

1

(

.

5

1

)

.

.

.

(

)

.

가

.

.

가

-

2

(

,

가

4

)

○

- : (·)

-

• 48

• ()

() 가

• 6

• 가 , 가 ,

가 •

• , 4 , 6

• 2 가

•

○

○ 3 ,

•

○ 가

,

○ 가 , 가 , 5

- , 가

• 가

• 가 가

○

○ , ,

○

• ,

•

○ 가

, 가,

-

,

- , 2 (2
- 6) , 6
- ,
- ,
- 3 (6) ,
-
- 「 」 39 4

[]

구 분	준비 및 정리기간
3개월 미만	9일 이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2일 이하
6개월 이상 1년 미만	17일 이하
1년 이상	30일 이하

-
- 5 5 7%
- 3
- 32
- ,
-
-

○

○

•

○

- ()

,

. , 6

-

(1

)

-

(1

),

(

10

)

-

•

()

-

(

10

)

○

○

가

가

,

가

•

○

-

•

-

, ,

○

-

,

○

-

,

•

○

-

,

가

가

(transfer)가 가 ,

(가)

가 가

<구비서류>

- 변경기관이 표시된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 기 훈련내용(성적증명서 등 첨부)
- 훈련계획 변경내용 사유서 및 향후 훈련계획서
- 훈련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감내역 및 증명서류
- 기타 훈련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명서류

○ ()

: 가

1

<구비서류>

- 변경(연장)기간이 표시된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 기 훈련내용(성적증명서 등 첨부)
- 훈련기간 연장사유서 및 향후 훈련계획서
- 훈련기간연장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감내역 및 증명서류
- 기타 훈련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명서류

50 가 1

1 가 , 6

6

가

○

3

30 () ()

() ()

,

가

○

-

가

,

가

-

6

.

.

-

가

〈국외훈련 결과보고서 평가 등 사후관리 방안〉

- 기관별 '국외훈련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과보고서 등 평가 실시
 - ※ 평가 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 (평가기준) 보고서제출시기, 다른 보고서와의 유사성(표절 등)여부, 당초 훈련계획의 달성도 여부, 정책수립 시 반영 등 업무활용 가능성 등(별표 4 평가표 활용)
 - 제출시기 : 훈련파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 여부
 - ※ 각 기관 교육담당자는 훈련공무원이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불성실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추가 30일 이내에 보완조치 하도록 명령
 - 표절여부 : 국내외 다른 보고서(논문) 등과의 유사성 및 표절 여부 등에 대해 집중 검증
 - 당초 훈련계획의 달성도 여부 : 파견 시 부여받은 당초 훈련계획과의 부합여부 및 달성도
 - 업무활용 가능성 : 정책수립 등에 국외훈련 결과보고서의 활용 가능성
- (평가방식) 평가대상 과정(장기 국외훈련 전과정)을 통합하여 평가
 - 개인별 점수에 따라 '탁월·우수·보통' 등으로 배분하되, 필요시 직급별(4급이상 및 5급이하 등)로 구분평가
 - 평가대상자가 2인 이하인 경우만 모두 동일등급으로 평가 가능
- (평가시기) 매년 12월 말까지 평가 완료(기관별 평가기준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복귀자 전원)
- (평가결과 활용)
 - 개인별 평가결과를 내부통신망에 의무적으로 공개
 - 정책·법령수립에 반영, 해외사례와 연계한 매뉴얼 제작, 내부교육자료로 활용 등 훈련결과를 적극 활용
 - 평가결과는 필요시 '상시학습' 시간* 차등 부여 및 인사정책(성과급 평가, 근무평정 등) 등에 반영
 - * 상시학습 반영 예시 : 보고서 평가결과가 탁월인 경우 100시간, 우수인 경우 50시간 등
 - 개인별 평가결과 다른 보고서와 유사성이 높거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 당초 훈련과제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재작성 요구 및 보완 조치
- (훈련성과보고회) 훈련성과를 공유하고 업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국외훈련 이수자에 대한 '훈련성과보고회' 적극 활용
- (훈련비 환수 기준)

- 예시) 한국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학술진흥재단,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전문 연구기관에 등록된 보고서나 인터넷상에 게재된 보고서 중 제목 또는 목차 등이 유사한 보고서와 비교하여 표절 및 활용도 등 집중 검증

3.
가.

○ 27 3 2 1

구 분	구 비 서 류
공통 서류	- 훈련계획서(세부연구계획서 포함) - 입교허가서류, 초청장 등(학사일정 포함) ※ 자매결연도시 직무파견의 경우 불필요 - 3급 이상의 경우 교육이수후 초과 현재 인원 해소대책 - 어학증명서 및 서약서(자체징구)
박사과정훈련(외무복무 중 휴직포함)	지도교수 의견서, 첨단과학기술분야 확인서,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장학금수혜(예정)증명서
국제기구, 외국정부기관, 연구소 훈련	훈련기관 안내자료, 훈련비 증명서
기타 훈련	#

가

가

가

가

60%

60%

(Blended Learning)

. (Courseware)

○

.

(1) : ()

(2) : ()

3.

가.

○

○

가

.

○

○

가

. 『

』

○

,

•

『

』

○

•

•

•

○

,

4.

가. () :

○

•

○

.

: 『

』

○

○

가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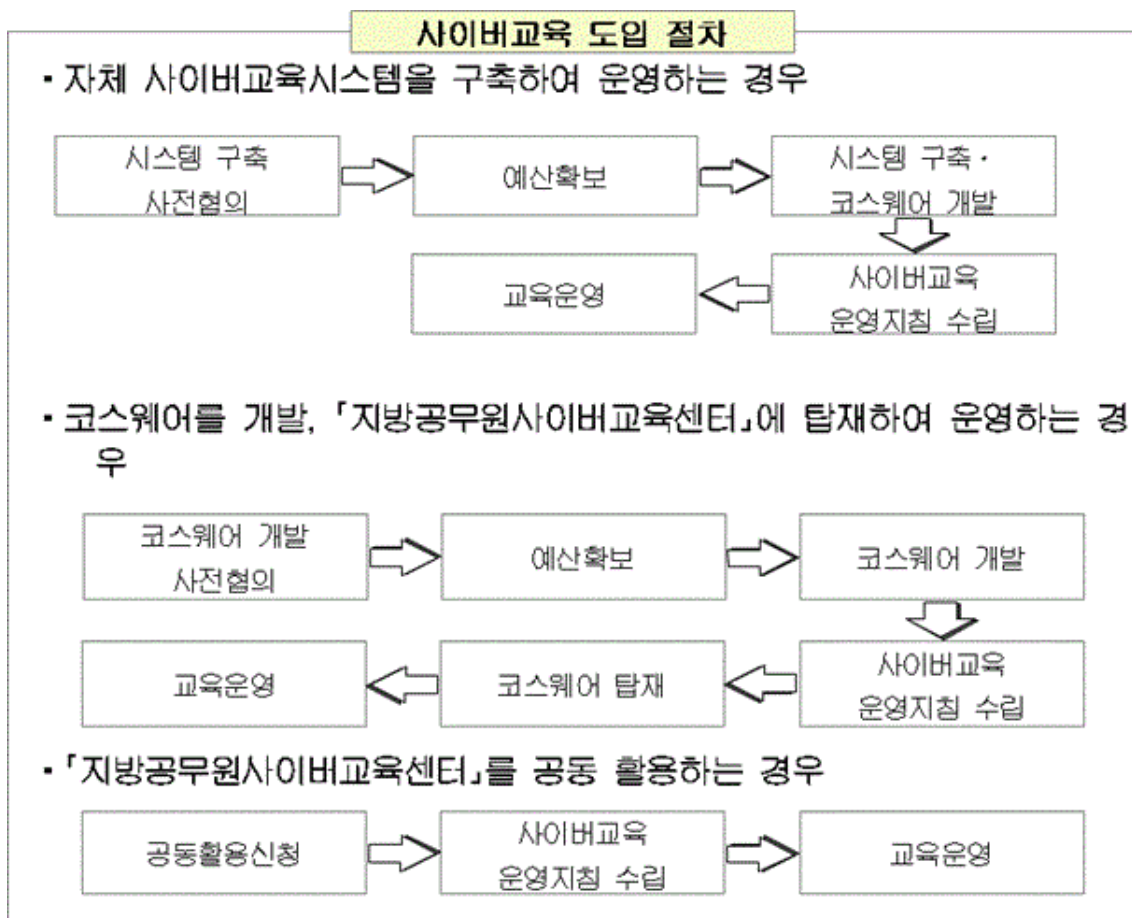
,

:

○ :
-
•
() , , ,
-
•

가

○ :
5.



1. 「 」 17 ,
13 , 14

2. ○
○ ,

○ 「 25 」

3.

가.

○ ,

13 1

.

○

○ () ,

19 5

가

()

4.

가.

○ 3 「 」

○

,

* " " () • (

)

가 12

(「

」 18 2)

*

가

. ,

(「 」 6)

.

○

3 「

」

- , 「 」 8 2 「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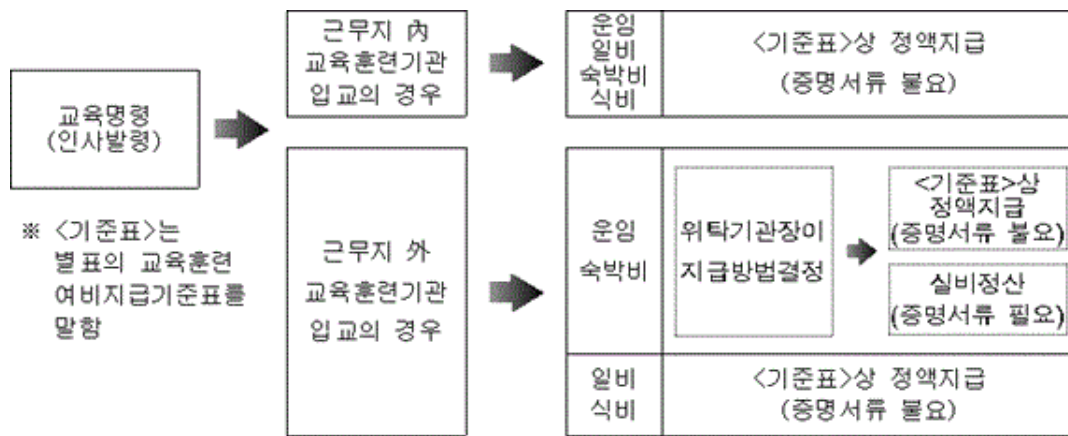
3 () 「

」 2

- 「 」 「

」

○



6

(,)

가 12km ,

(.) ,

(前日)

(後日)

3 「

, 「

」 2

5 , ,

3 「

」

가 ,

가

가

가

「

」 3 , 4 , 5 , 6

「

」 8 2 , . .

「

」 16 ,

18 , ,

28 1 , 29

1

「

」 17

5.

()

-
- . ,

- ,

.

1. 가
 ,

2.

가.

○ : 「 」 9 ()

-

○

-

「

」 (28211 , 2017.7.26.)

「

」 21

가

(' 17)

.

○

-

「

」 29 2

6 2

○

(,) , ()

.

가

○ : 「 」 21 (가), 「

」 16 (가)

○

,

가

.

○

. 가 가

○ 가

,

.

○

,

.

.

3.

○

(6

)

2

○

「

」

,

< 203 ,2008. 11. 24.>

2008 11 24 .

< 285 ,2009. 12. 15.>

2010 1 1 .

< 343 ,2010. 12. 24.>

2011 1 1 .

< 386 ,2011. 12. 13.>

2012 1 1 .

< 440 ,2012. 12. 28.>

2013 1 1 .

, 2013 7 1 .

< 1 ,2013. 3. 25.>

.

< 63 ,2013. 12. 30.>
2014 1 1 .

< 7 ,2015. 1. 16.>
2015 1 16 .

< 41 ,2016. 1. 22.>
2016 1 22 .

< 59 ,2016. 7. 1.>
2016 7 1 .

< 78 ,2017. 1. 23.>
2017 1 1 .

< 1 ,2017. 7. 26.>
.

< 26 ,2018. 3. 9.>
.

< 70 ,2019. 5. 1.>
.

< 97 ,2019. 12. 26.>
.

< 115 ,2020. 6. 10.>

1 () 2021 1 1 .

2 () ‘ . () ,
2022 3 1 .

< 125 ,2020. 9. 9.>

.

< 184 ,2021. 12. 6.>

1 () 2022 1 13 . , ‘ . () ,
5. . ,

2 ()

1 2 3 2

60

(31675 , ' 21.5.11.) 1 2 3 2

.

< 209 ,2022. 6. 9.>

.

< 240 ,2023. 2. 15.>

1 () .

2 () ‘ . () 5. . ,

‘ . 2. .
()

.

< 287 ,2024. 5. 28.>

1 () 2024 5 28 .

2 ()

.

1. .

2.

.

.

2. . ()

6.

.

3. .

2.

.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별표 1]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표준안)

- 교육시간은 1일 7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실교육시간이 7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시간 인정
 - 실시간 온라인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사이버교육은 교육 차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차수별 이수시간을 분 단위까지 산정하여 인정시간을 부여할 수 있음
- 예) 10차수인 사이버교육과정이 차수별 시간이 25분으로 구성된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인정시간 : 10차수*25분=250분(4시간10분 인정)
- 교육훈련부서 교육명령(협의)이 없는 사이버교육의 경우 개인학습으로만 인정
 - 직무워크숍 등은 교육훈련부서에서 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교육시간을 인정하되, 단순 업무회의, 전달교육, 설명회 등은 교육시간에서 제외
 - 강의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또는 타 기관의 강의 요청에 의하여 출강하는 경우만 인정
 -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시 상시학습(4시간) 인정
 - 기관주관 헌혈의 경우는 기관주관 교육으로 인정하고 개인헌혈은 개인학습으로 인정함(최대 인정범위는 월 4시간)

교육·학습유형			인정시간	최대 인정시간	인정근거
교육훈련 부서주관 (의무교육)	교육기관교육 (지방자치단체개발원, 시도교육원, 중앙부처 소속 교육기관)	기본,전문,기타	교육시간	100	교육수료 통보
	민간교육기관교육 (교육주관부서의 교육명령이 반드시 필요)	기본,전문,기타	교육시간 (대학·대학원과정은 개인학습 인정시간 준용)	100	교육수료 통보
	국내위탁교육 (시행령 제4장에 의한 국내위탁교육)	6개월 미만	교육시간	100	수료증, 연수보고서 등
		6개월 이상	교육시간	160	
	국외위탁교육 (시행령 제4장에 의한 국외훈련계획)	1개월 미만	교육시간	50	수료증, 연수보고서 등
		6개월 미만	교육시간	100	
		6개월 이상	교육시간	160	
기관주관 교육 (학습 및 연구활동)	직장교육 (기관별 필수교육과정 포함)	직무,시책,소양	교육시간	80	주관부서 확인
	직무 워크숍 등 (기관 및 부서주관 워크숍)	주제발표	발표시간	30	주관부서 확인
		토론, 단순참가	참석시간	20	
	학습동아리 (정식등록한 학습동아리)	학습동아리	참석시간	30	주관부서 확인
	정책현장방문	정책현장방문	방문시간	30	출장보고서 등
	제안 (제안규정에 의한 입상)	입상(대내)	20시간	50	결과 확인
		입상(대외)	50시간	50	
	연구, 경진대회	입상(대내)	10시간	50	주관부서 확인
		입상(대외)	30시간	50	
		참가	참가시간	20	
	강의	강의	강의시간	30	주관부서 확인

	재난·재해대응 및 사회봉사활동(현월포함)	참가	참가시간 (재난재해는 참가시간의 50%를 인정하되 1월 4시간 인정)	30	추진계획, 근무일지 등 주관부서 확인
직무관련 개인학습	사설학원 등 교육 • 사이버교육 포함	직무·전산·어학 등	교육시간	60	수강증 등
	대학·대학원(자비) • 방송통신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 포함	비학위과정	학기당 30시간	60	수료증,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학사과정	1학점당 3시간	100	
		석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박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자격증취득	기술사	30	30	자격증 (1년에 취득한 자격증 중 최상위 1개만 인정)
		기능장	25	25	
		기사	20	20	
		산업기사	15	15	
		기타	15	15	
	연구모임, 세미나, 학술대회 등	주제발표	발표시간	30	주관부서 확인
		토론·단순참가	토론 및 참가시간	10	
	독서	독서	권당 3시간	20	KMS 등록 또는 부서장 확인 등
	직무관련 노하우 등 보고서	직무관련 보고서	편당 5시간	20	KMS 등록 또는 부서장 확인 등
	저술	개인	50	50	증명자료제출
		공동	25	50	
	논문게재	논문	25	50	논문
	사회봉사활동(개인현월)	참가	참가시간	20	1365 참가확인서 등 현월증서

< 유의사항 >

가. 1년 이상 국내외 위탁교육 : 총 교육기간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부여

- 2010. 4.1~2012. 3.31까지 2년간 국외훈련 실시자의 경우 교육시간 부여방법

☞ 총 교육기간 2년이므로 160시간×2년 총 320시간을 인정

- 2010.4.1~2012.5.31까지 14개월간 국외훈련 실시자의 경우

☞ 최초 1년은 160시간 인정, 나머지 2개월은 100시간 인정 총 260시간을 인정

나.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자비, 야간 등)의 경우 학기 단위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부여

- 2012년도에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6학점), 2학기(3학점) 이수한 경우

☞ 총 45시간(9학점×5시간=45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

다. 재난재해 대응의 경우 주관부서의 사전 추진계획 및 사후확인(근무일지 등) 후 인정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별표 2]

1. 자기개발 수립 작성 예시

(년)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서(예시1)

소속 : ○○ 과

직급·성명 : 지방행정사무관 ○○○

교육·학습 계획	시 기	기간(교육시간)	비 고
양성평등 과정	4.11~15	5일(35H)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법제실무과정	5월	21일(10H)	사이버 교육
영어회화	6~7월	2개월(30H)	개인학습(외국어학원)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년)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서(예시2)

소속	(행정)국 (행정)과	직급 : 지방행정사무관 성명 :
다음보직 희망경로	(인력관리)분야 (총무)과	최종보직목표 (인력개발)분야 (행정국장)직위

구분	직무지식		직무역량		정보화		어학	
	수준	내 용	수준	내 용	수준	내 용	수준	내 용
최종목표	100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문가 수준의 전문지식 확보	100	환경변화에 맞는 교육 훈련 계획 수립 실행 능력 확보	100	PPT를 이용한 프리젠테이션 등 적절한 활용능력	100	국제회의 회의 주도 및 연설 가능 정도
△△년 자기 개발 계획	50	○ 교육 훈련 담당자 교육 이수(14H) ○ 인사 관리 혁신 과정 (21H)	50	○ 리더쉽 향상 과정 교육이 수(14H)	50	○ PPT 활용능력 향상(21H)	50	○ 영어 중급 이상 향상 (TOEIC 730점)
현 수준 진단	30	○ 인사 및 교 육 훈련 제 도는 이해하 고 있으나 관련 전문 지식 부족	30	○ 정해진 계획의 실행은 잘하나 새로운 여건 분석 및 목표 설정 능력 부족	30	○ 한글은 중급 수준 이나 PPT 활용 능력 부족	30	○ 영어 초급 수준 (TOEIC 550점)
본인 확인 ○○○(서명)					부서장 확인 ○○○(서명)			

2. 분기별 교육실적 관리

분기별 교육실적 관리(예시3)

구분	총교육시간		교육훈련기관 교육시간		필수 교육시간		점검 일시 및 점검 의견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연도말 계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별표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여비구분 교육기관구분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근무지내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비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일비의 5할	○지급 않음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식비 의 3분의1 또는 당해 교육 훈련기 관이 청구하는 금 액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선박·항공· 자동차왕복 운임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 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선박·항공· 자동차왕복 운임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일비의 5할	·<장외지급>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상의 <정 액여비지급기준> 준용 ·<실내정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숙박비 준용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상의 식 비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식비를 제외한 차액

비고 : 1.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 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3. 일비에 있어 '기타일'은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을 제외한 교육훈련이 있는 날'을 말한다.

4. 위 기준표에도 불구하고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항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별표 4]

개인별 국외훈련성과 평가표(예시)

□ 성명(관리번호) : (- -)

□ 훈련기간 : . . . ~ . . .

□ 훈련과제 :

평 가 기 준	평가점수
1. 보고서 제출 및 보고시기 엄수 (10점) • 훈련중 정기보고 및 훈련기관소개서 (기일내 제출 3, 이후제출 2, 미제출 0) • 기관자체연구과제 보고서 (기일내 제출 3, 이후제출 2, 미제출 0) • 훈련결과보고서 작성요령 준수(준수 4 부분 준수 2, 미준수 0)	
2. 훈련결과보고서와 다른 보고서의 유사성·표절 여부 (20점) • 유사성이 없는 경우(20점) • 유사하여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0점)	
3. 당초 훈련계획의 달성도 (20점) • 당초 부여받은 훈련계획과 일치(20점) • 당초 부여받은 훈련계획과 유사(10점) • 당초 부여받은 훈련계획과 불일치(0점)	
4. 훈련결과보고서의 업무에의 활용가능성, 충실성 등 평가 (30점) * 정책·정책수립에 반영, 해외사례와 연계한 매뉴얼 제작, 내부교육자료 활용 등	
5. 국외훈련에 대한 노력도 (10점) • 학위과정 : 학위취득 여부(취득시 10점, 진행중 5점, 미취득시 0점) • 직무훈련과정 : 직무관련 세미나, 학술대회 등 참여 - 3회 이상(10점), 1~2회(5점), 미참석(0점) ※ 주제발표 등 주도적 참여의 경우 5점 이내에서 가점부여	
6. 관련분야의 최신동향 등 소속기관에 정보제공 정도 (10점) • 5회 이상(10점), 2회~4회(5점), 1회 이하(0점)	
총 점	∞점

※ 1-4번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필수이며, 5-6번 평가항목은 기관자를 결정

□ 평가의견 (보고서의 충실성, 활용가능성 등에 대해 평가자의 의견 기재)

- 1.
- 2.
- 3.



[2026. 6. 23.] [36443 , 2026. 6. 23.,]

() 044 - 205 - 3357

1 () 「 」

[2010. 7. 15.]

1 2() (“ ”)

[. . . (“ . ”)]

, .< 2019. 12. 31., 2021. 11. 30., 2021. 12. 31.>

1. 1 , , 3 2 , , 가,

2. 1 (「 」 2 5)

3. 1 3 가 . 「 」 73 2 1

4.

5.

(8) . (聯名) 가 가 .

.< 2019. 12. 31.>

[2010. 7. 15.]

1 3()

1 2

[2010. 7. 15.]

2 () 1 40 ,

1 9 18 , 12 13

1

< 2017. 4. 25., 2021. 11. 30.>

40 .<

2011. 4. 28., 2021. 11. 30.>

「 」 32 3 .<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18., 2019. 12. 31., 2021. 11. 30.>

[2010. 7. 15.]

2 2() .

1. 1 .
가. . 가

2. 2 .
가. . 가 가

3. 3 .
가. . 가 가

4. 4 1 3 .
가 . , 가

[2011. 4. 28.]

2 3() 2 2 .

(“ . ”) .

, , .

, . .

.

. <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1

.

1

. , ㄱ

」 (“ ”) 6 . 가 (“ ”)

.<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18., 2021. 11.

30.>

(

) 2 2 가

1

.<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 3

(

) .<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4

2 4

.<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5

2

.

,

.

.

.

.<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2011. 4. 28.]

2 4() 2 3

가

. < 2021. 11. 30.>

,

.< 2021. 11. 30.>

2 2

(ㄱ

」

ㄱ

」

.

) .< 2018. 12. 18., 2021. 11. 30.>

1. 1 가 가 , 3 1

2. 2 가 가 , 5 1

3. 3 가 가

, 10 1 .

4. 4 가 가

,
.

, ,

. 가 ,
, .< 2021. 11.

30.>

3

.< 2021. 11. 30.>

[2011. 4. 28.]

2 5() ()

2 2

. <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2 3 1 • 2 (1

) 4 .

[2011. 4. 28.]

2 6()

. < 2021. 11. 30.>

[2011. 4. 28.]

3 () ,

. <

2018. 12. 18., 2021. 11. 30.>

2 1 2

. 2 4 (“

”) .< 2018. 12. 18., 2021. 11. 30.>

2

,

・ .< 2018. 12. 18., 2021. 11. 30.>
 [2010. 7. 15.]
 4 () 2 3
 . < 2017. 4. 25., 2021. 11. 30.>
 1
 , 1
 가
 6 .< 2017. 4. 25., 2018. 12. 18., 2020. 10. 20., 2021. 11. 30.>
 1
 1 9 8
 , .<
 2017. 4. 25., 2021. 11. 30., 2021. 12. 31.>
 1.
 2. 1 가
 1 「
 」 15
 가 .< 2023. 6. 13.>
 [2010. 7. 15.]
 4 2()
 (“ ”) ,
 . < 2019. 12. 31.>
 , 가
 ,
 ,
 .< 2019. 12. 31.>
 ,
 .< 2021. 11. 30.>
 ,
 .< 2021. 11. 30.>
 [2017. 4. 25.]

4 3() ()
가 6

- 1. 「 」 146 2 1
 - 2. 「 」 147 9
 - 3. 「 」 148 3
 - 4. 「 」 174 1
- 1 1

[2024. 4. 2.]

5 () 가
가 . <
[2021. 11. 30.>](#)

[2010. 7. 15.]

6 (가) 가 가· 가· 가(公暇) 가 . <
[2019. 12. 31.>](#)
가 가 가
. < [2019. 12. 31.>](#)

[2010. 7. 15.]

7 (가 가) 가
27 2 2 · 3 9
5
5 가 3 . < [2013. 12. 11.,](#)
[2018. 12. 18., 2023. 7. 18., 2024. 7. 2.>](#)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1

“

”

「

」

25

1

3

,

(年月日數)

,

•

•

•

,

.< 2011. 3. 7., 2017. 3. 8.,

2018. 9. 18., 2018. 12. 18., 2019. 4. 16.>

1. 63 2 4

「

」

31

6 2

1

2.

3. 「

」

(

“

”

)

•

•

•

7

2

3

1

5

1

가

1

.< 2019. 12. 31.>

1. 가(7 5 2 가)

2. 4 가 가 가

1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20

, 가

가

8

가

가

• .< 2020. 10. 20.>

[2010. 7. 15.]

7 2(가)

•

•

가 (

7 10

가

)

.

, 「

」

31

6

2

2

가

,

가

가

.< 2019. 12. 31., 2020. 10. 20.>

가

.

, 15

1

, 15

,

•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
한 기간(개월)

×

해당 연도
연가 일수

12개월

2

“

”

.< 2019. 4. 16., 2019. 12. 31., 2021. 1. 5., 2021. 11. 30.>

1. 63 (1 1)

2. (14)

가.

3. 「 」 27 3 1 2

4. 「 」 4 1

5. . 가 ()

6. 7 5 1 가
2
가 (7 10 가) 가
. < 2019. 12. 31.>

가 가 14
. < 2019. 4. 16.>
. 8 가 1 .

< 2019. 4. 16.>

7 5 1 가 6 가 가 . ,
7 5 3 가 가 가 . <
2019. 4. 16.>

[2018. 12. 18.]

[7 2 7 5 <2018. 12. 18.>]

7 3(가) 7 1
가 (7 10 가)가 가
가 가

가 . < 2019. 12. 31., 2021. 11.

30.>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2018. 12. 18.]

[7 3 7 6 <2018. 12. 18.>]

7 4(가) 가
3 31 10

가 가 가

. < 2019. 12. 31., 2021. 11. 30.>

1 가 가 가

7 4 가 .< 2019. 12. 31.,

2021. 11. 30.>

1. 6 1 7 31
가 가 ,

10

2. 1

가

10 31 1 가 가

[2018. 12. 18.]

[7 4 7 7 <2018. 12. 18.>]

7 5(가)

60 가 가 .

. 8 가 1 , 7 2 7

가 가 가 . < 2021. 11. 30.>

1.

2. 가

180 가 가 .< 2021.

11. 30.>

가 가 6

[2019. 4. 16.]

[7 5 7 6 <2019. 4. 16.>]

7 6(가)

(10 「

」 3 3 2

)

가 가 . < 2011. 9. 29., 2012. 8. 31., 2016. 11. 29., 2018. 12. 18., 2019. 4. 16.,
2019. 12. 24., 2020. 10. 20., 2021. 11. 30., 2021. 12. 31., 2023. 12. 5., 2026. 6. 23.>

1. 「 」 . .

가

2. , , , ,

3. 가

4. .

5. 「 」 129 131 , 「
」 52 「 」 11 1

6. 「 」 가

7. 「 」 31

8. , 가

9. . 가 가

10.

가. 「 」 9

. 「 」 17 「
」 17 (「 」
, 1)
. 「 」 17 「
」 25 (2)

11. 「 」 5 1 ,
가

12. (遠隔地)

13. 「 」 1 24
25 42 2 3

[2010. 7. 15.]

[7 5 , 7 6 7 7 <2019. 4. 16.>]

7 7(가) 가 . ,

가

1 가 .<

2017. 4. 25., 2021. 11. 30.>

90 (100 ,

120) 가 ,

가 45 (60)

가

44 (59)

가 .< 2014. 6. 30., 2021. 11. 30., 2021. 12. 31.,

2023. 7. 18., 2024. 7. 2., 2025. 2. 11.>

1. (「 」 14 1
3) •

2. 가 40

3. • (早産)

가 가

.< 2014. 6. 30., 2019. 12. 31., 2024. 7. 2.>

1. 15 : 10

2. 16 21 : 30

3. 22 27 : 60

4. 28 : 90

가 4 3

가 가 .< 2019. 12. 31., 2021. 11. 30., 2024. 7. 2.>

가 .< 2018. 12. 18., 2019. 12. 31., 2021. 12. 31., 2024. 7. 2.>

1. :

가. : 2 (1 , 2
1)

. : 3 (1
2)

. : 4 (1 ,
1 , 2 , 2

2)

2. : 1
1 2

12

32 가 .<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 2024. 7. 2., 2025. 7. 22.>](#)

8 2 가 36 ,
1 2 .<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2024. 7. 2.>](#)

10 가 가

.< [2020. 10. 20., 2024. 7. 2., 2026. 6. 23.>](#)

1. 「 」 , 「 」 「 . 」
2 (“ ”) . .

2. 가

3. 가 「 」 「 .

」 2

4. 「 」 2 2 (“
”) . (「 」 52

「 」 24 25

)

5. , , , , (), ,

9 가 가 , (5

) 가 가 (9

1)

1 가 . , 가 「

가 」 4 1

가 1 가 .< [2020. 10. 20., 2024.](#)

[7. 2., 2026. 6. 23.>](#)

1 가 .

가 .< [2019. 12. 31., 2020. 10. 20., 2024. 7. 2.>](#)

10 가 .

< [2019. 12. 31., 2020. 10. 20., 2024. 7. 2.>](#)

「 」 3 1 [, (

) 가 .]

5 (14 1

10) 가 .<

[2020. 10. 20., 2021. 11. 30.>](#)

4 , 가 .<

[2023. 7. 18.>](#)

1. 「 」 5 1 6 11

가 .

2. 1 가 .

10

가 .< [2025. 7. 22.>](#)

[2010. 7. 15.]

[7 6 , 7 7 7 8 <2019. 4. 16.>]

7 8(가) 가 가

. , 가

. < [2019. 12. 31., 2021. 12. 31.>](#)

1. 7 5 1 가 30

2. 7 5 2 가 30

3. 가 30

4. 가 30

[2010. 7. 15.]

[7 7 , 7 8 7 9 <2019. 4. 16.>]

7 9(가) 「 」 3 2

2 , 3 , 3

5 1 38 15 1

(“ ”) 가 4 2 , 7

1 , 7 4 1 • 2 , 7 5, 7 7 7 • 8 7 8

2 . < [2019. 4. 16., 2019. 12. 31., 2020. 10. 20.>](#)

[2018. 12. 18.]

[7 8 <2019. 4. 16.>]

7 10(가) 가 가 4 4

가 가 .

. < [2023. 6. 13.>](#)

<2024. 7. 2.>

1 . 가 가 . ,
가 .< 2024. 7. 2.>

1. 62 1 1
2.
[2019. 12. 31.]

7 11(10 가)
7 1 가 7 10 1 가
10 가
가 . 가
 , 가

. < 2021. 11. 30.>

[2019. 12. 31.]

8 () 3 2 . < 2013.
12. 11., 2018. 12. 18.>

1.
2.
[2010. 7. 15.]

9 () 57
가 .

1. , ,
2.
3.

1 1 가
 .

1. . 가
2. . .

3. . .

4. (旗) .
 , .

[2010. 7. 15.]

10 ()

，
，

가 .

1. . .

2. . . (私企業體)

. . . .

3.

4.

[2010. 7. 15.]

11 (가) 10

가 . < 2021.

[11. 30.>](#)

1 가 .

[2010. 7. 15.]

12 ()

15 .

< [2021. 11. 30.>](#)

[2020. 10. 20.]

13 () 「

」 3 3 2

3 4

「

」 2 3 2

2 4

[2023. 12. 5.]

< 18739 ,2005. 3. 18.>

() . , 7 1 2006 1 1

.

()

3 3

.

< 18894 ,2005. 6. 30.>

2005 7 1 .

< 19723 ,2006. 11. 1.>

.

< 20502 ,2007. 12. 31.> ()

1 () 2008 1 1 .

2

3 () .

7 2 1 .

1. . (1 1

1)

< 20741 ,2008. 2. 29.> ()

1 () . < >

2 5

6 6 () <80>

<81>

.

2 4 “ ” “

”

.

<82> <105>

< 21862 ,2009. 11. 30.>

.

< 22151 ,2010. 5. 4.>()

1 () 2010 5 5 .

2 3

4 () <158>

<159> .

2 4 “ 「 」 30

” “ 「 」 32 2 ” .

<160> <192>

< 22275 ,2010. 7. 15.>

1 () . , 7 1 3

.

2 () 7 2

.

3 (가 가) 7 3 4 1 2

.

4 () 7 4

가 가 .

5 (가) 가

가 .

6 (가 가)

7 3

.

< 22698 ,2011. 3. 7.>()

1 () .

2 4

5 () .

7 2 1 “ 1 1 1

” “ 1 1 1 ,

1 ” .

< 22907 ,2011. 4. 28.>

.

< 23165 ,2011. 9. 29.>()

1 () . < >

2 3

4 () .

7 2 7 “ ㄱ ” 29 “ ㄱ

ㄴ 31 ” .

5

< 24077 ,2012. 8. 31.>()

1 () 2012 9 1 . < >

2 7

8 () 2%

2^

7 2 5 “ ㄱ ” 47 “ ㄱ ” 52 ”

.

2& 3)

9

< 24425 ,2013. 3. 23.>()

1 () . , 6

.

2 5

6 6 () <97>

<98>

.

2 4 , 2 3 1 , 2 , 3 2 5 1
“ ” “ ” .

2 4 , 2 3 1 , 2 • , 3 5 ,
6 2 5 1 “ ” “ ”

.

1 “ ” “ ” .

2 2 가 • “ ” .

<99> <129>

< 24555 ,2013. 5. 31.>

2013 7 1 .

< 24928 ,2013. 12. 11.>

1 () 2013 12 12 . , 7 1

(「 」 27 2 2 • 3 9

) 2014 1 1 .

2 (가가) 11531

4 2 3

2

가 2 가 2 .

< 25040 ,2013. 12. 30.> ()

1 () 2014 1 1 .

2 7

8 ()

7 5 “ ” “ ”

” .

2 “ ” “ ” ” ,

2 가 , 3 가 “ ”

“ ” .

< 25418 ,2014. 6. 30.>

1 () 2014 7 1 .

2 (가) 7 3 3

.

7 3 3

가

.

< 25751 ,2014. 11. 19.>()

1 () . , 5

.

2 4

5 () <209>

<210>

2 4 , 2 3 1 , 2 • , 3 5 ,
6 2 5 1 “ ” “ ”

.

1 “ ” “ ” .

2 2 가 “ ” “

”

.

<211> <418>

< 27620 ,2016. 11. 29.>()

1 () 2016 11 30 .

2 3

4 () 2!

2@

7 2 1 “ ” “ ” .

2# 2^

< 27929 ,2017. 3. 8.>()

1 () .

2

3 () .

7 2 1 “ ” “ ” .

< 27999 ,2017. 4. 25.>

.

< 28211 ,2017. 7. 26.>()

1 () . , 8

.

2 7

8 () <165>

<166>

.

2 4 , 2 3 1 , 2 • , 3 5 ,
6 2 5 1 “ ” “ ”

.

1 2 2 가 • “ ”

.

<167> <388>

< 29181 ,2018. 9. 18.>()

1 () 2018 9 21 .

2 23

24 () 1*

1(.

7 2 “ ㄱ ” 23 1 ” “ ㄱ
」 25 1 ” .

2) 2#

25

< 29376 ,2018. 12. 18.>

1 () . , 7 7 2 7 4

2019 1 1 .

2 () 4 2

1

2 1

3 (가) 7 2 1 1

4 (가) 7 5 5 11

5 (가) 1 가

6 () 7 3 7 2
4 7 6 7 2 5

< 29699 ,2019. 4. 16.>

1 ()

2 (가) 7 2 3 6

가

7 2 6 7 2019 가

3 (가) 7 6 10 12

4 (가) 2 3

2019 가

5 (가) 가 7 5

< 30256 ,2019. 12. 24.> ()

1 () 2020 1 16 . < >

2 31

32 () 3!

3@

7 6 5 “ 「 」 43 ” “ 「 」 129

131 ”

3# 4)

33

< 30311 ,2019. 12. 31.>

1 () 2020 1 1 . , 7 7 4 • 5 • 11

7 8 .

2 (가 가) 7 7 4

1 가 가

7 7 5 1 가 7 7

4 .

3 (가) 7 8 1

가 .

4 (가) 1

가

7 7 11 가

.

< 31119 ,2020. 10. 20.>

1 () .

2 () 4 2 , 2 1 가

3 (가) 7 7 13

가 .

가 7 7 13

가 .

4 (가 가) 가

7 7 9 10 가

가 .

< 31380 ,2021. 1. 5.> (

473

)

. < >

< 32172 ,2021. 11. 30.>()

1 () 2022 1 13 . < >

2 6

7 ()

1 2 2 “ ” “ [•

• • (“ • ”) .

] ” , 5 “ ” “

” .

2 2 “ ” “ ”

, 3 “ (• •) ” “ ” ,

4 “ ” “ ” .

2 3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4 • 5 6 “

” “ ” ,

6 “ ” “ , • • •

” .

2 4 1 • 2 3 “ ”

“ ” , 3 4 “

” “ ” , 4

5 “ ” “ ”

•

2 5 1 “ ” “ ”

•

2 6 “ ” “ ”

•

3 1 “ ” “ ”

, 2 “ ” “ ”

, 3 “ ” “

”
 4 1 , 2 3 “
 ” “ ”
 4 2 3 “ ” “
 ” , 4 “ ” “
 ”
 5 “ ” “ ”
 7 2 3 5 “ ” “
 ”
 7 3 “ ” “ ”
 7 4 1 2 “ ” “
 ” , 2 1 “
 ” “ ” “ ” “
 ” , 2 “
 ” “ ” “ ” “
 ”
 7 5 1 2 “ ”
 “ ”
 7 6 “ ” “
 ”
 7 7 2 , 3 • 5 “
 ” “ ” , 13
 “ ” “ ”
 7 11 “ ” “
 ”
 11 1 “ ” “ ”
 ”
 12 “ ” “ ”
 2 1 가 “ ” “
 ”
 2 2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11 ,2021. 12. 31.>

1 () 2022 1 1 .

2 (가) 7 7 6

() .

< 33532 ,2023. 6. 13.>

.

< 33639 ,2023. 7. 18.>

1 () . , 7 1 3

.

2 (가) 7 1 1

27 2 2 • 3 9

2023 가 .

3 (가) 7 7 14

가 .

4 (가) 1

가 .

< 33906 ,2023. 12. 5.>

2023 12 11 .

< 34380 ,2024. 4. 2.>

.

< 34661 ,2024. 7. 2.>

1 ()

2 () 7 7 8 2 5

3 (• 가) 7 10 2 3

• 가

4 (가) 1 가

< 35259 ,2025. 2. 11.>

1 ()

2 (가) 7 7 3

3 (가) 1

가

1

가

1. 가

2. 가

< 35666 ,2025. 7. 22.>

1 ()

2 (가) 7 7 15

가 7 7 15

가

1.

가

가

2.

가

< 36443 ,2026. 6. 23.>

.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휴가 기준(제7조의9 관련)

1.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토요일등"이라 한다)에 근무를 한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나.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한 시간이나 토요일등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휴가일수 계산 등

- 가.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한다.
- 다. 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3. 연가

-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text{제7조에 따른 제직기간별 연가일수}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뺀다.
- 다. 제4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권장 연가 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권장 연가 일수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frac{\text{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권장연가일수}}{\times}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4. 병가

가. 병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frac{\text{제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times}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나. 가목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이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3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5.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비 상 근 무 발 령 서

1. 비상근무의 종류 : 비상근무 제 호
2. 발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발령사유 :
4. 대상 지역 및 기관 :
5. 조치사항 :
6. 비상소집 결과 보고 수신부서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위와 같이 발령함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정 부 당 직 총 사 령 서 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지방자치단체명 :)

가



[2024. 7. 4.] [06052 , 2024. 7. 4.,]

() () 061 - 260 - 0612

1 ()

.< 2017. 11. 2, 2024.7.4>

[2010. 12. 30.]

2 ()

(“ ”)

(“

”)

()

1

· ,

·

·

.< 2017. 11. 2.>

1

, 가 2

1

·

[2010. 12. 30.]

3 ()

·

4 <2024.7.4>

5 <2010. 12. 30.>

5 2 <2010. 12. 30.>

6 ()

·

가

·

[2017. 11. 2.]

7 ()

, ,

, ,

, 가

.< 2017. 11. 2.>

·

.<

2010. 12. 30., 2017. 11. 2.>

.< 2024.7.4>

.< 1998. 12. 21.,

2004. 12. 29., 2010. 12. 30., 2017. 11. 2., 2024.7.4>

7 2()

가

가

가

[2017. 11. 2.]

8 <2017. 11. 2.>

9 () 「 」 (“ ”) 30 3
(“ ”)

2010. 12. 30., 2017. 11. 2.>

가

.< 2010. 12. 30., 2017. 11. 2.>

10 () 30 4
”)

(“

30., 2017. 11. 2.>

.< 2010. 12.

가

.< 2010. 12. 30., 2017. 11. 2.>

11 <2024.7.4>

12 ()

• (制式)

「 가

」 4

「 가

」

58 1 •

.<

2017. 11. 2.>

[2010. 12. 30.]

13 <2010. 12. 30.>

14 ()

.< 2013. 5. 13., 2017. 11. 2.>

15 <2010. 12. 30.>

16 <2010. 12. 30.>

17 <2010. 12. 30.>

18 <2010. 12. 30.>

18 2(가 가) 「 」 (

“ ”) 7 1

가가 「 」 2

.< 2024.7.4>

[2010. 12. 30.]

[2024.7.4]

19 (가 가) 가가

가

.< 2010. 12. 30., 2017. 11. 2.>

<2024.7.4>

가 가 , 가 2 가 1

.

가

가 .< 2010. 12. 30., 2017. 11. 2.>

<2010. 12. 30.>

<2019. 6. 13.>

19 2(가) 4 4

가 .

[2024.7.4]

20 <2024.7.4>

21 <2024.7.4>

22 <2024.7.4>

23 (가) 가 7 7

2 가 3 가 .<

2016. 12. 29., 2019. 6. 13.>

<2021. 10. 28.>

<2019. 6. 13.>

「

가

」

가 .< 2016. 12. 29, 2024.7.4>

<2021. 10. 28.>

[2010. 12. 30.]

5

(

7 2

1

)

가

.

가

.<

2015. 7. 30., 2016. 12. 29., 2017. 11. 2., 2019. 8. 1, 2024.7.4>

1. 5 10 : 5 < 2024.7.4>

2. 10 20 : 10

3. 20 30 : 20

4. 30 : 30 < 2024.7.4>

1

가

.< 2016. 12. 29.>

「

」

8

5

가

.< 2016. 12. 29., 2017. 11. 2., 2019. 6. 13., 2021. 10. 28.>

5

가

,

.< 2021. 10. 28.>

1. 「 」 13

3. 가

「

」

2

1

5

가

.

가

5

가

.< 2024.7.4.>

23 2() 가

.< 2010. 12. 30., 2017. 11. 2.>

[2017. 11. 2.]

24 <2010. 12. 30.>

25 (가) 가 가 가 .

26 <2010. 12. 30.>

27 <2010. 12. 30.>

28 () .< 2017. 11. 2.>

< 1183 ,1982.2.3>

.

< 1279 ,1982.5.6>

.

< 1362 ,1983.5.30>

.

< 1582 ,1986.3.10>

.

< 1768 ,1988.3.29>

.

< 1830 ,1988.11.24>

.

< 1873 ,1989.2.27>

.

< 1900 ,1989.5.22>

.

< 2080 ,1991.3.25>

1991 3 26 .

< 2334 ,1994.12.12 >

.

< 2428 ,1996.6.1 >

.

< 2550 ,1997.10.1 >

. , 18 3 1998 1 1

.

< 2721 ,2000.2.29 >

.

< 2820 ,2001.11.26 >

. , 2001 11 1

60 가 가 23 2
가 90 가 .

< 2890 ,2003.4.22 >

.

< 2958 ,2004.2.27 >

.

< 2984 ,2004.12.29 >

1 () . , 18 1 2006
1 1 .
2 () 2005 6 30 16 1
2 .

< 3040 ,2005.12.28>

() . , 19 6 , 23 3 6
 9 3 2006 1 1 .
 (가) 23 8
 2005 12 31 20 가
 2006 6 30 10 가 가 .
 18 2 .
 (40) 가 5
 가 23 3 • 6 9 3
 .

< 3432 ,2010.12.30>

1 () .
 2 ()
 .
 10 1 “ 「 」 17
 24 가 ” “ 「 」 「
 」 가 ” .
 .
 “ . ”
 “ . ” .

< 3697 ,2013.5.13>

< 3940 ,2015.7.30>

< 4147 ,2016.12.29>

- 1 () .
- 2 (가) 23 가
가 .

< 4524 ,2017.11.2 >

- 1 () .
- 2 (가)
가 23 6 가
.

< 4872 , 2019.6.13 >

.

< 5447 , 2021.10.28. >

.

< 6052 ,2024.7.4 >

- 1 () .
- 2 (가)
가 23 6 가
.

[별표 1]<개정 2010.12.30>

선서문 (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3] <개정 2016.12.29>

경조사 휴가일수표 (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025. 9. 12.] [340 , 2025. 9. 12.,]

()044 - 205 - 3357

(- -
-)

·
· 2026. 7. 1



가